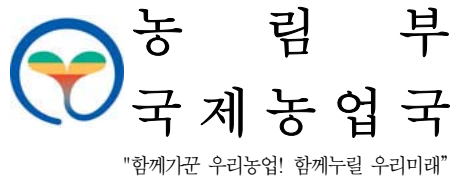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머 리 말

금번 발행하게 된 『농업통상용어해설』 자료는 2002년도에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진행 중인 미국, 인도,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WTO/DDA 농업협상, OECD·FAO·APEC 등 국제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농업통상과 관련 있는 주요한 용어들을 선정하고 이에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농업통상용어 중에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해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 12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배종하

※ 자료문의처 :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500-1704)

목 차

I. 농업통상 용어해설	1
II. 전문용어 찾아보기	263
1. 가나다 순	265
2. 알파벳 순	278
III. 참고자료	289
1. 국제기구 기구표	291
가. WTO	291
나. OECD	292
다. FAO	294
라. APEC	296
2. WTO/DSB 분쟁해결절차	297
3. 농업 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298
4. 농림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302
5. 입법부·행정부 직위영문 명칭	305
6.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용어	308
7. 무역 약어	312

I.

농업통상 용어해설

I. 용어해설

A

AARDO(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촌의 후생증진 및 기아와 빈곤의 타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2.3월 설립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63.2월 가입하였음.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주요사업으로 연수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개발, 남남협력 차원의 전문가과건 등임

Accession(가입)

세계무역기구 혹은 여타 국제기구 및 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것을 의미함.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WTO에 가입할 수 있음. WTO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신청국의 무역제도가 WTO규범에 일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존회원국과 가입신청국간에 협상을 하여야 함. 가입시에 가입 신청국의 관세 및 서비스 양허표는 오랫동안의 회원국 지위와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한 결과가 반영된 기존 회원국의 양허표와 유사해야 함. 즉 신청국은 대체로 회원국 가입에 따라 향유하게 될 권리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허를 준비해야 함. 최종 가입승인은 보고서, 가입의정서, 시장개방 일정표 등으로 구성된 최종 가입안이 WTO의 일반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WTO회원국의 2/3가 찬성투표를 하면 WTO 가입이 승인됨.

※ Enlargement(확대가입) 참조

4 농업통상용어해설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들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Lome Convention(로마협약) 참조

ACP(Acreage Reduction Program, 식부면적 감축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조정제도. ARP는 미국의 곡물생산농민들이 자신의 과거 기준면적의 일정 비율만큼을 현행 생산에서 자발적으로 휴경시키는 구(舊) 농업프로그램임. 즉 전체농산물 생산량 또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식부면적기준의 일정비율로 휴경면적을 설정하는 연도별 휴경계획(Annual Acreage Set-aside)와 토지전환프로그램(Acreage Diversion Program)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휴경계획에 따라 농민은 작물기준면적의 일정 비율을 휴경시키고 그를 보전용도로 유지해야만 정분 농업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토지전환프로그램은 농민이 보유한 기준면적의 일정비율을 휴경할 경우 단위면적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이제도는 대개 공급과잉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부족분지불제도와 연계성하에서 부족분지불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되었는데, 1973년 농업법이후 미국의 농가소득지지제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생산조정제도는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수요가 급증할 경우 물량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개별작물간의 상대적인 시장가격에 대응하여 농민들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을 신축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 Farm Bill(미국 농업법) 참조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상계가능보조금)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타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경우(타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양허혜택의 무효화·침해, 타체약국에 대해 심각한 손상), 수입국의 문제제기와 DSB의 결정에 따라 수출국은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수입국은 필요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음. 기존 GATT 협약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상계조치 부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WTO협정은 상계조치 이외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Adjustment costs(구조조정 비용)

무역장벽을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수입개방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직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구조조정 비용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음.

Ad Valorem Duty(종가세)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로 표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관세체계는 저가수입 농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바 단순가공 농산물에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순혼합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난동 및 초산조제 마늘로 인해 국내 마늘생산 농가의 심각한 피해발생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Specific duty(종량세) 참조

6 농업통상용어해설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n, 미국농민연맹)

미국의 최대농민단체로서 보수주의적 색채를 지니면서 미국 농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격지지 축소, 정부규제 완화, USDA 식품정책을 반대하는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선호함에 따라 의회내 공화당의 입장과 비슷함.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Corn Belt States가 거점지역임.

※ NFU(전국농민연맹) 참조

Alternative duty(선택세)

한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 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 (예: 30% 또는 200원/kg)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 부과품목은 주로 선택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AFSIS(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아세안식량안보 정보시스템)

ASEAN+3 농림장관회의 체제에서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한 정보(식량생산, 수출입, 시장가격, 소비, 재고, 작황 등) 수집 방법 및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쌀·옥수수·콩·카사바 및 사탕수수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체를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시작하였음.

Agenda 2000(의제 2000)

EU는 '95년부터 중·동부 유럽의 EU가입에 대비하여 동·서유럽지역의 농업의 통합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혁에 착수함. 냉전구조 붕괴후 새롭게 형성된 유럽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추어 공동농업+정책(CAP)을 변화시키려는 것임. 이러한 배경하에 착수된 Agenda 2000이 표방하는 공동농업 정책 개혁의 필요성은 새로운 시장불균형의 발생에 대한 우려, WTO 뉴라운드대비, EU의 확대, 환경보전형 농업의 필요성에 있음. Agenda 2000의 기본방향은 '92년 개혁노선의 유지로 소비자부담에 의한 가격지지에서 재정부담에 의한 직접지불로의 이행, 농촌정책의 재편 강화, EU확대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재정분담 규정 제정, WTO 협상 대응책으로 각종 지원방식의 가격과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임. 주요 개혁내용에 있어 경종부문은, 현행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EU 15개국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고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역내가격을 국제가격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곡물개입가격을 20% 인하하고 지지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해 50%정도 직접지불보상으로 인상하며 의무적 휴경은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 휴경(5년간 계약) 존속시키는 것임. 우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30% 인하하고 시장개입(매입)이 아니라 민간재고 조성을 통해 시장가격안정을 달성하고 가격인하에 대한 보상지불을 EU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기본급부와 회원국별로 지불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추가지불로 구별하여 시행함. 육우 송아지, 거세육우, 육용번식용 모우에 대한 지급상한액 증액과 수유용 모우, 암송아지에 대한 직접지불 신설이 포함되어 있음. 낙농부문의 개혁에 있어 2006년까지 생산할당제 유지, 2000~2003년 기간동안 지지가격은 15% 인하, 수유용 모우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Agenda 2000은 '99. 3. 24~26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타결됨.

※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참조

Agenda 21(의제 2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임.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의제21의 구성은 총40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음. 리우선언이 모범이라면 Agenda21은 시행령에 해당함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류 교역은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과 MFA협정에 따른 양국간 쿼타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협정이 3-4년 주기로 계속 연장되어 선진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개도국들로부터 MFA 철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 UR협상의제 채택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자 개도국들도 섬유류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협상의제에 포함됨. 금번 WTO섬유협정은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교역을 GATT 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섬유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푼타 텔 에스테 각료회의시 섬유류분야를 GATT 규칙 및 규율에 입각하여 GATT에 통합하여 교역을 보다 자유화하기로 선언, 금번 최종협정은 1)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단계적으로 일정기한 내에 GATT에 복귀시키고 2)일단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3)복귀과정에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쿼타 증가율을 인정한다는 것 등을 기본골격으로 세부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WTO 섬유협정의 타결에 따라 그동안 GATT 체제밖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이 단계적으로 GATT 체제내에 복귀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이러한 잔존기간동안 적용될 한

시적인 규정임. 현행 MFA협정이 GATT에 완전히 복구되는 시한은 협정 발효후 120개월(10년)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협정)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60년대 이후 세계각국은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등 자급자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식량수입국인 EU까지도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86. 9월부터 UR협상이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산물협상은 크게 ①시장개방 ②국내농업보조 ③수출보조 ④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UR협상이 시작된 후 7년반이 경과된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시장개방

-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10 농업통상용어해설

진환함으로서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 특별긴급관세(SSG)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

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구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 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수출보조분야

-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12 농업통상용어해설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위생 및 검역분야

-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든 SPS조치(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포함)에 대하여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요건, 가공요건, 검사, 인증, 소독 또는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함.

- ①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②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③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 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 ④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또한 SPS협정 제2조는 SPS조치는 생명과 건강보호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될 수 없으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기존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임시적으로 SPS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증거가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재검토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야 함. SPS조치는 각국의 특정위생조건(동식물을 포함)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상품을 국별로 차등 대우하여서는 안되며, SPS조치를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사용하여서도 안됨.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설립협정)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설립 및 동 기구의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협정으로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WTO 구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속되는 4개의 부속서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 A, B, C)과 분쟁해결 절차(Annex 2), 무역정책검토(Annex 3), 복수국간 협정(Annex 4)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상품관련 다자간 협정에는 농업, 위생, 섬유, 기술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 12개 협정이 있음.

Agricultural Subsidy(농업보조금)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임.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됨.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누어짐. 또한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임.

※ AMS, Amber Box 참조

AIE(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분석 및 정보교환)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1997년부터

WTO 농업협정의 이행관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WTO 농업위원회에서 비공식회의 형태로 '97.6월부터 농업위원회 공식회의에 앞서 각국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출한 paper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이나 합의는 도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99. 9월말에 논의를 종료함. '99년 9월말까지 각국으로부터 74개의 paper가 제출되었는데 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유도해 나갔음. 초기에 농산물수입국들은 차기협상을 가급적 늦추려는 의도에서 이 토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99년부터 수입국들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모으고 6월에 일본과 노르웨이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paper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9월 22일에 “식량수입국에서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paper를 제출했고 EU는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 paper를 제출하여 논의한 바 있음. 사무국에서 TRQ 실적, 국내보조 이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배포한 paper도 12건에 달함. AIE 과정에서의 논의내용들은 2000년초부터 시작된 WTO 농산물협상의 논의기초가 되고 있음.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됨.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로,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매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Amber Box(감축대상 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 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 년간 13.3% 감축)

* Red box, Blue box, green box 참조.

Anti-Dumping Duty(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함.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이 명료하지 않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었음.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 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 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99. 11월말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는

의시 반덤핑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무산된 바 있음.

※ Dumping, Dumping Margin 참조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1960년대말 이래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1980년대초 PECC(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하여 '70~'80년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지속적 경제 활력유지 및 상호 의존성 증가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88년 10월 일본 통산성의 제안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번째 APEC 정상 회의가 개최됨.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 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 이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 무역 투자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 무역 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③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일컫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 Nam). 2005년도에는 한국이 의장국의 역할을 수임 하여 6월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11월 부산에서 APEC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우리나라는 APEC이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DDA NAMA 협상 관세감축 공

식으로 스위스 공식을 지지한다는 APEC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으며(APEC 통상장관간 DDA 별도 성명 채택),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DDA 협상 가속화를 요구하는 APEC 정상간 DDA 특별 성명을 주도하였음.

Appellate Body(상소기구)

WTO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Appellate Review(상소검토)

WTO 분쟁절차상 상소는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음. 일방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범위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함. 상소기구의 검토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을 기초로 작성됨. 상소보고서에 기록되는 개별구성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하며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 및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상소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총의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채택됨.

※ DSB, DSU 참조

Applied tariff(실행관세)

각국이 타국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우선순위에 의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UR에서 양허한 양허관세보다 매우 낮으며 기본세율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실행세율은 0~50%까지이나 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0~50%에 이르는

고율관세는 주로 과실류와 채소류에 적용됨. 각국은 국내적으로 WTO 양허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를 실행관세라 함.

※ Bound tariff(양허관세) 참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동남아국가연합으로 동남아시아지역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을 원회원국으로 창립하여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1997),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가입함. 아세안은 역내 경제개발, 사회 및 문화발전의 촉진, 지역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며 제반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원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대화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승격하였으며,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통해 교역, 투자, 관광, 인적자원 개발분야 등 100여개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2005년 이를 위한 이행방안인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채택함.

ASEAN+3(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로 2000년 필리핀 농업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2001년부터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간 농림분야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함.

* AMAF+3(아세안+ 한중일 농림장관회의)

: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 3(Korea, China, Japan)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회의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며 고위관리회의(SOM)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함. 제1차 정상회담이 1996.3. 방콕에서 개최된 이후 1998.4.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00년 제3차 회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ATCWG(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Working Group)

APEC의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서, APEC 21개 회원국간 농업기술(농업유전자원, 생명공학, 유통기술 등)협력 방안을 논의함.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 조기 자유화)

APEC의 EVSL(분야별 조기 자유화)를 총칭하는 말임.

at-the-border barriers(국경장벽)

관세와 비관세조치(쿼터 포함) 등 국경을 통과할 때 타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조치.

Automaticity(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동적인' 시간적 진전으로 확정되는 개념을 말함.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B

Automatic Import Licensing(자동수입허가)

수입신청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WTO수입허가절차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별도의 다른 적절한 수입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도입여건이 지속되는 한 자동수입허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동수입허가절차는 자동수입허가의 대상인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되며,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2조에 따르면 자동수입허가란 다음 요건에 일치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인이 모든 경우에 있는 것으로 봄. 1)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 2) 허가신청서는 상품통관 이전의 모든 근무일에 제출 가능할 것, 3) 허가신청서는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 한 즉시, 최대한 10근무일 이전에 승인될 것 등이 포함됨.

AVE(Ad Valorem Equivalent, 종가세 상당치)

종량세(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8.1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에 대해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을 결정할 때 비종가세가 종가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VE 계산방식이 필요함

B

backloading(後期이행)

법적으로 가능한 최종시점까지는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보류하는 관행

을 의미. 이는 WTO 섬유 및 의류 협정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활용한 바 있음.

Balance of payments measures(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Bangkok Agreement(방콕협정)

공식명칭은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국간 통상협정에 관한 제1차 협정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내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75. 7월 서명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 오스, 한국, 중국(2002년 1월 1일 가입)임.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

Barter Trade(구상무역)

수입자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설비 또는 기술 등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폐대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라 할 수 있음. 즉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무역거래를 총칭. 구상무역은 구 소련 및 동구권 등이 외환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구상무역의 종류에는 바터무역, 대응구매, 보상무역 등이 있음.

Base Rate(기준세율)

관세 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 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국의 관세 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 1. 1 첫 인화가 개시되어 1999. 1. 1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됨.

Base Total AMS(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기준기간동안('86-'88) 제공된 총감축대상보조액으로 국내보조 감축의 기준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89~'91기준으로 계산된 Base total AMS는 17,186억원임.

Basel Convention(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감소 및 통제와 이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 우리나라는 '94. 1월 가입하였음.

Behind the Border(국경내 장벽)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간 장벽은 아니나,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일컫음. GATT 3조는 국경간 장벽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Beef Case(한-미 쇠고기 분쟁)

※ Korea-US Beef Case 참조

BIA(Built-in Agenda, 기설정 의제)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협상당사국간의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하게 되는 바, 기설의제는 협정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이러한 논의가 없더라도 협상시 당연히 포함되는 의제임. New Round 협상을

예로 들면 WTO 농산물협정과 GATS 협정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추가협상을 추진토록 협정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New Round 협상의 BIA중에는 농산물, 서비스분야가 해당됨.

※ Agreement on Agriculture 참조

Bilateral Negotiation(양자협상)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하는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2개국만 벌이는 통상협상을 말함.

Bilateral Trade Agreement(양자간 무역협정)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만약 두 당사국이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양자협정의 일반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면 동 양자협정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협의 및 분쟁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원활한 무역흐름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타 원칙이나 제도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대개 양자간 무역협정은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 또는 복합위원회(Mixed commission) 등과 같은 각료급 또는 고위실무차원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조항들을 갖고 있음.

※ Multilateral negotiation 참조

bilateralism(양자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Bindings (구속적 양허)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구속적 양허는 WTO규범에 따라 이행강제를 할 수 있음. 이 목적은 관련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한도 관세(tariff ceiling)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적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binding overhang(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말함. DDA 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행관세율에 비해 양허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주로 브라질 등 개도국)는 협상을 통해 양허관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행관세보다는 높아 실제 시장접근에 영향이 없게 됨(paper cu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등 선진국들은 실행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Biomass Conversion(생물자원)

사탕수수 등 일부 농산물에서 에탄올, 에너지원 등을 추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BIS Ratio(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함.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됨.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함.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차입하더라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함. 국내 은행들이 1997년 12월말 BIS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온갖 대출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을 동결하거나 회수한 것도 이 규정 때문임.

BISD(Basic Instrument and Selected Document)

GATT의 공개된 문서시리즈로써 BISD 시리즈의 Volumes 2(개정), 3 및 4는 GATT의 본문을 수록하였음. Volume 2와 연간 증보판(supplements)은 GATT활동의 이해에 필요한 법적 문서, 결정 및 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음.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대상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했을 때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Blair House Accord(블레어하우스 합의)

1990년 12월 브라셀 회의 결렬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UR협상은 1991년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GATT 던켈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Draft Final Act)이 제시된 후 1992년으로 이어졌음. 최종초안(DFA)이 배포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던켈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분위기와 최종안이 각국의 합의없이 도출되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1992년 1월 13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향후 협상은 최종안을 기초로 하며 시장접근그룹, 서비스 그룹, GATT 규범 그룹, 협정초안 수정 그룹 등 4원 협상체제(Four track approach)로 진행될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2년 2월부터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양허협상(Track 1), 서비스 양허협상(Track 2), 규범법제화작업(Track 3)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EC간 협의가 전

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초안 수정협상(Track 4)은 개최되지 못했음.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1992년 7월 6~8일 뮌헨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으나 메이저(Major) 영국수상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타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는데 그쳤음. 또한 덤켈초안 제시이후 곧 타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재개된 1992년 UR 협상은 유럽각국의 EC 통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등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미·EC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왔고,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국가가 1992년도 말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각국은 협상타결에 노력을 경주하였음. 이에 따라 10월에 접어들어 협상 양대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례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마침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과 메이저수상이 동시에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어 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 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1992년 11월 20일에 타결된 미·EC간 합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국내보조감축은 품목별 AMS 감축방식에서 Total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EC의 공동농업정책의 주요골격인 생산통제하 직접보조를 허용대상화 하였고, 둘째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온 수출보조의 물량감축목표를 24%에서 21%로 축소하였음. 또한 미·EC의 동 작물에 대한 보조금지원 생산면적을 초기년도에 15%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가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음.

※ Agreement on Agriculture, Uruguay Round 참조

Block exemptions (분야별 제외)

일부 민감분야(sensitive sectors)는 특혜 무역협정의 완전적용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EC의 관행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 흔히 농산물 및 섬유류 제품 등을 배제함. 종종 특정부문이나 관행을 적용 가능한 법령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시행상의 용어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 덤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

구 분	덤켈최종초안	미·EC간 합의사항
시장개방분야 ○ 관세화범위 ○ 최소시장접근 ○ 이행기간	○ 예외없는 관세화 ○ 3%→5% 중량 ○ 1986~'88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 1993년부터 6년간	○ 덤켈초안수용 ○ 덤켈초안수용 ○ 덤켈초안수용 ○ 1994년부터 6년간
국내보조분야 ○ 허용대상정책 ○ 이행기간 ○ 보조금감축방법	○ 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준 충족하에 허용화 제시 ○ 1993년부터 6개년 ○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Product Specific AMS)	○ 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의 허용화 ○ 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 1994년부터 6개년 ○ 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합계하여 감축(Total AMS)
수출보조 ○ 수출보조감축방법 ○ 이행기간	○ 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감축 ○ 1993년부터 6년간	○ 재정지출 36%, 물량기준 21% 동시감축 ○ 1994년부터 6년간
보호수준재조정문제 (Rebalancing) ○ 사료곡물대체품의 관세조정	○ 불인정	○ 불인정원칙하에 사료곡물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EC간 협의
분쟁해결절차규정 (Peace Clause)	○ 일방적 보복조치 자제	○ 일방적 보복조치금지
Oilseeds 분쟁	○ UR의제가 아닌 기존 GATT 규정상 분쟁으로 인식	○ EC의 보조대상 생산면적 감축에 합의 - 초기년도 15% 감축 - 차기연도부터 10%씩 추가감축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WTO농업협정 제6조5항〉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 이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임.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

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대상에서 타당성 여부가 점검될 것임.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 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

※ Direct Payment to Producers 참조

Bogor Declaration(보고르선언)

'94. 11. 15, 인도네시아 Bogar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채택, UR합의사항 이행의 가속화 및 UR결과의 심화, 확대, 보호수준을 협상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보호조치의 증대 금지(standstill), APEC 무역 및 투자 활성화(facilitation) 프로그램의 확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consultative한 분쟁조절 서비스 창설가능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보고르선언의 성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20년) 등을 포함한 보고르선언 채택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Vision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APEC 국가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WTO의 차질없는 출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세계무역체제 강화·발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PEC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음을 들 수 있음.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국제수지보호조항)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 문제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 이는 GATT 회원국들간에 BOP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분야였던 만큼 참가국들 사이의 여러 가지 타협을 반영하고 있음. GATT 제12조는 수량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방어 목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 조치는 자국의 통화지급준비의 현저한 감소를 저지하거나 혹은 통화지급준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동 통화지급준비의 합리적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선진국과 수량제한 실시에 적용되고 있음. 1955년 GATT 조항이 수정되기 전부터 제18조는 개도국의 GATT의무이행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특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GATT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판대상이 되어 1955년 GATT 제18조를 수정하여 개도국들에게 있어 국제수지상의 곤란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 어떤 체약국이 제18조 4(a)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제18조 B항의 발동권리를 가지게 되며 제11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한다면 제12조를 사용할 권리도 가짐.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를 142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 해 왔음.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서 최초로 지난 '89. 10월 BOP조항을 졸업하고 '97. 7월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은 개방기로 약속하였으나 쇠고기는 UR 협상을 통해 2001년에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Border Protection(국경보호)

UR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와 함께 3대과제로 다루어졌던 국경보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조치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수입제도를 의미함.

Border Tax Adjustment(국경세조정)

국가별로 상이한 세금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또는 수출품에 대한 면세를 통해 국가간 세금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18C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자국의 세입증대를 위한 세금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점차로 무역에서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고 최근에는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특히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있어 환경관련 세금·부과금에 대한 국경세 조정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Bound Tariff(양허관세)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됨.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등이 논의됨. 한국의 농산물 양허관세율은 0%에서 887%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70%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12%에 이르며, 특히 75%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28개 품목이 평균 농산물 양허관세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의 농산물 양허관세율은 최고 114%까지 분포하지만 관세율 15% 이하의 품목이 전체의 70%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25%에 비해 훨씬 많음.

※ Tariff Concession 참조

bounty (보조금)

특별한 목적에서 국내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금으로서 조선 등 제조업 또는 농업용 인산비료 등의 생산과정에서 특정 투입요소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Bretton Woods System(브레튼우즈 체제)

이 체제의 기본이념은 고정환율과 금환본위제를 통하여 환율의 안정,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 부흥 및 후진국 개발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됨.

Brussels Ministerial Meeting(브라셀 각료회의)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라셀 각료회의는 107개 UR협상 참가국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개 UR 협상 참가국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명을 포함 약 1,500명의 대표와 취재기자단 1,500명, 로비스트 1,000여명 등이 참가함으로써 통상관계로는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음. 당초에는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UR협상을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제네바에서 진행되어온 사전 절충과정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결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당초 본 회의가 지닌 성격을 바꾸어 회원국간 중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만 내리고 기술적 사항은 추후 실무협상을 더 연장함으로써 UR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 하에 회의가 개최되었음. 4차에 걸친 비공식 각료회의(Green room meeting)에도 불구하고 브라셀 각료회의가 결렬 위기가 대두되자 12월 6일 헬스트롬(Helletrom) 그린룸회의 의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비공식 문서(Non-paper)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그 직후 개최된 제4차 농업협상그룹 그린룸회의에서는 이 비공식 중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협상의 기초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EC는 강력한 유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도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데 실패하였음. 브라셀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협상 그룹의 타결이 전체 UR타결의 전제조건임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비단 무역관련 국경

조치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농업정책까지도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UR 농업협상의 결과가 처음부터 우려되어 오던 것이지만 브라셀 회의를 통해 그같은 사실시 명확히 확인되게 된 것임. 따라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당초 자신들이 세웠던 협상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브라셀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결렬의 파국은 피하고 협상을 연기하게 되었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소해면상뇌증은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된 질병으로서 소(주로 성우)의 뇌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형되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이며, 역학적으로 경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경세포에 정상적으로 있는 프리온의 형태와는 형태상 다른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variant prion; 단백질의 일종)이 뇌의 특정부위에 축적되면서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BSE와 같이 뇌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형되는 질병들을 총칭하여 TSE(전파성해면상뇌증;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 하며, 양의 Scrapie, 사람의 CJD(Creutzfeldt-Jacob disease)와 Kuru, 사슴의 CWD(사슴만성소모성질환; Chronic Wasting Disease of Deer) 등이 이에 해당함. BSE는 육골분 등 BSE 관련 위험물품을 소에 급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에서 보고된 이후 이들 물품이 비교적 자유로이 교역되는 아일랜드, 스위스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1.6월에는 체코에서도 BSE감염소가 확인된 바 있음. BSE는 흥분, 불안, 마비증상 등 전형적인 신경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발생초기에는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발생확인후 10년이 경과한 1996.3월 사람의 변형 CJD(new variant CJD)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BSE는 환경호르몬과 더불어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이며,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주창자들의 모델이 되고 있음.

BTA(Border Tax Adjustment) 국경세 조정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 간접세의 반환 또는 부과금의 미징수.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 환급(drawbacks) 또는 감면(remissions) 등으로 불림.

BTL(Base Trigger Level, 기초발동수준)

Trigger level(발동수준) 참조

Built-in Agenda(기설정의제)

UR 협상기간동안 타결되어 WTO에 의해 집행되는 각종 협정에 규정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작업과제들로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기본통신(basic telecommunications) 및 해운서비스(maritime transport services) 등 협상, 추가적인 농업분야의 지원 및 보호감축 과제, 기 확정된 중간검토회의, 2000년까지의 새로운 서비스 협상개시 등을 들 수 있음.



Cairns Group(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구 Cairns라는 도시에서 공식 결성되어 케언즈 그룹이라고 함. 회원국은 당초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파라과이, 남아공 등의 15개국이

었으나 '99.11월에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3개국이 추가 가입하여 총 18개국이 됨.

Canada-Periodicals Case(캐나다 정기간행물사건)

캐나다는 ① 자국의 관세법(Tariff Code 9958)에 따라 특정한 정기간행물(Spilt-run Periodicals)의 캐나다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② 소비세법(Excise Tax Law)에 따라 Spilt-run Periodicals에 포함된 광고가치의 80%에 상당하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③ 캐나다에서 우송되는 외국 간행물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간행물과 같은 낮은 우편료가 아닌 높은 우편료(Postal rates)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1996년 3월 미국에 의하여 WTO에 제소되었음. 미국은 ①에 대해서는 GATT 11조 위반 ②③에 대해서는 GATT 3조 위반으로 제소하였는 바, WTO 패널은 ①②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장을 ③주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항변을 받아들였음. 미국의 ③주장에 대하여 캐나다는 이는 캐나다 국내생산자에 대한 생산자보조금으로서 GATT 3조 8항 b호에서 인정된다고 항변하였는데 패널에서 받아들여졌음. 그러나 ③에 대한 패널의 판정은 WTO 항소패널에서 번복되었음.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본 운용원칙으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 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음.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초과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두되었음.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비용 보조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EU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음. 이와 같이 가격 지지를 위주로 한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과잉공급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덤핑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CAP는 '99. 3. 11 EU농업이사회에서 합의되었으며 '99. 3. 24~26 베를린 EU이사회(정상회의)에서 Agenda 2000이 타결됨.

- CAP개혁 주요 내용 -

< 경종작물분야 >

- 지지가격은 200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각7.5%씩 15% 감축
- 의무휴경은 2000~06 기간동안 10%유지

< 쇠고기 >

- 지지가격을 2000년부터 3년간 일정비율로 20% 감축
- 쇠고기보상금의 일부는 회원국이 자체실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부여
- 당초 2002. 7월부터 폐지키로한 공공수매제도는 톤당가격(bull 및 steer)이 1,560euro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만 수매를 실시하는 안전장치(safety-net)수매제도를 도입

< 낙농분야 >

- 버터 및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을 2005/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
- 우유생산쿼타는 2003부터 1.5%증가시키고, 5개회원국(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에 대해서는 추가 증량

< 기 타 >

- EU의 예산감축과 관련한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의 점진적 감축 방안은 폐기

※ Agenda 2000 참조

capping(상한 설정)

관세를 감축할 때 일정 수준 이상 관세를 설정할 수 없도록 상한치를 설정하는 것

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공동시장)

1973년 창설된 관세동맹형태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연합.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carry forward(조상)

수출국이 당해년도에 익년도의 쿼터를 앞당겨 소진하는 행위

Cascading tariffs(중첩적 과세)

상대적으로 단순한 최종 제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가공정도가 늘어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행을 말함(tariff escalation 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짐). 동 관세의 목적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임.

causality(인과성)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CB(Capacity Building, 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개도국이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대다수 협정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92.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02년 6월 현재 18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94.10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음. 각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음.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임.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국제관세기구)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여러 나라는 경제통합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관세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의 일부 국가는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위하여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을 설립,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경제문제와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였음. 경제위원회는 OECD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관세위원회는 관세기술상의 제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기초로 세계적인 규모의 관세기술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1952년 11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발효시켰음. CCC는 각국의 관세행정체도로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관세제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CC에 1968. 7월 가입하였음. '94. 6월에 세계관세기구로 개칭하여 활동중이며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활동을 촉진하며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함. 현재 관세분류체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이스탄불 협약 및 교도협약의 운영을 맡고 있음. 기구의 소개를 통해 투자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지원의 촉진, 적절한 투자진흥정책 및 전략수립과 관련한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부(USDA)산하에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 10월 Delaware 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후 1948. 7월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해 재설립되었음. 수정된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는 용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농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농무부장관 외에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상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함.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공사의 직원들은 농무성 직원이고 상품신용공사는 소속운영직원이 없으며, 공사의 가격지원, 보관, 비축 및 전환사업이나 가격지원상품의 국내 구입 및 처분은 연합농가지원처(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 : CFSA)의 시설과 인

력을 통해 수행되며, 상품신용공사 통제하의 비축물량의 수출 및 외국 지원 업무는 해외농업처(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FAS)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CCC의 품목별 지원계획의 기본구조와 운영요령은 □□ 1996연방농업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the Farm Bill)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품목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품목지원계획에는 밀, 옥수수, 면화, 쌀, 담배, 우유 및 낙농품, 보리, 귀리, 수수, 땅콩, 설탕이 포함됨. 대부이자율(Loan rates)은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며, 목표가격(Target price)은 생산비를 반영하여 설정됨. 농가소유곡물비축계획(Grain reserve programme)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농산물의 재고가 국내나 수출수요보다 많은 때에는 비축했다가, 재고가 줄거나 가격이 유리할 때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유 및 낙농품에 대한 지원은 버터, 치즈 및 무지방 건조우유를 가공업자나 처리업자들로 부터 구입하여 줌으로서 수행되며,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CCC지원계획은 없음. 품목별지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CCC는 비축된 물자를 인수(Take over)하거나, 구매(purchases)하는 방식으로 취득함. 한편, CCC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품목별지원계획이나 민간비축을 통해 구입될 식량을 연방,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지원하는 국내 식량원조계획도 수행함. 또한 CCC는 판매, 수출업자 보전, 직접금융 및 기타 업무수행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식량원조 및 지원계획도 수행하고 있음.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하는 특히 CCC는 수출신용·보증사업과 여타 수출보조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CCC는 3가지의 수출신용·보증사업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최단기 공급자신용사업(Very-short term supplier credit programme), 단기수출보증사업(Short-term export guarantee programme), 중기수출신용·보증사업(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me)이 있음.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me : 수출촉진계획)하에서 CCC는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농산물을 수출대상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me : 낙농품수출진흥계획)하에서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농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EEP와 DEIP 계획은 수출업자에 대해 직접현금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MAP(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하에서 미농무부는 해외시장개발사업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무역기관들에게 비용분담보조를 통해 미국농산물의 수출시장 확장, 유지 및 개발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모든 MAP계획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CCC와 비영리농산물무역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FAS(해외농업지원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CCC는 또한 비축물량으로 부터 수출시장에 낙농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나 어떠한 품목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음.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동협정은 199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케언즈국가간에 체결된 FTA임. 쇠고기·사탕수수의 관세철폐기간은 16년내, 제분용 밀은 18년내, 낙농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의 Out-quota관세는 철폐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99년말부터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FTA에서 칠레측이 협정문 체결시 참고사례로 우리측에 제시한 바 있음.

CCP(Counter Cyclical Payment, 가격보전직불제도)

2002년도 농업법(Farm Bill)에 의거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미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옥수수, 수수, 대맥, 귀리, 소맥, 대두, 유지작물, 면화 및 쌀 등의 품목에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조금 지불제도임. 목표가격은 1974년 도입된 부족불제도와 같은 개념이지만 차이점은 첫째, 당시에는 없었던 고정직접지불금의 정부 보조금이 농가에 별도로 지급되므로 차액 지불시 이것을 감안했다는 점과 둘째, 과거에 재배면

적을 근거로 현재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WTO차원의 허용보조범위로의 분류근거를 마련 점을 들 수 있음.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1993년 3월 발효됨.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Slovenia, Romania, Bulgaria 등 7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협정구조를 지닌 자유무역협정임.

Ceiling Binding(한도양허)

특정한 수준에서 관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허하는 WTO 개념으로서 종종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 양허는 보통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의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음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04년 10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그룹 구성 합의하여 '07년 타결을 목표로함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수입상품의 원산지국을 입증해주는 서류.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 규정 실행의 일부임.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음.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멸종동식물 보호협약)

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73.3월 채택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곰 등 약 3만여종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 및 상거래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75.7월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93.7.9 가입하였음. '02. 6월 현재 158개국이 가입하였음.

Circumvention(우회 덤핑)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 우회덤핑을 방지할 경우에는 반덤핑조치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국제무역질서의 존립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다만, 우회덤핑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국제간 무역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음.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우회 수출보조)

WTO 농업협정 제10조 1항은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형태의 수출보조 이외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계량화가 가능한 수출지원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해 나가는 한편, 사실상 계량화가 어려운 여타 수출지원은 금지토록 하여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보조가 우회수출보조인지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수출보조리스트에 제시된 수출보조가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은 국제적인 합의 규율을 정립하여 준수, ②국제식량원조는 FAO의 국제식량원조 규율준수, ③기타 수출 지원은 수출지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원금지에 해당됨.

※ Export Subsidy 참조

Clawback

GI 보호확대 문제와 관련한 EC의 주장. EC는 GI와 관련된 농산물 list를 마련하여, 동 list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하되, TRIPS 협정 제24조 상의 예외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 TRIPS 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이미 선의로 GI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관용 명칭이 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예외가 됨을 규정

Cluster(협상방식)

협상 전 분야를 하나로 묶지 않고 관련된 분야마다 묶어 협상하여 합의 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방식과 분야별 방식의 중간방식으로 캐나다에서 주장함.

CMA(Current Market Access, 현행시장접근)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 Market Access 참조

Code-conditioned most-favored-nation-treatment(협정가입 조건부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가 동일한 협정의 회원국에만 부여되는 경우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이 그 예임.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는 OECD 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 의 하나로써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 규약을 1961년 12월 이사회에 의해서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채택함. 이 규약은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 투자 및 자본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기존회원국이 동의하면 양대규약의 일부조항에 대한 유보 가능함.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에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이며,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 본부내에 위치하며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음.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의 달성에 있으며 각국 정부의 채택을 위해 권고될 수 있는 식품기준의 개발.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식품기준작업의 국제적인 조화 및 조정작업임. Codex 기준 제정 실적으로는, 237종 식품기준 설정, 3,274종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 25종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41종 Codex of Practice 제정, 76종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185종 농약 안전성 평가, 54종 동물약품 안전성 평가임.

COGECA(General Committee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유럽농협연합회)

1959년에 설립되어 유럽내 33,000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임. COPA(유럽농민단체연합회)와 더불어 EU 최대의 농업 관련 NGO임.

Combined Duty(혼합세)

선택세와 복합세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 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양질의 물품이나 시가가 등귀할 때에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열가품이나 시가가 하락할 때 또는 외국환이 저락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복합세(Double duty)는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임. ※ Compound Duty 참조

Commercial Loan(상업차관)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민간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100만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을 차입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집행위원회)

20명의 위원(European Commissioner)으로 구성된 EU의 주요 집행기관으로 각 국가의 이익이 아닌 EU차원의 이익을 대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2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기타 10개국은 1명의 위원을 선출. 임기는 5년이며 중임제한은 없음. 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며 각 집행위원은 특별 담당업무가 있으나 행위의 책임은 전체가 지며 모든 사항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함.

Commitment(약속)

WTO 협정 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양허(bindings), 서비스 개방 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s) 등을 들 수 있음.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협정위원회)

1996년 2월 WTO 일반이사회 결의로 설립되었음. 동 위원회는

GATT 24조 위원회라고도 하는 바, 이는 동 위원회가 수많은 지역협정이 GATT 24조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GATT 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협정에 대하여 MFN 원칙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Common Market(공동시장)

가장 진전된 형태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서 회원국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외에도 노동, 자본 및 서비스도 제한없이 이동 가능한 상태를 말함. 1994이전의 EU가 여기에 해당됨.

※ Regionalizm 참조

Compensatory Payment(보상지불제도)

EU의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도. 보상지불제는 1992년부터 농산물 과잉과 재정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인하하고 그에 따른 농민소득의 감소분을 지불하는 제도임. 지원 방법은 기준면적에 기준단수를 곱한 다음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상지불 단가는 개입가격의 인하에 따라 보상지불이 그만큼 증가하여 실질적인 목표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곡물류에 대한 보상지불액 단가는 '93년 25 ECU/톤에서 매년 인상되었으며, '96년 이후는 54.34 ECU/톤으로 고정. 보상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면적의 일정 부분을 휴경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의무 휴경조항으로 감축대상면제정책(blue box)이 되었음. 의무휴경비율은 재고 수준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되는데, '94년 15%, '95년 12%, '96년 10%, '97년 이후 5%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고, 경지면적이 곡물 92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면적보다 작은 소규모 농가(EU 평균으로는 20ha)에 대해서는 휴경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Direct Payment 참조

Compound duty(복합세)

한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예: 30% + 200원/kg)

Commercial Consideration(상업적 고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조건 등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무역투자위원회)

1994년 기존의 무역투자 자유화 특별작업반을 병합하여 신설되었으며 각 APEC 회원국 차관보나 국장급이 참석,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제반 절차와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 검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임기 2년의 회장을 선출하며 초대 의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보가 선출되었음. 매년 고위실무회의와 연계되어 3~4회 개최됨.

Compensation(보상)

한 국가가 GATT협정 제19조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하거나 제28조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요 이해 당사국에 대하여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내지 자유화 등으로서 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함.

compound tariff(복합관세)

종가세와 종량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관세. 어떤 상품에 대해 1달러의 종량세에 10%의 종가세가 더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Comprehensive Tariffication(포괄적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UR협상을 통해 각종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형태로 통합시킨다는 개념임.

Concession (양허)

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예임(Commitment 부분 참조)

Consensus(만장일치제)

GATT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제소국과 피소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방식임.

Conservation Compliance(보전동의 규정)

1985년 미국의 농업법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지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위해서 요구되는 환경농업 실행지침 규정을 말함. 즉 이규정은 농가에 대해 특정한 환경보존계획의 이행을 상품프로그램 수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Consolidated Text(통합협정문)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 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함.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방지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류를 국제적인 자원으로 중시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72. 2월 이란 람사에서 채택한 협약임.

Consultation(협의)

WTO DSB 분쟁해결절차의 초기단계로서 분쟁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계당사국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회에 임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협의 요청국은 즉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요청은 요청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DSB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함. 협의결과, 협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또는 협의기간중이라도 협의당사국 모두가 협회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 협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부패성 물품이 관련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임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협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contingent measure

WTO 협정 하에서 합법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덤핑수출, 보조금 지급, 예기치 않는 수입급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이 있음.

Contracting Party(체약국)

GATT 가입국을 의미함. 체약국 혹은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전자는 개별 체약국을 의미하고 후자는 복수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체약국이 함께 행동할 때를 의미함.

COPA(Committe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유럽 농민단체협의회)

1958년에 창설된 유럽내 최대의 농민단체조직으로 EU내 15개국 3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벨기에 브라셀에 소재함.

Copyright(저작권)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도서,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악보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정됨.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공표, 출판, 복제, 공연, 방송, 연주, 전시 등의 권한을 그 저작권 존속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향유함.

Council of Ministers(각료이사회)

EU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EU의 모든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EU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국 각료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외상들이 참석하는 일반 각료이사회와 관련 각료들이 참석하는 특별 각료회의이사회로 구분됨. 의장은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바뀌며 그 권한은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규칙, 지침, 결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확정권, 협정체결권 등을 가짐. 의결은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결정함.

Countervailing Measure(상계조치)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제10조-23조는 보조금 지급으로 GATT 6 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여타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계조치 제조자격은 유사상품 국내생산자 혹은 대리인, 단 제조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조사불가함. 조사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초과 금지토록 하고 있음. 보조금액은 지분참여, 정부대출, 대출보증,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 등을 □□수혜자 수입개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이 소액(De-minimis)이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경우(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이하)와 같은 소액보조액은 상계관세부과를 배제 하고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음. 상계관세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Country List(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UR 협상시 농산물그룹 의장(DeZeeuw)은 1989년 UR 중간평가이후 푼타텔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음. 협상참가국들은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Country list는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임. 주요국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각국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보호 현황자료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음. 미국과 Cairns Group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의장초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수입국들은 의장초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국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국내보조금 현황자료에 있어 대부분의 농업지원정책을 NTC목적달성, 농업개발목적 등의 이유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그 외에도 국내 보조자료는 물론 관세상당액 자료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었음. 한국도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초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UR 농업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농업협상 및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반대해 온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따라서 한국은 농업보호 현황자료중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에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감액대상보조금(정책)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C/L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수출보조금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Country of Origin(원산지)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가공된 국가. 당해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유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물품의 생산공정이 1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생산국이 원산지이나, 2개국 이상일 경우 원산지 결정이 문제됨. 당해물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임.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객관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반무역통계,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의 기준이 되며 제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 특혜원산지 규정은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GSP 등 특혜관세 부여시 관세혜택의 대상물품을 결정하는 기준임. WTO 원산지 협정은 비특혜원산지기준과 별도로 특혜원산지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WTO 원산지 협정(Rules of Origin)의 후속과제로 세계 각국의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원산지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협정 체결시 세계각국은 자국의 원산지 기준을 협정과 조화시켜야 함.

Country of Origin Marking(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부착내지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Country Quota(국별 쿼타)

국별쿼타는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국가별로 할당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인위적인 국가간의 물량배정으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이는 무차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GATT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에만 실시를 허용하는 한편,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국가간에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Country Risk(국가 위험도)

민간기업 또는 개인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Commercial Risk라고 하며 반면 그 차주가 속한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위험도라고 하는데, 특정국에 행하여진 투자나 여신에 대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상 위험도를 지칭함. 외채상환 부담율(DSR, Debt Service Ratio)을 그 측정치로 하고, 일반적으로 DSR이 20%에 미달하면 위험수준으로 평가됨. 일반적으로 국가위험 발생원인은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 부족, 전쟁이나 대란, 수출입 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임. 또한 혁명 등에 의한 채무승계의 거부 등을 의미하는 Sovereign Risk와 국제수지 곤란에 의한 대외지급 지연 등을 의미하는 이전 리스크(Transfer Risk)로 구분.

Credit(기여실적)

UR 농산물협상에서 EC 및 일본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농업보호 및 지원조치의 점진적 감축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UR 출범년도인 1986년으로하여 그 이후 자유화 이행실적을 향후 감축약속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임.

Critical mass

사전적 의미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을 의미하며, 주로 NAMA 협상에서 분야별 자유화를 논의할 때 특정 분야 및 품목의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자발적으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교역량(또는 생산량)이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기준을 넘게 되면 ‘critical mass를 형성하였다’고 말함. ITA 협정에서는 critical mass

를 교역량 90%로 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ITA 협정이 발효 되었음.

Crop Year(곡물년도)

일본은 4월 1일, EU와 뉴질랜드는 7월 1일, 캐나다는 8월 1일, 호주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잡곡의 유통년도임. 미국의 잡곡 곡물년도는 보리와 귀리의 경우 6월 1일, 옥수수과 수수의 경우 9월 1일에 시작됨.

Cross Compensation (교차보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Cross Retaliation(교차보복)

WTO 협정하에서 피소당사국이 패널판정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1)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3)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게 됨.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보존유보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보전 정책.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CRP는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High Erodible Land)를 농민에게 매년 임차료와 표토 보전비용의 50%를 지불하는

대가로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를 생산에서 10년동안 배제시키는 장기농지은퇴프로그램(Long-term Land Retirement Program)임. 즉, 농지소유자와 정부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긴급가축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CRP의 기본목적은 경작지의 토양침식을 줄이는 것이며, 그외에 식량의 장기생산력 보호, 토양 침전물 감소 및 수질개선, 야생동물 서식처 마련, 과잉생산 억제 및 농가소득지지 등이 있음. CRP계약하의 농지는 잔디 또는 나무와 같은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피복작물을 심도록 되어 있음.

※ Wetland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Compliance 참조

C/S(Country Schedule, 국별양허표)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임.

< 우리나라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

□ 시장접근 분야

- UR 협상개시 이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반대해온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했으며, 여타 통합 공고품목의 경우에는 관세화방식을 채택함.
- BOP 품목은 양허품목의 경우 일정기간의 쿼타제도 유지와 관세율 인상방식으로, 비양허품목의 경우 상한설정방식으로 각각 개방계획을 확정하였음
- 관세상당치와 시장접근물량 계산에서는 '88~'90년을 기준(협정문은 '86~'88년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도국우대조치를 확보하여 감축율, 감축기간이 선진국의 2/3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모든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양허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시켰음
- 우리나라는 총 1,312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WTO에 양허하였음
 - 쌀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취급조항을 농업협정부속서에 반영하였으며, C/S에도 양허세율을 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 여부를 재협상 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1~4%)은 허용토록 하였음.
 - '95년 1%~'99년 2%(매년 0.25%증가)
 - 2000년 2%~2004년 4%(매년 0.5%증가)

< 연도별 MMA 물량 >

'95	'96	'97	'98	'99
51천톤 (1%)	64 (1.25)	76 (1.5)	89 (1.75)	102 (2)
2000	2001	2002	2003	2004
102천톤 (2%)	128 (2.5)	153 (3)	197 (3.8)	205 (4)

-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고구마 등 개별 법령으로 수입을 제한해 오던 주요 농산물(통합공고상 111개품목)은 TE(관세화)에 의한 높은 관세로 개방하면서 품목에 따라 최소 및 현행 시장접근물량 허용
 - 관세상당치(예) : 보리 333%, 대두 541%, 옥수수 365% 등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출입 공고상 수입을 제한해 오던 BOP품목(95개품목)은 고율관세로 양허하되, 품목에 따라 '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방시기를 달리하여 연장함.
 - 쇠고기는 2001년에 자유화

- 돼지고기, 닭고기는 '97.7월 자유화
- 고추(300%), 마늘(400%), 참깨(700%) 등은 '95년에 자유화

□ 국내보조

- 국내보조 감축분야에서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품목에 대한 수매자금 보조금을 Total AMS로 계산하여
 - 당초 '89-'91을 기준으로 개도국 감축율 13.3%를 적용 17,186억원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91년도 이후 쌀 수매보조가 크게 늘어나 이행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수매보조를 크게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 쌀에 대해서는 '93년도를 기준으로 삭감키로 결정하고 C/S상에 () 안의 숫자로 병기
 - 국내보조금 감축한도('89~'91기준 산정, 10년간)

(억원)

감축기준	감축목표	년도별감축액	최종년도
17,186 (22,595)	13.3%	228.6	14,900

*주 : ()는 쌀의 경우 '93년을 기준으로 보조액을 계산하고 '89~'91년 기준 총감축 보조금과 병기함

- 품목별 감축보조액 산출내역

(억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합계
보조액	15,684 (21,093)	523	729	226	24	17,186 (22,595)

< 연도별 보조 상한선 >

감축기준 (Base Total AMS)		연도별 보조 상한선		비 고
품 명	AMS	연도별	Total AMS	
	억원		억원	
쌀	1,568.4 (2,109.3)	1995	1,695.74(2,182.55)	○ AMS생산액의 10% 초과하는 품목에 한 하여 Total AMS에 산입 (De-minimis/최소 허용보조:선진국:5% 이내, 개도국:10%이내)
보 리	52.3	1996	1,672.90(2,015.60)	
콩	72.9	1997	1,650.03(2,028.65)	
옥수수	22.6	1998	1,627.17(1,951.70)	
유 채	2.4	1999	1,604.32(1,874.75)	
계	1,728.6 (2,259.5)	2000	1,581.46(1,797.80)	
		2001	1,558.60(1,720.85)	
		2002	1,535.74(1,643.90)	
		2003	1,512.89(1,566.95)	
		2004	1,490.00	

□ 수출보조분야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C/S 제출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 6월 리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권고와 제47차 UN총회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함에 따라 1993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발족됨. CSD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대기, 해양, 토양, 담수 등 39개 분야로 구성된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감시, 평가하고, □□의제21□□에 관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검토와 각종 국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산림원칙선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1993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CSD의 이사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을 선출한바 있음(임기3년).

CSE(Consumer Support Estimate, 소비자지지추정치)

농업지지정책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예를 들면 경쟁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입) 부(-)의 이전가액을 말하며, CSE는 농업보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과된 암묵적인 세금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CSE는 보통(-) 수치로 표시하며, (-) 수치가 클수록 사용자에게 대한 암묵적인 세금이나 소비자로 부터의 이전가액은 커짐. C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지로 인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에 대한 시장가격 이전가액과 관세나 지대로 정부나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분, 기타 농정수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지출액(보조금등)등이 있다. CSE계산대상품목은 PSE 산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밀, 옥수수, 쌀, 유지작물, 설탕, 우유, 쇠고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국내생산이 없거나 미미하여 PSE 산출대상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소비량이 상당한 경우에는 CSE 산출대상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음.

※ PSE 참조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음.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과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

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됨. 그동안 환경과 무역문제는 상호 독립적으로 접근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추진키 위해 상호정책간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GATT, UN, OECD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음. GATT는 '71년 11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EMIT :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를 설치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최초로 □□개별국가가 환경목적하에서 환경조치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장벽협정(TBT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한 바 있음. 이후 GATT내에서는 환경관련 작업은 '90년 11월 제1차 EMIT 그룹회의가 소집되어 '9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되어 ①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②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94년 4월 15일 UR의 최종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위해 마련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기로 결의하였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 의제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1)
- ②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2)
- ③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 세금, 표준, 기술규정, 포장, 재활용, labelling 중 상품조건과의 관계(의제 3)
- ④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의제 4)
- ⑤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범의 분쟁해결절차(의제 5)
- 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제한(의제 6)

- ⑦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의제 7)
- ⑧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환경관련조항(의제 8)
- ⑨ 서비스교역(GATS)와 환경과의 관계(의제 9)
- ⑩ NGO참여 및 자료제공 방안

지금까지 무역환경위원회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WTO사무국에서 취합·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앞으로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후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각 의제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새로운 작업 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각 의제별(Items)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CTE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음.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위원회)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93)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APEC 산하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SOM과 연계하여 연 4회 정도 개최됨. 경제 활동 증대,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원활화, 무역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한 협력, 회원국간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정에의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서 오사카 Action Agenda에서 제안된 15개 분야의 기업인 활동의 장벽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CTI 산하 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와 4개의 전문가회의(투자, 정부조달, 분쟁조정, 지적재산권) 3개의 비공식 회의(시장접근, 서비스, 기업인이동) 등이 있음. 특히, 96년에 제안된 CAP(공동실행계획)과 97년 범위가 선정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논의가 CTI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Customs Union (관세동맹)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에는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모두 폐지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국가들 그룹임.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품, 납세의무자, 과세율 및 과세율표의 4개의 요소를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관세율(Tariff rate)과 과세표준인 바, 과세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세의 경우)이나 또는 수량(종량세의 경우)을 의미함. 즉, 종가세(Ad valorem duty)의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 곧 과세가격(Customs value)이 되는 반면에, 종량세(Specific duty)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 과세표준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수입 시점 등에 따라서 달리 결정됨. 이와 같이 다양한 가격(value)중에서 일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법률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Current Total AMS(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이행기준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를 말하며, 매년 그 산출기초자료를 이행점검자료로 WTO 농업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AMS 참조

CVD(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수출국에게 제조·생산·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

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함. 그 절차를 보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에 의거, 국내산업을 실질적인 피해나 국내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당해 보조금·금액 이하의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Countervailing Measuers 참조

D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됨.

Decoupling

디커플링이란 농업지원 정책이 생산량 수준과 소득지지와의 관련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경우 부족분지불제도에 의한 소득지지와

함께 운용된 생산감축정책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WTO 농업협정상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러한 농업보조 정책은 허용된다.

Decoupled Income Support(비연계소득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대상보조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보조로서, 수혜대상자는 소득, 생산자, 농지소유자여부, 생산요소사용량, 생산수준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기간이후의 특정년도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되며 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보조에 해당됨. 재해구호 및 농민 은퇴, 휴경,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득보조와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한 생산중립적인 소득보조 방법임.

※ Direct Payment to Producer 참조

Deficiency Payments(부족불 제도)

미국의 전통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지지정책.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시장가격 및 용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함. 이 제도는 주요작물(소맥, 옥수수, 쌀, 보리 등 8개)에 대하여 지지가격인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참여농가에 지불해 주는 제도이다. 농민이 본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재배면적이 정해지고 지정된 작목만을 심어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해야 하는 등 정부가 세운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이 제도는 7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음.

Delayed Tariffication(관세화 유예)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로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De-minimis(최소허용보조)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 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 Agreement on Agriculture 참조

Destination Principle(소비국 과세원칙)

제품교역시 간접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모든 형태의 내국세와 수입관세 등을 제품 수입국에서 부과한다는 무역에서의 과세원칙의 하나로 생산국 과세원칙의 대칭개념임.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

UR 협상과정 중에서 개도국,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분류기준의 설정문제를 놓고서 선·개도국간에 많은 논란이 진행

되었으나, 통일된 분류기준의 제시에 대한 의견차이로 UR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합의 상태로 종결됨. WTO 제반 협정문 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만 개도국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정상에서도 최빈개도국의 분류기준(1인당 GNP 1,000\$ 이하 국가)은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일반개도국간의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WTO 협정상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는 기존 GATT상의 일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자기선언원칙(Self-declaration principle)에 의해 개별 국가별로 결정됨. 우리나라는 WTO농업협상 감축약속의 이행시기, 감축율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행하고 있음.

Dezeeuw Draft(드주의장 초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회의(Mid term review)의 결의에 따라 각국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이러한 각국 제안에 기초하여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거의 모든 협상의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협상 그룹의 드주(Dezeeuw) 의장은 1990년 4월 이후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개별 접촉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어 협상골격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이에 TNC회의에 합의초안을 제출·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드주의장은 보고시한에 쫓긴 나머지 초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그동안 공식·비공식 회의를 토대로 합의초안을 작성, 1990년 6월 27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던 것임. 드주의장은 “농산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초안”으로서 동년 7월 9~11일까지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G7)에 제출하여 7월 23일 개최되는 TNC 회의에서 농산물협상 합의골격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결단

을 유도하였으나 농업보호 및 지원수준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협상 목적의 재확인과 의장초안은 협상의 토대(Basis)가 아닌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s)”으로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으로 귀착되었음. 또한 7월 12~13일까지 진행된 “농산물 그룹 제23차 공식회의”에서도 의장초안의 채택여부가 집중적인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의장과 수출국들은 의장초안이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력 제기하고 EC는 그동안 EC가 주장해 온 국경보호 및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를 포괄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Global Commitment) 것과 보호 및 지원수준의 재균형화(rebalancing), 관세화에 따른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장초안의 내용 합의에 강력 반대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Dillon Round(딜론라운드)

1960년 5월부터 1961년 7월까지 개최된 GATT의 다섯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차관이었던 Douglas Dillon의 제창으로 개시된 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다자간협상임.

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킴.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것이 OECD국가들의 추세임.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 도입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으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음.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으로 부터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조건과 함께 제6항으로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EU는 지난 1992년부터 CAP개혁을 통해 농업지원정책을 기존의 가격지지 정책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하여 현재는 직접지불 예산이 전체 농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의 직접지불 예산은 95년의 73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322억달러로 무려 40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은 1998-2000년동안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기간중 총 550억달러가 직접지불 예산으로 사용되었다. 미국 직접지불 예산의 대부분은 생산자율계약직접지불(PFC), 용자부족분지불(LDP), 긴급시장지원지불(MLA)로 이루어져 있음.

※ 생산자율계약직접지불(PFC), 용자부족분지불(LDP), 긴급시장지원지불(MLA) 참조

Direct Payment to Producers(생산자 직접지불제도)

WTO 농업협정상 허용대상이 되는 직접지불은 다음과 같은 허용보조의 일반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 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②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함. WTO협정상 직접지불제의 유형별 요건(허용대상)을 살펴보면

- ① 비연계 소득보조 : 기준기간 동안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

의된 기준으로 수혜대상 결정하고, 특정년도의 소득지원 규모는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의 생산자의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가격,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켜서는 안되고, 농업생산을 지원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② 소득보조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 평균 농업소득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손실의 70% 이하로만 보상 ③ 자연재해로부터 구호를 위한 지불 : 전쟁, 병해충, 병의 발생 등 재해로 인해 평균 생산량의 30%를 초과한 손실에 대해 재해복구에 필요한 총비용 이내에서 보상 ④ 탈농지원 : 상업적 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항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⑤ 휴경지원 : 농지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의 휴경, 가축의 경우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직접지불 ⑥ 구조조정 투지지원 : 불리한 생산여건에 있는 생산자의 재정적, 물리적 구조조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가격,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켜서는 안되고, 특정품목의 생산금지 또는 생산을 명령하거나 방법을 지정할 수 없음. ⑦ 환경보전지원 : 정부의 환경 및 토양보전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전. ⑧ 낙후지역에 대한 지불 : 낙후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상. ⑨ 기타 직접지불제도 : 위에서 열거된 직접지불 외에 특정년도의 소득지원규모는 기준기간 이후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 ⑩ Blue Box(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 WTO 농업협정에서는 비록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생산을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직접지불은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직접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초로 제공되는 경우, 생산을 종전의 85%이하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축산의 경우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적용됨

※ Blue Box, Decoupling, Direct Payment 참조

Dirty Tariffication(편법 관세화)

UR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국내가격, 국제가격 등의 수치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실제 국내외가격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양허한 행위를 가리킴.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들은 UR협상결과 기준연도로 채택한 1986-88년은 농업보호수준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이고, 국내가격은 높은가격을 국제가격은 가능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Disguised Trade Barriers(위장된 무역장벽)

표면상 무역과 무관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나 사실상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뜻함. 이런 조치들로는 소비자 보호법, 제품표준 및 검역규칙 등이 있음

Dispute Settlement(분쟁해결)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의 약점은 강대국을 제재하는 패널보고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GATT협정 위반이라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었음. 따라서 일부 무역강대국의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력 행사를 통해 GATT 규범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GAT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UR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로 일원화하였고, 둘째는 패널진행이 과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

택되도록 하였음. 넷째, 패널패소국은 상설 상소기구에 언제나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국에 대해 피해보상 또는 양허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섯째로는, 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분야 내에서 보복이 허용되며, 이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복이 인정됨. 무역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주관하에 일원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수단이 통상압력으로 사용될 여지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 주요절차를 보면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보복조치 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DSB의 권고나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거 30일 이내 보복조치를 허용함. 보복조치는 동일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나 여타 협정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DSB, DSU 참조

Diversiory Dumping (전환적 덤핑)

수출국이 최종수출 목적지로 직접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제3의 중간국가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로 중간지역의 가격구조를 활용하여 최종 수출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

Diversity of Origin(수입선다변화 제도)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수입선 전환을 통한 지역간 무역불균형의 해소 및 국산화 촉진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78년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로 주요 대상품목분야는 자동차, 기계, 전자·전기, 섬유(직물), 화공제품 등이며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본을 주요 대상국으로 하여 운용함.

Domestic Subsidy(국내보조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먼저 감축이 면제되는 정책의

기준과 대상을 예시하고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원은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품목별 지원액(Product specific AMS)과 품목불특정지원액(Non-product specific AMS)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지원액을 총액으로 합산(Total AMS)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용기준에 합치되는 정책은 지원액 수준에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며 감축약속 지침에 부합되는 지원에 대하여는 상계조치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매지원 금액을 '89~'91년도를 기준으로 17,185억원에서 매년 228.6억원을 10년간 감축하여 최종년도에 14,900억원으로 13.3% 감축키로 Country Schedule에 제시하였음.

※ Agricultural Subsidy 참조

Down Payment(초기 가시화 자발적 선행조치)

APEC EPG(저명인사 그룹)의 제안의 하나로서 APEC 회원국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 관세율 감축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유화 선행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Drawback System(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과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①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야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의 환급, ③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의 환급 ④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한 부과취소 등이 있음. 이와 같은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 즉 위약물품을 수출 또는 멸각하거나 수입면허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그 물품들이 수입되었다 하여도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고,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 중인 관세는 납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서 징수를 한 후에 환급을 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의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것임. 1974년까지 수출용 원자재는 수입시 사후면제제도에 의해 관세를 현금으로 물지 않고 관세 지불의 유예를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수출면장이 발급되면 그것으로 관세담보를 해제하였는데 1975년부터는 수출용 원자재도 수입시 일단 모든 관세를 일반자료와 같이 지불하고 수출이 이행되면 지급한 관세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산하기구로서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WTO 협정의 부속서 2를 의미하는 것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임. 동 양해는 GATT 1947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 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Due Restraint(적절한 자제)

※ Peace Clause 참조

Dumping(덤핑)

1994년 GATT 제2조에 의하면,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함.

Dumping Margin(덤핑 마진)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함.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수출국의 정상가격-수출가격=덤핑마진”이라고 함. ※ Anti-Dumping 참조

Dunkel's Draft Final Act(던켈초안)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재개를 위한 막후절충에 대한 권한이 맡겨졌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각국은 협상재개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1991년 협상이 시작되었음. 이후 던켈총장은 주요 협상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2월 25일 협상재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UR협상은 재개되었음. 던켈총장이 제시한 제안서에서는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 등 각 분야별 협상요소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협상분야별로 기술적 쟁점에 대한 협의가 3~6월 까지 개최되었음. 이러한 기술적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각 협상분야별로 쟁점이 되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던켈총장이 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자격으로 내놓은 6월 24일의 의장대안서(Options paper)였음. 의장대안서(Options paper)는 글자 그대로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입장만이 강조된 것은 아니고,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었음. 따라서 대안서에 명시된 분야별 각종 대안들을 하나 하나의 단일안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협상의 관건으로 대두되었음. 따라서 대안서 제출이후의 협상과정에서 대안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국은 자국 입장에 유리한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1991년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각국의 경직된 협상자세 때문에 대안서의 각 협상분야별로 제시

된 여러가지의 대안들을 하나로 줄여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음. 각 협상요소별로 제시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협상은 각국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써, 특히 농업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은 주요 협상국들의 합의에 의한 조속한 타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간지연은 협상자체의 결렬이라는 인식하에 던켈총장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1일 작업초안(Working paper)을 독자적 책임하에 제시하였다. 작업초안은 대안서에 제시된 대안들을 단일안으로 채택한 문서로서 특히 농산물 수출국측 주장을 주로 반영한 단일안이었으나 감축폭, 이행기간 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제시하였음. 이것은 워낙 여러번에 걸쳐 협상초안이 제시된 뒤 주요국에 의해 거부되고 이때마다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절충이 어려운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란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급적 사상 거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모든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cation)를 시장개방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작업초안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논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던켈이 의도한 1991년내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함을 판단한 던켈총장은 전체 UR협상그룹의 최종안을 자신의 책임과 독자적 판단아래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20일에 배포된 최종의정서 초안(Final draft act)이었음. 1991년 12월 제출된 던켈초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협상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보다는 각 분야별 내용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이는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여 어느 나라도 완전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종결을 이끌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됨. 실제로 본 최종의정서초안에 나타난 기본원칙 및 부분별 내용이 향후 협상의 기초와 골격이 되어 최종협정문에 반영되었음. 동 의정서 초안은 던켈총장이 이끌어 오던 1991년 협상의 종합적 결과이며 동시에 조기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안의 성격을 띠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 여지없이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문서임.

< 헬스트롬 중재안과 최종의정서 초안 비교 >

구 분	헬스트롬 중재안 (‘90. 12)	최종의정서 초안 (‘91. 1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시장개방</div> 관세 및 관세상당액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최소시장접근	30% 1990년 1991~95년(5년간) 5% 이상	36% (최소 15% 신축성 부여) 1986~88년 1993~99년(7년간) 3%에서 5%까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내보조</div>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감축의무면제상환 (De-minimis)	30% 1990년 또는 최근년도 1991~95년(5년간) 불인정	20% 1986~88년 1993~99년(7년간) 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수출보조</div> 감축기준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재정지출액단위당 보조액 물량 30%(물량) 1988~90년 1991~95년(5년간)	보조물량 및 금액 24%(물량), 36%(금액) 1986~90년 1993~99년(7년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개도국우대</div> 감축폭 이행기간	국내보조분야만 선진국의 1/2 수 준(시장개방, 수출보조 언급 없음) 1991~2000년(5년연장)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 조 등에 선진국의 2/3 수준 1993~2002년(3년연장)

Dynamic Asian Economies(아시아 고도 성장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가리킴

E

EAERR(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동아시아비상쌀비축체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체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쌀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일본의 주도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비축방식은 실제 쌀의 이동 없이 비상상황 발생시 제공할 일정물량을 공시만 하고 관리는 개별국가에서 하는 Earmark Reserve 방식과 실제 일정 지원물량을 일정장소에 이동시키고 보관·관리하는 Stockpiling Reserve 방식이 있음.

Early harvest 조기수확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상종결 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합의, 시행하기로 한 경우를 뜻함.

Early Warning System(조기경보제도)

무역상대국이 도입할 무역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사전에 그들의 유감 또는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Economic Leader's Meeting(경제지도자 정상회의)

APEC의 정상회의로서 1993년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의 주도로 시애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제2차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을, 1995년 일본 오사카의 제3차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발표하였음. 중국과 대만 문제로 인해 정식 명칭은 “경제지도자 회의”로 불리며 공식 의제없이 역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함.

Eco-Labeling(환경표시제)

환경조화형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환경배려형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 하에, 개별제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당해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표지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임. 이러한 환경표시제는 무역저해적인 소지가 많기 때문에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의제로서 검토되고 있음.

EC(European Community, 구주공동체)

EEC, ECSC, 유라툼의 총칭. 1967년 7월 EEC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로마조약 조인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들 3 조직의 집행기관이 종합하여 일체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음. 종래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유럽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73년 1월 1일에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3개국이 신규 가입, 다시 1981년 1월 1일부터 그리스가 가맹하여 10여개국이 되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도 1986년 1월에 가맹해 가맹국 수는 12개국, 지역내 인구는 약 3억 4,000만, GDP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정치 블록을 이루게 되었음. 활동 주체로 되어 있는 EEC는 1958년 1월에 발족, 다음해 1월부터 실시 단계에 돌입했음. 로마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①역내 국간의 관세전폐와 수출입 제한의 철폐 ②대외공통관세의 설정과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③농업, 운수, 경쟁제한 등의 면에서의 공통정책의 작성 ④노동력, 자본이동, 기업설립 등의 자유화 ⑤유럽투자은행의 설립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 EC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의 기구가 있음. 각료이사회는 EC의 최고결정기관이며 가맹국의 대표(각료)로 구성, 가맹국의 일반경제정책을 조정함. 유럽회의는 로마조약에 정해진 제기관이 특정국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EC 전체의 입장에서서 행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음. 사법재판소는

로마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관임. 또 유럽위원회는 EC위원회라고도 불리며 ①EC 각 기관이 채택한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고 ②로마조약이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나 의견을 작성하며 ③이사회가 결정한 규칙을 실시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고 있음. 한편 EC는 1993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 유럽경제지역(EEA)를 결성, 1994년 1월 1일부터 거대한 유럽단일시장을 발족시켰고,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로 공식명칭을 바꾸었음.

※ EU 참조

ECU(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단위)

유럽통화제도(EMS)의 중요한 지주중의 하나로서 EU 12개 회원국 통화의 바스켓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며 각국 통화의 가중치는 회원국별 GDP, 역내 무역비중, 단기 신용공여 및 차입실정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조정됨. 현재 계산단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ECU라는 통화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999년 1월 EMU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경우 EU 단일통화인 'EURO'로 전환됨.

EC Oilseeds Case(EU 유지종자분쟁)

미국은 1988년 EEC가 수입유지종자가 아닌 역내 생산된 유지종자의 가공에 대하여 역내 가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T 4조4항 위반이라고 제소하였음. 또한 가공에 대한 보조금은 EEC의 유지종자의 생산자에 대한 간접적인 생산보조금을 구성하여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GATT 23조 b호의 위반이라고 제소하였음. 1989년 패널은 역내 생산 유지종자와 수입유지종자 사이의 가격차를 상회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3조4항의 위반이며 또한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23조1항b호의 위반이라고 판정함.

EC Banana Case(EC 바나나분쟁)

EU는 세계최대의 바나나 수입시장인데 EU회원국 중 상당국가들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로부터 바나나 수입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 왔고 그 반대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베네쥬엘라,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ACP 국가들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여하였고, 각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수입면허제도등 각종 수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더군다나 1975년 EEC와 ACP제국간에 체결된 EEC의 ACP제국제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발전원조협정인 로메협정(Lome Convention)에 따라 EU는 ACP제국들에 대해 전통적인 특혜를 유지한 것임.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니카라카, 베네쥬엘라,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이 EU의 조치들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제11조 수량제한금지원칙, 제13조 수량제한시 무차별적용원칙,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원칙을 선언한 GATT 제4부 등에 위반된다고 하여GATT에 제소한 것이고, EU는 위와 같은 조치는 EU국가들이 오랜 전부터 유지해 왔던 것으로 PPA의 “현행법령”조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묵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소국들의 주장이 오히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로메협정은 EU와 ACP제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 지역협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ACP제국들에 대해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음. 패널은 EU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바나나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방식이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EC Hormmone Case(호르몬사건)

미국은 EU가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여섯가지의 특정 호르몬이 투여된 동물의 육류와 육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SPS협정의 제2조, 3조, 5조 및 1994 GATT의 1조와 3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

면서 WTO에 제소. 이에 대해 1997년 8월 WTO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음. 첫째, EU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위생조치를 유지함으로써 SPS협정 제5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둘째, EU는 상이한 상황에서 국제무력에 대한 차별, 가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위생보호의 수준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의적인 또는 부당한 구별을 채택함으로써 SPS협정 제5조5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셋째, EU는 SPS협정 제3조3항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고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은 위생조치를 유지함으로써 SPS협정 제3조1항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EU에게 동 조치를 SPS협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였음. 본 사건은 제품관련 PPMs 이 WTO 규율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GATT/WTO 패널 판정임.

Economic Intergration(경제통합)

각국 또는 경제권이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통합이란 각국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경제통합단계는 역내 국가간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되는 FTA단계가 있고, 역내국가간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역외관세를 사용하며 공통의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Customs Union의 단계를 거쳐 회원국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외에도 노동, 자본 및 서비스도 제한없이 이동 가능한 Common Market단계가 있음

※ FT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참조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국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과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요청증대에 부응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7년에 업무를 개시하였음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에 접속된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당해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어업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어업수역에 비해 포괄적인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 배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을 막을 수 없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영해와 다른 없는 권리가 미치는 곳.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포함하는 EEZ선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어선의 일본연해 조업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EEZ를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음. 사실상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음.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구제국 7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

Effective exchange rate (실효환율)

각종 수출지원 또는 수입억제 조치 결과를 외화단위당 자국화폐로 계산하여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시켜 조정한 환율로서 수출 실효환율과 수입 실효환율로 나누어짐. 수출 실효환율은 각종 수출지원액을 총수출액으로 나눈 수출 1단위당 지원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하여 산출하며, 수입 실효환율은 수입억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총수입액으로 나눈 수입 1단위당 억제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명목환율에 가산하여 산출함. 그러나 수출액 실효환율을 적정환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① 수출입 실효환율은 상대국의 제반 수출입조치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수출입 실효환율은 환율 본연의 기능, 즉 한

국가통화의 대외가치 척도라기 보다는 단지 한국가내의 수출업자와 내수산업간의 비교 우위를 비교한 한 국가의 자원배분 문제와 결부된 지표라는 점과, ③ 현재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 또는 진흥 조치는 극히 복잡 다 기능화 되어 이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점등의 문제점이 있음.

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나 현재 국제적으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재화 및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다시 말해 전자적으로 배달되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음. OECD, WTO, APEC 등 다자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WTO 규범 중에서는 주로 GATS와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음.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 정보통신시장접근문제, 기술표준정립문제, 국제거래에서 의무관세문제, 국내거래에서의 내국세 부과문제, privacy 보호문제, 지적재산권보호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특히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음.

E-mark(환경마크)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임. 저공해 상품에 붙여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 상품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임.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약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시행중임. E-mark. Eco-마크라고도 함.

Emerging Market Program(신흥시장계획)

'96-2002년 동안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에서 신흥시장에 대해 직접 신용 또는 신용보증으로 최소 10억불과 기술적 지원으로 매년 최대

1,000만불까지를 사용토록 규정한 프로그램임. 이 자금들은 수입된 농산물의 처리, 유통, 가공 또는 배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비, 용역 등에 사용될 수 있음.

EMS(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상당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단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이나 AMS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단,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 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됨. 보조상당액측정치(EMS)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나 보조액을 산출해 내는 데 있어서 품목특정적보조 계산방법으로 보조액을 계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기초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산출방법임.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EMS는 적용 관리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함.

- AMS : (관리가격-고정외부참조가격) × 지지물량

- EMS : 관리가격 × 지지물량, 또는 재정지출액

여타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지불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액 계산, 이의 합산방법 등은 품목특정적 AMS 산출방법과 동일하며, AMS로 보조액을 계산해 낼 것인가 또는 EMS로 계산해 낼 것인가는 당해 국가가 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Enabling Clause(권능부여조항)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와같은 대개도국 특혜대우는 GATT 최혜국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에 동경라운드에서는 GATT 1조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특별하고도 우대적인 대우를 공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Framework Code를 제정, 선진국으로 하여금 혜택을

공여할 수 있도록(Enable) 하였으며 동 Code의 제1부를 통상 권능부 여조항이라 부르고 있음.

Enlargement(가입확대)

EU회원국은 1958년 EEC설립당시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을 시작으로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여 현재의 15개국이 되었으며 98년 3월부터 EU확대 협상을 시작하였음. 신규로 EU에 가입되는 국가에는 우선 가입대상국 6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2차 가입대상 6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아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로 구분됨. EU 가입기준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49조에 의거 모든 유럽국가는 EU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국이 가입신청서를 EU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집행위와 이를 협의하고 구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됨. EU는 2002년말까지 일부 선도국가들과의 EU확대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협상의 가장 어려운 분야중 하나로 가입대상국들은 EU가입과 동시에 EU 공동농업정책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EU 역내 농민에 지원중인 농업직접지불정책을 신규 가입국가의 농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협상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음.

Enquiry Point(문의처)

WTO/SPS 협정상의 각 회원국들은 이해당사 회원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답변 또는 관련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할 하나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EPG(Eminent Persons Group, APEC 저명인사그룹)

1992년 APEC 방콕회의에서 구성을 결정하였으며 APEC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각료회의를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함. 최근 50% 규칙을 제안하는 등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건의하였으나 1995년 오사카회의를 끝으로 해체되었음.

Equivalence(동등성)

WTO/SPS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RA(Effective Rate of Assistance, 유효지원율)

※ ERP(유효보호율) 참조

ERP(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유효보호율)

정부 정책의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영향 평가 즉 국내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s)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된 개념은 유효보호율(ERP) 개념이다. 처음 동개념이 개발되었을 당시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정부지원 형태는 관세(tariffs)에 의한 교역적인 장벽(Trade barriers)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관세로 무역의 방향이나 교역의 왜곡 즉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음. 그러나 오늘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제와 함께 일반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그 측정수단도 이러한 다양한 지원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유효지원율(ERA)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 한편,

OECD와 같은 기관에서는 국내산업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약간 다른 방법으로써 생산자 지원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s, PSE)와 소비자지원상당치(Consumer subsidy equivalents, CSE)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목지원계수(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 개념이 소개되고 있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1947. 3월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에 의거 ECAFE(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로 발족하였으나 1974. 3월 ECAFE 총회에서 ESCAP으로 개명되었음. ESCAP은 역내 제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조사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조하고,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정회원국은 역내국가 49개국과 역외국으로 미,영,불,화란 등 4개국을 포함하여 53개국이며, 9개국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Escape Clause(면책조항)

면책조항이란 GATT의 각종 의무로부터 예외될 수 있도록 허용한 GATT조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를 GATT 의무에 대한 면책조항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GATT상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개 조항이 있음. GATT 제12조는 특정상황에서 국제수지문제상 한 국가의 재정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방어에 관한한 제19조보다 유용한 방책이며, 제18조는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이유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협의와 발동시간에 대하여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는 한 GATT의 어떤 의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게는 제18조가 제19조보다 더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로 인하여 어느 상품이 당해 체약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당해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 일정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임. 국경없는 지역 창설, 경제·사회적 결속 강화, 경제통화동맹 단일통화 수립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일체성을 옹호하며 구주 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93. 11. 1 출범함.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15개국으로 인구는 약3억7천만명에 전체 GDP는 약 7조 달러, 1인당 GDP는 약 2만불에 이르고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량의 19.4%(역내무역을 포함하면 40%)를 차지하고 있음. 소속기구로는 이사회(EU각료회의, 최고의결기구), 구주이사회(EU 정상회의, 연2회), 집행위원회(EC), 구주의회, 구주사법재판소 등이 있으며 이사의회의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입하게 됨. (2001년 7월부터는 벨기에가 2002년 1월부터는 스페인이 수입)

EURO(유로화)

유럽연합(EU) 단일통화의 명칭은 지난 1979년 이후 에쿠(ECU)를 써왔으나 독일의 테오 바이켈 재무장관이 유럽을 뜻하는 “유로(EURO)”로 쓸 것을 제안하여 1995년 12월 마드리드 정상회담때 최종 확정됨. 1999년 단일통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유로화는 국가별로 발행하게 되는데, 주화의 경우 한쪽 면이 ‘국가면’이 되고 다른쪽 면이 ‘유럽

면'이 되는 식으로 유럽면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음. 1999.1.1. 이후 유럽경제통화연맹(EMU ;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EMU 참가국들은 Euro화를 자국의 통화로 사용하게 됨. Euro는 1999년 초부터 2001년말까지 실체가 없는 문서상의 통화로 정부간 거래 및 금융기관간 결제통화로 사용되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각국의 통화와 함께 통용되어지나, 2002년 7월부터는 Euro화만이 법정통화로 사용될 예정임.

EVSL(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분야별 조기 자유화)

APEC 회원국이 자발성 및 신축성에 기초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 보고르 선언의 2010/2020 목표보다 더욱 조속한 시기내에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취지 하에 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의 이익균형을 감안하여 15개 분야를 조기 자유화 대상분야로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옴. 회원국이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존중하여 논의하되, 주요 논의내용은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경제기술협력도 추진하기로 결정. 15개 대상분야로는 완구,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및 관련 장비, 의료장비, 정보통신 MRA, 식품, 유지종자 및 관련 제품, 비표, 자동차 표준, 고무, 민간항공기분야임.

excise Duty(물품세)

정부가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알코올 증류 및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가 전형적인 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따라 동종 국내 상품과 동일 수준의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함.

Exempted Domestic Support(허용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상의(농업협정부속서 2) 감축약속으로 부터 면제되는 국내보조조치를 말함. 기본적인 요구 조건으로 당해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징수감면포함)에 의하여 제공되며, 당해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서비스(연구, 병해충 방제, 훈련, 지도, 자문, 검사, 시장정보제공, 하부구조사업 등),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이며, 생산자에 대하여 재정적 혜택이 직접 부여되는 보조사업 중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화 계획 지원, 자연재해구호,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지원 등이 해당됨.

Export Credit(수출신용)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됨. 수출신용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됨. 현재 다자간 수출신용을 규율하는 규범제정 문제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과 EU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특히, EU는 이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을 겨냥하여 WTO 농산물협상에서 수출신용도 수출보조와 마찬가지로 국제농산물교역을 왜곡하므로 WTO차원에서의 국제규범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전체 수출신용 사용의 50%를 차지하고, 보조성격을 갖는 수출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미국 수출신용의 94%가 1년 이상의 장기간 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관련용어 : GSM-102, GSM-103

Export Credit Guarantee(수출신용보증)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Export Credit Programme(수출신용보증계획)

미국의 상품신용공사(CCC)에서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년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임.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첫째는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이고, 둘째는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용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음.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 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Export Competition(수출경쟁)

UR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개 의제에 폭넓게 포함되는 분야로서, 농산물 수출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룸.

Export Enhancement Program(수출진흥계획)

1985년 미국농업법에 의해 도입된 수출지원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미국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다른 수출국의 수출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수출진흥계획하의 모든 수출판매는 미국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

자는 미국의 농산물생산자, 가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들이며 대상품목으로는 소맥, 소맥분, 쌀, 냉동가금육, 냉동돼지고기, 보리, 매아. 식물유지 등이 있음. 이제도의 적용대상 국가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판매가 수출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시장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되며, 따라서 수출진흥계획의 적용을 바 위해서는 그러한 특정대상국가에서 여타 수출경쟁국의 보조금 수출을 대체함으로써 수출경쟁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계할 수 있어야 함. 이제도는 민간 수출업자에게 상대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며, 수출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수출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농산물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시장에 미국산 농산물을 덤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제도 도입의 근본요인은 1980년대 중반 농업경제의 불황탈출과 EC에게 잠식당한 수출시장에서의 실지회복이었음. EC는 1980년대에 들어서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가격지지정책과 수입제한 정책 등을 통한 역내 과잉농산물 처리를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였음. 즉 EU에 의해 잠식당한 수출시장에서의 실지회복을 꾀하는 한편, 1980년대 초반 이후의 농업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음. 결국 1985년 농업법에서 수출지원정책으로 도입된 EEP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은 EU였음. EEP의 EU에 대한 공격은 북아프리카 소맥시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북아프리카 소맥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986년에 미국 35%, EU 25%였으나, 이제도 시행이후 미국의 점유율은 65%, EU 10%로 크게 역전되었음.

Export Insurance(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나 UR 농산물협상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port Price(수출가격)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을 산정시 정상가격에 대비되는 가격으로서 1961년 GATT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국에 반입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상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표현되고 있음. 동보고서는 수출가격은 수출을 위한 공장도가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FOB가격도 적절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Export Subsidy(수출보조)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UR 농산물 협상과정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재정지원 및 기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감축 및 철폐를 협상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농산물 수출보조금 관계로 참여한 대립을 보였던 나라는 수출보조금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케언즈 그룹이 아닌 수출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던 미국과 EC였음. 미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원칙적

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음. 즉, 5년간에 걸쳐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음.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유보조건을 부가하고,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과 수출금지규정인 GATT 11조 2(a)항을 폐지하고, 5년이내에 수출부과금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여 형식상 완전 자유화를 제안하였음. EC는 수출보조금에 대하여 미국과 반대로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반대하였음. 왜냐하면 공동농업정책(CAP) 수출보조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EC로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임. 수출보조금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보조금의 양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행 GATT 16조 3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중 과거 대표적 기간을 최근 5년간의 3년 평균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음.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서 우선 현재수준에서 수출보조금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안과 유사함. 이에 비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고 주장하였음. UR 농산물협상결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하였으며(개도국은 10년간 24% 또는 14%감축)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하였음. WTO 농업협정 제9조 1항에 제시된 6가지 유형을 보면, ①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②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

의 판매 또는 처분 ③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④취급, 동급향상과 여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⑤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식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음. 우리나라는 '89~'91년간 감축대상이 되는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음.

External Reference Price(외부참조가격)

국내가격지지 효과나 관세상당액(TE)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으로서 UR 농산물 협정에서는 '86~'88 평균 세계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F

F

FA(Final Act, 최종의정서)

UR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최종적인 UR 협상결과를 확인하고 WTO 설립협정을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약속 문서로서 WTO협정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며 6개항으로 구성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FA에 서명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회부, '95.1.1 혹은 '95.1.1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WTO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 WTO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키 위해 '94년말 이전 별도의 각료급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식명칭은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ing of the Uruguay Round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임.

Fair Trade(공정무역)

국제 교역규범이 그 국가의 구성원 중 약자, 특히 농업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무역은 그 교역된 상품 생산자의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나 주장

Farm Bill(미국 농업법)

미국의 농업법은 일종의 농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영속법-1933년의 농업조정법과 1949년 농업법을 일시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입안되어 왔음. 또한 1965년 농업법 이후부터는 그 시효가 대개 4-5년으로 설정되는 일괄농업법(Multiyear Omnibus Farm Bill)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농업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이러한 다년도 농업법은 시효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입법당시의 미국 농업경제의 현황과 전망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경제와 세계경제질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현재의 농업법은 1996년에 제정된 FAIR Act로서 약 10년전부터 추진해온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의

정점을 이루는 획기적인 농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농정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압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과잉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조정과 연계된 농산물 가격 및 소득지지 정책을 수립, 운용해 온 것이 미국농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의 농업보조 정책은 70년대 말까지 가격지지정책이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80년대 들어 미국은 구조적인 농업불황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농업보호정책, 특히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였음. 94년 UR협상이 타결되고 세계 곡물가격이 회복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96년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구체화하였음. 96년 농업법은 종전의 가격지지정책인 부족불(Deficiency payment)제도를 폐지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도인 생산자율계약직불제를 실시하였음. 이전의 부족불제도 하에서는 정부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용자가격 중 높은 가격의 차액을 해당품목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불하였으나 96년 농업법은 부족불제도 뿐만아니라 휴경의무조항, 최소경작면적제한, 작목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였음. 96년 농업법상 직불제는 2002년까지 7년간의 직접지불 총액과 품목별 지급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해당 품목의 생산과는 관계없이 지불하는 제도임. 이러한 정책변화는 생산중립적(decoupled) 농가지지라는 농정의 국제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나라들을 선도한다는 측면이 강함.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3년간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지원 정책을 실시하자 96년 농업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전체적인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상,하 양원의 농업위원회는 입안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농무성이 양원의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행정부안과 각원 농업위원회 의장이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양위원회는 농업법 제정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1943. 7월 UN이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현장이 마련함에 따라 1945. 10월 제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임.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증진, 농민생활수준개선, 각국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FAO 회원국은 188개국임. FAO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우리나라는 1949.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였음.

FAO/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잉여농산물 처분원칙)

식량원조에 있어서 FA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1954년 제20차 FAO이사회에서 제정되었음. 이 원칙의 목적은 잉여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 국제농산물교역이나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이익보호에 역점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 B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원조행위는 FAO원칙의 규제를 받게 됨. 이러한 국가간의 마찰은 FAO내에 설치된 「잉여농산물처분협의 소위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 CSD)를 통해 중재를 받으며 이를 위해 FAO회원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식량원조국이 원조 요청을 받으면 계약의 체결 및 물품선적에 앞서 이를 수혜국에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게 통지하고 양자간 협의를 행함. 이 협의에서 원조국은 통상적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 UMR)을 제시해야 함. UMR이란 수혜국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일정수준 유지한다는 보장으로 원조협상시 원조국과 수혜국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계약내용에 포함됨. 양자협의를 통해 제3국과의 이견이 조정되면

원조국은 월1회 개최되는 CSD에 이를 통보하고 다자간협상에 들어감. 이 때 원조국은 CSD에 상품의 종류, 금액, 수송일정 등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UMR, 양자간협약 상대국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CSD사무국은 이 사항을 모든 FAO 회원국 및 옵저버국가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으면 원조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CSD는 국제교역의 형태를 무상원조에서 일반상업거래까지 2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중 13가지 형태의 교역은 이 FAO원칙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원조나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원조에 있어서는 사후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쌀의 경우 연간 각수혜국당 1천톤 이하가 여기에 해당됨. FAO 잉여농산물처분원칙은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일 뿐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임.

Farmer Owned Reserve Program(농가보유비축제도)

소맥과 사료곡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재고수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농산물저장제도임. 이 제도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해 그 실시가 중단됨.

Fast Track Authority(신속처리권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수정없이 가부만 표결케 함으로써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심의를 보장해 주는 미국 통상법상의 입법 메카니즘임. '74년 통상법에서 최초 규정되었으며,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음. 이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다자·쌍무간 무역협정의 국내시행을 위해서 시행법안 제출후 60일(단, 세입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의회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Fast Track Procedure(신속처리절차)

의회가 행정부에 대외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받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부간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은 거부권 행사에 국한됨. 이와 같이 행정부는 대외협상시 자율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점에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대외적 통상협정의 체결방식과 비교해 볼 때 행정부가 비교적 의회로부터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다만 행정부는 대외통상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와 민간자문기구 등에 협상의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따라서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상·하원에서 수정 없이 행정부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신속처리절차는 동경라운드협상을 수권한 [1974 통상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동 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 다자간 협상시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컸기 때문임.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된 이후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미행정부는 대외적인 신뢰도의 저하를 경험한 바 있음. 이후 단순한 관세율 인하협정과 달리 포괄적인 대외통상협상시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속승인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동경라운드(1974-79),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1984-85),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1991-93) 등 5개 대외통상협정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체결됨.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IMF 정의에 의하면 "외국에서 운용되는 기업에서 영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투자로서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임. "지속적인 이익"이 무엇이나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어 왔는데 OECD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권고함.

FIPs (Five Interested Parties) 주요 5개국

DDA 농업협상의 주요 협상국가로서 미국, EC, 브라질, 인도, 호주를 말함. 주로 농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나 최근에는 전체 협상 분야도 함께 논의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각 FIPs 국가가 한국가씩을 초청하여 10개국간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FIPs-Extended(또는 FIPs-Plus)라고 부름.

FMD(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양,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偶蹄類동물에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등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Flexible Tariff (탄력관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관세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만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관세이며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여기에 속함. 탄력관세 제도는 오늘날 관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음.

flexibility(신축성)

관세감축에 있어서 감축을 보다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이행기간 연장, 공식을 적용한 감축치 보다 적은 감축폭 적용, 예외적인 미양허 인정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주로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신축성이 부여됨.

flooring(하한 설정)

관세감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capping의 반대 개념

FMDP(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외국시장개척 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 교육 및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등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협회의 일부 기금이 총기금에 보태짐. 이 제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 확대와 수입품의 사용방법을 수입국에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밀, 옥수수, 콩, 유제품,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및 견과류 등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임.

food Aid(식량원조)

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인권 차원의 고려 이외에 공여국 차원에서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EC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현금으로만 지원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주의적 필요와 수혜국의 부정부패 문제 발생 소지를 볼 때 현물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Food Stamp(식품권)

원래 식품권제도는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기본적 욕구인 식생활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저소득 계층이나 영양취약 계층의 영양을 최소한 보장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식품권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식품권은 일반 식품교환권과 식사교환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식품교환권은 지정식품점에서 원하는 식품과 교환하도록 하고 식사교환권은 가구내 위사가 불가능하여 식품교환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식품교환권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미국의 식품권제도는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 현재 18백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수혜대상은 소득과 자산을 평가한 후 판정하며, 주 수혜자는 어린이들임. 수혜자는 식품수입 쿠폰이나 전자카드를 받고, 이것으로 식품소매점에서 인증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Food Security(식량안보)

식량문제에 대한 시각은 그 나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남. 식량이 부족한 수입국들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부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며, 식량생산이 과잉상태인 식량수출국들은 해외식량시장 개발을 통한 과잉농산물의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음.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72-'73년도의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었음. UR협상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는 국내농업의 소위 비교역적기능(NTC ; Non-trade concern)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능으로 식량안보문제가 논의된바 있음. [NTC(비교역적 고려사항) 참조]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각국의 식량생산능력, 식량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국내외 여러 학자나 단체가 내린 정의가 다양한 바, 이를 요약하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접근기회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하며(여기서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선호에 적합한 식품을 가리킴), 이러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96. 11월에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식량이 항상 확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양·질·다양성의 관점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주어진 문화내에서 수용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시도한 바 있음.

Formula Approach(공식적용방식)

국제교역관련 협상 등에서 특정공식이나 인하폭을 결정하여 회원국의 모든 대상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율 및 보호정도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임. 관세율에 관한 공식인하방식으로는 스위스 공식, 일괄선형인하방식, 혼합접근방식 등이 있음.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협약)

CO₂, CH₄, N₂O 등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은 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91년 UNCED 회의시 채택되어 '02.6월 현재 18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음.

Free-Rider(무임승차국)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 하에서 체약국들이 협상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양허함으로써 상응하는 양허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체약국을 일컫음.

Free-Trade Area(자유무역지대)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제거한 국가들의 그룹. 관세동맹과는 달리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각자의 통상정책을 보유함. 우리나라도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Freezing(자유화수준동결)

서비스교역의 최초 자유화 약속을 위한 양허협상방식의 한 형태로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초의 자유화 약속수준을 기존의 자유화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방식임.

frontloading(前期이행)

협정 의무 이행이 이행기간 초기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행

FNR(Friends of a New Round, 뉴라운드 우호국)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호주, 칠레, 체크, 헝가리,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우루과이, 알제틴, 홍콩 등 14 개국이 모여 뉴라운드 협상방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포괄적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는 회원국간에 적용하는 관세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

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1994 GATT 제24조 및 동 조항 해석양해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간에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동 조항 해석양해 3절에서는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10년 내 철폐토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는 1994 GATT 제5항 (A) 및 제8항 (a)에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는 1994 제5항 (b) 및 제8항 (b)에 규정되어 있다.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북남미 3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에서는 2005년까지 FTAA의 창설을 위한 협상을 완료기로 합의하였다. 시장규모는 약 11조 달러에 달하며, 대상인구는 8억명으로 예정대로 FTAA가 창성되는 경우 EU보다 더 큰 거대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G

G7(Group7, 선진 7개국)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8이라고 하며, 신흥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22이라고 함.

G77(Group of 77, 77그룹)

1964. 6월 제1차 UNCTAD 총회시 77그룹이 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이로 부터 77그룹으로 불리게 되었음. 1967. 10 알제리아의 수도 알지아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고, 매년 UN총회를 대비하여 외상회의를 개최하며, UNCTAD총회를 대비하여 전체 및 지역별 각료회의를 가지고 있음. 77그룹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촉진 및 제3세계의 경제적 공동이익 강구와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선진국과의 교섭능력의 제고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회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개지역 그룹으로 구성, 12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개도국간 실질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GSTP)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4. 6월 가입했으나,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탈퇴함.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 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에 따라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하고, 서비스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 일반협정(GATS)을 체결하였음. 서비스 일반협정(GATS)은 6부 28조, 8개 부속서(MFN 예외, 자연인 이동, 금융, 통신, 항공, 기본통신, 해운, 금융Ⅱ)와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되며, 이들 조치는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도 포함됨. GATS 제1조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을 ①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 ②서비스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Consumption abroad) ③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및 ④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GATS(서비스 일반협정)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에 후속 양허협상을 시작하며 그 후 정기적인 협상 진행함. 우리나라는 GATT 분류기준 11개분야 155개업종중 교육·보건사회·문화오락 등 3개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8개분야 78개업종 개방하였음. UR협상 타결로 인하여 양허된 품목들은 당장 95년부터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개방시한이 각기 다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 헌장회의와 함께 회의 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한 다자간 무역협정. 무역과 관련 최혜국 대우(MFN) 및 내국민대우(N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됨. 1995년 WTO 설립에 따라 WTO 체제로 흡수됨.

GATT 47(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194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됨으로써 발족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에 정식가입하였음.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GATT 9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1947년 채택된 기존의 GATT 규정, 관세 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일부 결정사항, UR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GATT 2조 1항(b), 17조, 19조, 24조 waiver, 28조, 35조의 양허 및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됨.

GATT 8조 (IMF 8조국)

IMF규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승인한 나라를 의미함. IMF는 각국간의 환결제에 대한 제한 및 차별대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국제적 환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 규약 제8조에 일반적 의무로서 ①동 기금의 승인없이 경상적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 ②타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③통화의 자유교환성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국제간의 자유로운 환거래 관계의 유지에 협조하고 있는 나라를 IMF 8조국이라 하며 14조국과 구별하고 있음.

GATT 14조 (IMF 14조국)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잔액의 교환성 보장이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외환제도를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IMF 8조국은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외환제도 철폐에 대한 유예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즉 IMF규약 제 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 14조국이라 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부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함.

GATT 17조(국영무역)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및 그 운영에 관한 일반저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임. 이규정은 국영무역기업의 일반적인 정의 상업적 고려의 구체적 내용,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하는 구매나 판매에 있어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과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그러한 구매 또는 판매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항) 또한 정부의 최종 소비품에 대한 본조 제1항의 적용배제(제2항), 국영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효과의 감소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3항), 국영무역 대상수입품 및 수출품의 통보의무와 수입차익 혹은 재판매가격의 통보의무 등 국영무역기업에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제4항)이 규정되어 있음.

GATT 18조

생활 수준이 낮고 개발초기에 있는 나라는 GATT 18조에 관세양허의 수정, 철회가 인정되어 있는 외에,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도

인정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채용하는 국가를 GATT 18조국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 범주에 속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GNP)이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계이지만 국내 총생산(GDP)은 국토 내에서의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과의 차액이 해외순소득이라면, GDP의 계산은 국민총생산 GN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 것과 같다.

General Council(WTO 일반이사회)

기존 GATT의 GATT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WTO 각료회의가 비회기중일때 개최되는 회의로서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의장의 지정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WTO협정 4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특별이사회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복수국간 협정에 의한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음.

General Exception(일반적 예외)

GATT 제20조는 모든 의무 (예컨데, MFN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의무 등)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예외를 인정. 1)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4) GATT에 반하지 않는 국내법령의 보호, 5) 재소자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6) 미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7) 유한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치, 8)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9) 국내원료가격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10)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등이 있음. GATS 14조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음

General Tariff (일반관세)

일반관세는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주로 최혜국관세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용어임. 1948년 GATT가 발효되어 일반 최혜국대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용어는 주로 일체의 특혜도 받지 못한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Geographical Indications(지리적 표시)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22조는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품질, 명칭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라고 정의하면서, 당해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소개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원국은 그러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Refuse or invalidate)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샴페인, 스카치, 데킬라 같은 상품 등은 지역의 명칭을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포도주(wine)와 주류(spirits) 생산자들은 광범위하게 지역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상품을 묘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명칭, 즉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지리적 원산지와 상품의 특성 두가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상품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거나, 또는 상품이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시킬 위험과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WTO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각회원국이 지역명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임. 포도주와 주류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일반대중이 오도될 위험

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명칭의 사용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명칭이 상표로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또는 일반적 용어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형태의 치즈를 지칭하는 “체더(Cheeddar)”치즈는 반드시 체더지방에서 만들어 질 필요는 없지만 예외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가는 문제의 지역명칭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반드시 협상을 해야함. 지적재산권협정은 포도주를 위한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WTO내에서 계속 협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GHG(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방사선(radiation)을 흡수하여 재방출하는 천연 및 인공의 기체성 대기 구성물을 말함.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지구층을 마치 우산으로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함. 온실효과의 원인물질을 이산화탄소(CO₂),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염화불화탄소(CFCs) 등이 있으며 이중 CO₂가 55%를 차지하고 있음. 온실효과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6월 채택되었음.

Girard formula(지라르 공식)

2002~2003년간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그룹의 의장을 맡았던 Girard 스위스 대사가 2003년 5월 제안한 관세 감축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감축폭이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따라 관세상한이 달라지게 되어있음.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일수록 높은 수준의 관세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이어서 개도국은 선 호하고 선진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도 주장하여, ABI 공식으로도 불림.

$$t1 = t0 * B * T a / t0 + B + T a$$

t_1 = 공식후 관세율 t_0 = 공식전 관세율 T_a = 각국 평균관세율
 B = 계수

Global Approach(총체적 감축방식)

UR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농업보조 및 지지수준의 감축방법의 하나로, 분야별 감축방식(Sectoral approach)에 대응하는 개념임. 총체적 감축방식이란 분야별 감축방식과 달리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 등을 포괄적 단일개념의 총 보호수준으로 파악, 이를 분류치 않고 전체적으로 보호총량만을 감축해나가는 접근방식이며 EC가 강력히 주장했었음. 이에 대하여 수출국들인 미국, 케언즈그룹은 EC의 총체적 감축방식은 그들의 수출보조금 감축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함.

Global Quota(총량 쿼타)

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자국으로 수입될 상품의 가치 또는 양에 대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한 수량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국별쿼타(Country Quota)와 대립되는 개념임. 이는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GATT협정에서는 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총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방법은 수출국가간에 먼저 수출하려는 경쟁을 유발시켜 단기간에 수입이 몰리게 될 수 있으며, 먼거리에 위치한 국가는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Quota, Quantitative Restriction 참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주로 Biotechnology 기술의 한 분야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수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이 름. 의약품, 화장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농작물중 상품화에 성공한 대표적 작물은 '96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시장에 나온 제초제 저항성 콩(Roundup-ready soybean)과 해충저항성 옥수수(Bt corn)를 들 수 있음.

cf. LMOs(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조합물이 들어간 모든 생물체를 말함. 이것은 GMO보다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는 LMO와 GMO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음.

cf. Biotech

LMO와 GMO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임. 주로 미국측은 GMO란 말 보다 biotech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음.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한 나라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생산물의 총액을 말함. 즉 중간생산물은 원료와 최종생산물인 제품 중 제품만이 GNP에 계상됨.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해 GNP디플레이터로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총생산이며 이 두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임. GNP에서 고정자본의 소모분(감가상각비 등)을 뺀 것이 NNP(국민순생산)임.

GNP 디플레이터(Gross National Product Deflator)

국민총생산(GNP)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 GNP와 집계연도의 경상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상 GNP의 두가지로 집계하는데, 경상 GNP로 나누면 한해 동안의 실질적인 물가변동폭이 드러나게 됨. 이것이 GNP 디플레이터임. GNP 디플레이터는 개별적인 가격을 뒤쫓는 도매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달리 GNP를 집계하면서 나

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물가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GNP에는 공산품, 농산품은 물론 건설 및 서비스, 수출입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GNP 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물가지수임

GNS(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서비스협상그룹)

1986년의 푼타 델 에스테 선언 제2부를 이루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관할권을 가지는 UR 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참조

Good Offices, Conciliation, Mediation(주선, 조정, 중개)

WTO분쟁 해결절차상 주선, 조정,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이며, 동 절차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개시되고 종결될 수 있음. 동 절차의 종결시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절차가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하나, 그 이전이라도 동 절차가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절차 중에도 분쟁당사국의 합의하에 동 절차는 지속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동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

Government Procurement(정부조달)

원래 정부조달분야는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분야(GATT 3조 8항, 17조 2항)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나, 1960년대 이후 각국에서 차지하는 정부조달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자유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 분야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음. 이에 따라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시행은 '81년부터)된 정부조달협정은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인 중앙정부기관의 일정금액(하한선:13만 SDR)이상의 물품 구매만을 규율하는데 한정되어,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79년 구협정은 미국.EC 등 23개국이 나 신흥정에는 홍콩.싱가폴이 미가입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22

개국임. 정부조달 확장협상은 WTO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자유화의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87년부터 시작된 가입국 간의 협상으로 자유화 대상을 기존의 『중앙·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 WTO체제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을 포함한 기타의 4개 다자간 협정을 별도의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으로 취급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GATT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93.12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조달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기업이 여러 선진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정부조달협정은 '96.1.1부터 발효되나 우리의 경우 '97.1.1부터 적용됨.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

회중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Grain Major(곡물메이저)

곡물메이저(Grain Major)는 세계곡물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대규모 곡물무역상사를 말하며 대표적인 곡물메이저로는 카아길(Cargill), 콘티넨탈(Continental), 루이스 드라이휘스(Louis Dreyfus), 병기(Bunge), 앙드레(Andre) 등 5대상사가 꼽히고 있음. 이 밖에도 이태리의 페루찌, 일본계의 미쓰이, 미쓰비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5대 곡물메이저들은 세계 곡물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출을 포함한 곡물유통량의 50%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5대 곡물메이저중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아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에서 창설하여 세계적인 곡물상으로 성장해 온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당시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영국에서는 자국의 식량증산을 위하여 곡물법을 제정하고 곡물수입을 금지시켰음. 그러나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식량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게 되자 곡물법은 폐기되고 곡물의 수출입은 자유화되었음. 이에 따라 라인강 유역의 강변도시를 중심으로 4개 곡물상이 발생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5대 곡물메이저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우선 이들은 농지 등의 생산수단은 소유하지 않고 유통과정을 점유함으로써 세계곡물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곡물거래가 신용을 필요로 하며 거래의 거래에는 신용과 비밀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가족체제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끝으로 5대 곡물메이저들은 모두 스위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곡물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대부분 동 법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의 경우 법인세율이 매우

낮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비밀계좌의 설치가 가능하여 곡물거래에 적합하기 때문임. 최근에는 곡물수출회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5대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계 곡물상과 농협계통의 곡물수출량이 크게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5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60여개의 곡물상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음.

Grandfather Clause(조부조항)

GATT 제2부의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은 국내법령을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 제규정과 일치시킬 수는 없는 일임. 따라서 당초 체약국의 경우는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의거하고, GATT 설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의거해 국내법령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GATT 제2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되었다. 의정서상 GATT 제2부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 Clause”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과거 선진국의 잔존 수입제한의 대부분은 이 조항에 의거한 것임.

Gravity Model(중력모형)

1960년대 Tinbergen과 Poyhen이 국제 무역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것에서 유래된 자유무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 중력모형에서는 양국간 교역은 국가규모(GDP, 인구, 면적), 거래비용(거리, 문화적 유사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모형에서 수입국의 GDP와 인구규모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교역 국가간 거래는 비용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Green Box(허용대상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보조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Exempted domestic support(허용대상 국내보조). red, amber, 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참조

Green Room(그린룸)

GATT 본부에 있는 소회의실(방의 벽지색깔이 옅은 녹색이어서 명명). 그린룸 회의라고 하면 보통 각국의 협상수석대표를 1인으로 하여 중요 안건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토론 및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음. GR회의는 대체로 각료급/고위급/실무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적 타협과 결정을 요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각료급이나 고위관리급 GR회의가, 기술적 검토사항 및 이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급 GR회의가 열림. GR 회의 참가국은 주요국가로 한정되며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의 좌석수에 따라 20여개국 정도의 초청대상국가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한 국가의 참가인원은 1+1(대표와 보좌관 각 1명)으로 한정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2가 되기도 함.

Green Round(그린 라운드)

GATT 체제하에서의 각종 '라운드'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협상을 지칭한다면 그린라운드, 즉 무역·환경 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 환언하면, 무역·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discipline)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각국은 나름대로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시행하는 무역제한

조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환경보전과 보호주의 견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환경협상이 전개되고 있음.

Grey Area Measure(회색지대조치)

모든 회원국들은 GATT 제19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수입제한조치, 즉 수출자율규제(VER) 및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회색지대 조치들을 적용할 수 없음. GATT 19조의 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보상의무와 보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안게됨.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GATT 19조로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상국가에게 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선별적인 규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조치들로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회색지대 조치라고 불렸으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WTO 협정 체결당시 발동중인 회색지대 조치는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일정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4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함.

GSM(General Sales Manager, 수출신용보증제도)

GSM은 GSM-102, GSM-103 등으로 호칭되는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정책(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을 의미함. 이정책의 목적은 수출신용이 없으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는 국가에 자금을 저리융자해 줌으로써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미국 농산물의 저개발국 수입업자가 부딪히게 되는 외환제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적신용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임. 농무부산하의 CCC(상품신용공사)에서 자국 민간은행이 수출입은행에게 공여하는 수출신

용의 상환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2년 이내(최장 3년 이내)기간동안 공여되며, 금리는 LIBOR + 0.25~1% 수준으로 관계은행간 협의하여 결정함. GSM-102는 1981년 도입되었고 6-36개월 기한의 자금용자에 대해 CCC가 신용보증을 하고 주요대상국가는 이라크, 멕시코, 알제리, 한국, 이집트 등임. 1985년에 도입된 GSM-103은 3-10년 기한동안의 중기수출신용보증 정책이며 멕시코, 방글라데시,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등이 주요 사용국가임.

※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 참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함. 즉 일반특혜제도는 1968년 2월 1일 ~3월 29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 총회 의결21에 “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라고 언급하여 통상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 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를 의미함.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측은 동제도가 GATT 제1조에 규정한 세계무역에서의 자유·무차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GATT 제25조 5항에 의한 Waiver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1조를 수정하거나 또는 GATT(제4부)에 의하여 합격성을 증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결국 UNCTAD 결의(II) □□조기 Waiver 획득□□에 의하여 1971년6월25일 GATT 제25조 5항의 GATT 1조에 대한 Waiver를 포괄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1979년 MTN Framework 협약의 채택에 따라 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 취득부여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음. 일반 특혜관세 공여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일부 동구권 선진 경제국이며, 수혜국

은 최빈개도국 및 일반개도국으로서 UNCTAD 회원국이면 WTO 비회원국(중국 등)도 수혜국에 해당됨. 특혜관세공여에는 획일적인 공여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인 선진 경제국이 자국의 경제사정과 개도국들 경제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최빈 및 일반개도국에 대해 경제사정에 따라 “0”세율(비민감품목)을 적용하거나, MFN세율에 비해 20~50%정도(민감품목) 인하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GSP 운용현황을 보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GSP 공여를 중단하고 있음. 미국(‘89), 호주(‘91), 캐나다(‘95)는 이미 GSP 공여를 중단했으며, 스위스(‘97), 뉴질랜드(조만간 중단예정)로 있음. GSP를 계속 공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은 민감농수산물인 일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HS 6단위기준 173개 품목에 대해 140여이상 개도국에 특혜관세 공여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율은 품목의 민감정도에 따라 무세 또는 MFN세율보다 10~90% 인하적용(선진국에 비해 통상 20~50%정도 저렴)하고 있음. 이중 우리나라는 93개 품목이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일 총수출액 대비 38.7%가 수혜대상임. 주요 수혜품목으로는 김치, 인삼제품, 김류, 조미, 오징어류, 주류, 가공식품, 수산물 등이 있음. 한편 EU는 ‘96. 3월 UR농산물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농산물 GSP운용제도 공표, ‘96. 7.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획일적인 국별 및 총량쿼타제에서 품목별, 국가별 특혜관세율차등 적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초민감, 민감, 준민감, 비민감 품목으로 특혜세율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특정 개도국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일정기간후(99년) 또는 일정수준 시장점유율(25%) 초과시 특혜관세공여중단 및 공여기간중 특혜관세 50% 인하적용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0”세율 또는 MFN 세율에 비해 25~50% 인하적용하여 일부 민감농산물(과채류, 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하고 있음.

※ GSTP 참조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국제무역특혜제도)

GSTP는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상호무역 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관 하에 1976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에 유고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체결됨. 현재 GSTP 참가국은 한국, 페루, 유고, 칠레, 태국, 수단, 이란 등 40개국임. GSTP 제1라운드 협상은 '86. 5~'88. 5(2년간) 있었으며 총1,55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0~30%를 인하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어 '91.11월 부터 시작된 GSTP 제2라운드에서는 '96. 6월말경 협상종료를 목표로 '95년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따라 10~30%인하하여 주요 관심국별로 Request/offer를 교환하였음.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

미국의 퍼듀대학에서 개발된 국제 교역에 대한 경제모형으로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과 전세계 무역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됨. 흔히 FTA와 같은 경제 통합의 경제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됨. 다만 모형의 단점으로는 상품교역 위주로 분석되며 서비스업 등에 경제통합이 미칠 영향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같은 변수의 분석에도 제한적이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재배(사육),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전과정(farm to table)에서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Harmonization of Tariffs(관세조화)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 하기 위한 관세인하방식임.

Havana Charter(하바나 헌장)

1947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헌장으로서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헌장이라고도 함. 세계무역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재건·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 11월 1일 미국무성이 제안한 「세계무역 및 고용확장에 관한 제안」에서 발단되었고, 그 초안은 1946년 11월 런던에서, 1947년 1월 뉴욕, 그리고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1948년 3월 하바나회의에서 채택된 것임. 전문 8장 106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①관세인하와 특혜관세의 폐지 ②할당제와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통제의 철폐 ④사적 카르텔의 금지 ⑤잉여물자처리법의 규제 ⑥수출보조금의 폐지 ⑦완전고용의 유지 ⑧국제무역기구(ITO)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헌장의 내용이 너무나 자유무역의 이상에 흘렀기 때문에 조인제국에서 인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 이념의 일부는 1947년 10월에 성립된 GATT규정에 반영되었음.

Historical preferences(역사적 특혜)

1948년 GATT가 발효하기 이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하에서 주어졌던 특혜. 이들 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정되었음.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WTO 회원국 수석대표(Heads of Delegations)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

horizontal approach(수평적 접근방식)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horizontal commitments(수평적 양허)

GATS에 부속된 WTO 회원국의 양허표의 구성요소로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투자, 기업구조의 형성, 토지 취득, 인력 이동 등이 해당됨.

horizontal issues(수평적 이슈)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

관세협력이사회(CCC)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복잡한 각국의 관세율표를 공통의 분류방식으로 변경하게 한 BTN(Brussels Tariffs Nomenclature)체도의 편성임. BTN은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상품을 가공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각국의 관세율을 파악하는데 무역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정부간의 관세교섭에도 편리하게 되었음. BTN은 당초 CCC사무국이 위치한 브라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BTN이라고 하였으나 1976년부터는 명칭을 바꾸어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이라고 하였음. 그후 CCC에서는 세계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

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당시까지 국가 및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던 상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적용하기 위하여 CCCN을 골격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방식의 상품분류체계를 1983년 CCC에서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관세율표에 HS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HS협약은 92년 1차 개정, 96년 2차 개정되었으며 2003년 3차 개정안이 시행예정임.

I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하며, 199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협정에 의거하여 1945년 2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임. 설립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과 경제개발 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업무에는 가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장기자금대출,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증여, 개발계획의 조사 및 채권국 회의의 소집 등이며, 자금원은 가맹국에 대한 지분할당에 의한 자기자본금, 채권발행 등임.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와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이라고도 불리움.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세계 각국의 농협, 신협, 소비조합 등을 망라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89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서 93개국의 236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8억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1963년에 회원으로 가입,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ICA 제네바총회에서 원철희 당시 농협중앙회장이 ICA이사회의 이사로 피선됨으로써 한국이 ICA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맞았음.

IEA(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국제환경협약)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18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음.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 농업 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용자 및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77. 12월 발족된 UN 산하기구로서 16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함. 우리나라는 '78. 1월 가입하였음. 동 기구는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양허조건(Concessional Terms)으로 제공될 수 있는 추가재원을 동원하여 수혜국의 식량생산체제의 개선, 확대 및 관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용자를 제공하고 있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1945년 가맹국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음.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환규제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AB : 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의 성립과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어렵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톤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 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을 또는 평가 폐지 등)하며, ③ SDR 제도를 개설하여 중심적 준비자금으로 육성한다는 것 등임.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이고 연1회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Import Licensing Procedure(수입허가절차)

수입국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함. 이러한 수입허가의 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이 동경라운드에서 MTN Code중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나 여기에는 미, 일, EC 등 29개국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등 30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였음. UR협상을 통하여 수입허가절차 협정내용이 좀 더 명료화되고 규율

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수용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그 동안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가입하게 되었음.

Import Quotas(수입쿼터)

수입쿼터는 낮은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음. 수입쿼터는 수량 제한의 일종임.

Import Restrictions(수입제한)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정부조치.

Import Surcharge(수입과징금)

통상적인 관세에 추가되는 부과금. 일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공은 제한적임. 그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특정한 유형의 경제구조나 어떤 경우에는 좀더 뿌리 깊은 경제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수입부과금은 또한 국내 생산자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이들의 국제기준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킴.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WTO 농업협정상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형태의 재해보험적 성격의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은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조수익 또는 순소득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함.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을 보상하며, 생산자가 동일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injury(피해)

덤핑, 보조금, 수입규제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 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가 '실질적 피해'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In-quota rate(할당관세율)

저율관세쿼타(TRQ) 물량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현행 시장접근 또는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물량 이상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out-of-quota rate)보다 낮음.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최초협상국 권한)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시 양허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최초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환경비용의 내부화)

천연자원의 활용, 오염, 쓰레기 발생, 소비, 폐기 및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품생산 및 사용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 of production and use of a product)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환경비용의 내부화는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이며, 환경경제학의 초점이 되어 왔음. 이 원칙은 자원의 가격결정,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수단 사용, 환경비용과 이익계산, 환경회계방법(Green accounting

methods)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의 토대가 됨.

Investment-related Trade Measures (투자관련 무역조치)

외국인 기업에 의한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부 조치. 이러한 조치는 종종 외국인 기업들에게 고정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이 수반됨.

Invisibles Meeting

Friends of a new Round의 14개국과 Quad 4개국이 모여 차기협상의 일정, 범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임.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1952.4.3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도모하여 설립된 FAO 산하기구임. 우리나라는 1953.12.8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132개국임. 회원국의 임무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입법, 기술 및 행정적 의무수행이며, 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검역대상병해충(Quarantine pest)에 주로 적용됨. 각국은 식물에 대한 검역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특정식물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며, 수입관련 검역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시 FAO와 관련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FAO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해결함.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제조기술, 새로운 용도 등의 발명과 새로운 상품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개발, 상품의 상표표시선정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새로운 문학 미술 음악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등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함.

ITA(정보기술협정을 위한 단계별 협상)

정보기술분야의 제 1단계에 이어 추가 관세 감축 및 대상품목수의 확대를 위한 제 2단계 협상을 진행중이며 '97~2000년까지 매년 25% 관세 삭감할 예정이다.

Item by Item Formula(품목별 협상방식)

관세인하 협상방식의 하나. 이해관계자끼리의 테이블에 앉아 관세인하 품목과 인하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요구하고 또한 자국이 타국에게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는 품목과 세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함.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1948년 GATT 원서명국인 23개국이 UN 전문기구로서 창설하고자 하였던 국제무역기구. ITO의 창설은 Havana 헌장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ITO헌장 초안의 일부분에 주로 근거한 GATT가 세계무역에 책임있는 국가들이 수락한 무역규범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다자간 국제문서로 남게 되었음.

J

Jones Act

미국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의 제 27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박 수송시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서 그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됨.

juridical person(법인)

GATS에서 사용된 용어로 회사(corporation), 신탁(trust), 합작회사(partnership),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협회(association)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지칭

July Package(7월 패키지)

2004.8.1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 동 결정 내용이 7월에 제안되고 논의되어 7월 패키지로 부르나, 실제 의결 날짜는 8.1 새벽이었음. 7월 패키지 합의에 따라 2003.9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침체에 빠진 DDA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K

Kennedy Round(케네디 라운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r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음.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Korea-US Beef Case(한-미 쇠고기 분쟁)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는 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7년까지는 퀴타물량 수입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98년 IMF등 경제위기로 쇠고기 수입이 부진하여 퀴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미국(99.2)과 호주(99.4)등 수출국들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 수입유통제도, 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음. 2000년 7월 패널고서서 확정후 우리나라는 9월 상소하였고, 2001년 1월 최종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후 미국, 호주와의 이행협의를 진행중이며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2001.9.10까지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중임.

- ①구분판매제 : 제소국은 구분판매제로 인하여 현재 전국에 있는 쇠고기 판매점중 45,000개가 국내산을 판매하는 데 반해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5000개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접근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품질을 비교하여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산 쇠고기에 유리한 가격차가 유지되며, 국내산과 수입쇠고기가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인식과 수입쇠고기는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므로 수입쇠고기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아무런 법적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양자사이의 전환도 자유롭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매점의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량제한(quota)과 수입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이 음식점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전문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GATT III:4의 수입산에 대한 차별여

부는 수입산과 국내산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equal conditions of competition)가 제공되는 지에 달려있으며, 구분판매제는 그 자체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상이한 대우(differential treatment)이며, 이러한 상이한 대우는 불가피하게 수입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분리판매 그 자체가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2000.12.11 배포된 상소보고서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내린 결론, 즉 구분판매제가 GATT III:4의 내국민대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으나 공정한 경쟁기회의 개념과 패널의 reasoning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상소기구는 한국이 1988년 수입재개 이후 국내산과 수입산이 동시에 판매되던 상황에서 1990년 구분판매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조건을 수정(modify)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결과로 국내산 쇠고기는 45,000개소에서 판매되는 데 반해 수입쇠고기는 5000개소에 판매하게 됨으로써 수입쇠고기에 불리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다. ②쇠고기 수입유통제도 : 쇠고기의 수입, 국내유통과 관련하여 제조국은 수입주체의제한, LPMO 수입쇠고기의 도매시장 판매, 도매시장 판매시 최저경매가 설정, 도매시장 판매물량의 제한, LPMO의 국제경쟁입찰 연기, SBS 슈퍼그룹에의 참여제한, 슈퍼그룹 및 소속 회원사간 거래(cross trading)의 금지, 거래기록유지의무의 부과, 추가적인 표시의무부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허가제도, 호주산 쇠고기의 곡물사육쇠고기(grain-fed beef)와 초지사육쇠고기(grass-fed beef) 구분, 수입부가금(Mark-up) 부과 등이 GATT XI(수량제한금지), III:4(내국민대우), II(양허표), XVII(국영무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현재 쇠고기에 대하여는 수량제한(Quota)이 존재하며, 제조국에 의하여 제기된 조치의 대부분은 Quota제도하에서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로서 이미 수출국과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양허표(Schedule LX)에 쇠고기에 대하여 잔존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s)이 남아있음을 표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1989년 당시의 패널보고서, BOP

위원회와의 협의결과, 수출국과 체결한 ROU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항은 모두 잔존수입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입부가금, 슈퍼그룹 가입제한, 최종수요자의 제한, cross trading의 제한, Super-group에 대한 거래기록 유지의무 부과, LPMO 물량의 도매시장 판매, 수입허가제도 등 수입유통제도의 기본골격은 잔존수입제한에 해당되므로 2000년말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표시제도와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기록 유지, 입찰의 지연, 방출물량의 제한, 곡물사육쇠고기와 목초사육쇠고기의 구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 국내유통과 관련한 쟁점들은 쇠고기에 대하여 수량제한이 있는 2000년말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소의 실익은 없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폐소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제소국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③소에 대한 보조금 : UR 양허표 작성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급격한 국내보조 감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가격의 기준년도는 89~91년(짧은 93년)을 사용하였고, 적용대상물량으로는 우리나라 수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수매량을 사용하였다. 1997~1998년 급격하게 소값이 하락하자 우리정부는 소수매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소에 대한 시장가격지지액 계산시에도 양허표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기준년도는 89~91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수매량을 적용대상물량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소수매액이 총생산액의 10% 미만이어서 최소허용수준(de-minimis)에 해당되므로 감축대상보조지급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소에 대한 국내보조에 관하여 제소국은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지지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농업협정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소에 대한 보조액을 감축대상보조지급액에 산입하는 경우 97,98년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지급액은 양허표의 감축대상보조한도액을 초과하므로 농업협정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시장가격지지액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제소국은 국제가격과 적용대상물량, 가공단계를 문제삼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소국은 농업협정문 부속서 3에는 국제가격의 기

준년도로 86~88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에 대한 보조금을 계산하면서 89~91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리나라는 양허표 작성시부터 89~91년을 사용하여 왔고, 농업협정문 1(a)(ii)에도 양허표 작성시 사용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적용대상물량에 대하여 제소국은 시장가격지지사업의 가격지지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수매량이 아닌 총생산량 또는 사전계획물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지지사업의 성격상 실제수매량이 적용대상물량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양허표 작성시부터 실제수매량을 사용하여 왔고 농업협정문에도 양허표 작성시 사용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우리나라의 국제가격과 적용대상물량에 대한 계산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수매가격과 국제가격의 가공단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양허표 작성시 포함된 쌀, 보리, 유채, 옥수수, 콩의 경우에는 양허표 작성시 사용한 기준년도와 적용대상물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양허표에 없는 쇠고기와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협정문의 부속서 3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패널은 우리나라의 소에 대한 보조금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므로 감축대상보조 지급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패널은 우리나라가 연도별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양허표에 제시된 두 개의 숫자중 괄호밖의 숫자가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이며 한국의 '97, 98년 감축대상보조 지급액은 감축대상보조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한국은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측은 상소서면입장에서 감축약속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감축약속수준이 괄호안의 숫자임을 양허표와 부속자료의 note에 표시하였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 WTO 사무국도 우리나라의 감축약속은 괄호안의 숫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국제가격의 기준년도와 적용대상물량에 대

하여는 양허표 작성시부터 사용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패널의 권고대로 계산하는 경우 한국은 불공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한국의 양허표와 부속자료의 note를 고려할 때 한국의 감축약속은 괄호안의 숫자라고 판단하였으며, 국제가격 및 적용대상물량에 대하여는 패널의 판단이 맞지만 한국이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패널의 결과를 번복하였다.

Koyto Protocol(교토 의정서)

1997.12.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 의정서를 채택. 우선 선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 감축키로 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8% 감축에서 10% 증가 허용까지 차등적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근거 규정이 최종 채택과정에서 누락됨으로써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 관련 합의는 실패하였음.

L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LDC 혹은 LLDC라고 불림.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율,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내 고용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정하며, 현재 48개국임. 이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3년마다 ECOSOC에 의해 검토됨. 현재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아프리카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닝, 부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케이프 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

지부터 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네-비소, 하이티, 키리바티,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수단,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임. WTO의 일부규정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어려움 및 그들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있음. 첫째, 최빈개도국들은 GATT 제4장(Part IV of the GATT)과 권능부여 조항(Enabling claus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는 선진 국가들로 하여금 최빈개도국들에게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1994년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최빈개도국을 위한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 in favouring of least-developed countries)은 최빈개도국들 각자의 경제개발과 금융 및 무역에 관한 필요 정도와 맞는 약속(commitments) 및 양허(concessions)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동 결정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개선과 최빈개도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세(tariff) 및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조속한 시행을 추구하고 있음. 최빈개도국들은 또한 자국의 무역확대에 필요한 더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됨. WTO 체제하의 각종 협정들은 최빈개도국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음.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분야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빈개도국들이 WTO 조항의 적용을 10년동안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최빈개도국들이 세계 서비스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UNCTAD는 최빈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개발관련 이슈들과 단기 예측 및 성장전망을 다루는 최빈개도국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 무세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Lesser Duty Rule(최소부관원칙)

반덤핑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수입국이 결정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율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채택하는 방식을 지칭함.

less than full compensation(동등하지 아니한 보상)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의 개념을 인정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덜 하는 대신에 저율관세쿼타(TRQ)를 증량하기로 하였음. EU, G10(수입국그룹)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과 수입쿼타에 증량에 따른 부담이 일반품목 보다 덜 해야 한다는 원칙, 즉 less than full compensation 원칙을 주장하였음.

less-than-formula cut(공식에 의한 것보다 적은 감축)

신축성 논의시 주로 거론되는 용어로서 몇몇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을 여타 품목보다 작게 하는 것을 의미. 현재 DDA NAMA 협상의 July Package는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less than formula cu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less-than-full reciprocity(불완전 상호주의)

도하 각료선언 16항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다 신축적인 감축의무가 허용되어 있는 바, 이를 less-than-full reciprocity라고 부름.

LFA(Less Favoured Area, 조건불리지역)

산간, 도서지역은 일반 농촌지역보다 산업,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낮아 농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경지기반 정비 등 SOC확충과 농외소득원 개발로 대표되지만 이런 방안은

비용도 많이 들고 단기간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지불제 같은 소득보조 정책이 필요하게 됨. EU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EU농업은 각국별로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역내 동일가격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조건불리지역 농업은 생존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됨.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농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도입되었음.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산악지역(경지의 고도가 높고 경사도가 급한 지역), 일반 조건불리지역(농업생산성이 낮아 농가소득이 낮고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 소규모지역(특수조건불리지역, 수리조건 등이 토양생산조건에 불리하거나 해안, 도서지역, 환경보호 등 공공규제로 영농에 제한을 받는 지역) 등이 해당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보상수당으로 조건불리지역 농민의 소득손실을 직접 소득보조 형태로 보상하고 경종농업, 축산분야의 3ha이상 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축산에 대한 지원은 축종별 마릿수로 계산한 가축단위(LU)에 비례하여 지불되는데 목초지 1ha당 1.4LU까지만 대상이 됨. 투자보조의 형태로 사료생산과 저장, 분배에 필요한 시설, 목초지 개량과 관련 시설 공동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Like Product(동종상품)

덤핑의 정의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타 GATT 조항에서는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반덤핑협정(GATT 6조)상의 개념은 동일상품(Same product)을 가리킬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 이유는 덤핑이란 오직 동종상품의 가격비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Linear Tariff Reduction(관세인하방식)

케네디라운드 이전의 상품품목별(Item by Item) 관세인하방식과는 달리,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현행 관세율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서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T=(1-a)*t$ T : 최종 세율, t : 초기세율, a : 인하율

Lisbon Agreement(리스본협약)

WIPO(세계지적 재산권 기구)의 주관하에 원산지명명과 그 국제적 등록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조약.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Loan Deficiency Payments(LDP, 융자부족분지불제도)

소맥과 사료곡물에 지원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가소득지지 정책. WTO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통보되는 정책으로서 시장가격이 정부에서 설정한 융자가격보다 낮을경우에 그차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융자가격(Loan Rate)는 매년 품목별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밀의 경우는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LDP는 두가지가 있는데 융자보족분지불과 마케팅론이득 지불제도가 있다.

※ Marketing Loan Payment 참조

Lome Convention (로메협정)

1975년 2월 아프리카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EC와 46개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EU는 ACP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혜관세의 부과, 원조와 개발 지원을 하는 등 각종 무역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M

Madrid Agreement(마드리드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기만적인 상품산지표시를 억제 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

Managed Trade(관리무역)

일부 분야 및 생산품의 무역이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무역의 형태. 이러한 무역형태를 조성하는 것으로는 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수량규제(Quantitative restrictions) 및 그밖의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등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모든 관리무역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의 관리무역은 시장접근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치이상의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3국의 피해를 야기시킴. 일부시각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자기업간의 무역도 관리무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M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간 투자협정)

기본적으로 기존의 쌍무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그리고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는 국제규범임. 포괄범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MAI는 투자

자유화는 물론,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GATS와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MAI는 투자관련 최초의 본격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 BIA 참조

mailbox(메일박스)

WTO 협정 발효일 현재, 의약품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이 시행해야 하는 의무조항 (TRIPS 협정 제 70조 8항 및 9항)

margin of preference(특혜마진)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Market Access(시장접근)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UR 농산물협상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관세상당치(TE)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 수출국의 상품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 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분함.

Market Disruption (시장교란)

급속히,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국내 생산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 중국의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 요인중 하나로 들어가 있음.

Marketing Loan(시장용자제도)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정책. 1985년 농업법에서 쌀과 면화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 마케팅론 제도에 의하면 생산자는 해당 농산물의 국제시장 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아질 경우, 국제시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법률에 의해 설정된 마케팅론 상환단가로 그들의 용자를 상환하여 마케팅론 이득(Marketing Loan Gains)을 수취할 수 있음. 이제도는 원래 1980년대 중반 국제농산물시장의 공급기조하에서 국제쌀시장에서의 미국의 가격경쟁력이 태국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였다. 이제도 도입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용자단가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차액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LDP 참조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협정이라고도 알려진 동 협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가간 협정을 WTO에 예속시켰음. 동 협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부속서 1은 다음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하고 있음. 1994년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관세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Customs Valuation),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부속서 2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포함하고 있음. 부속서 3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포함하고 있음. 부속서 4는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Dispute Settlement),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4개의 WTO 복수국가간 무역협정(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을 포함하고 있음. 동 사건의 부록1에는 마라케쉬 협정 조항의 요점들이 수록되어 있음.

Marks of Origin(원산지 표시)

GATT 제9조는 한 체약국의 원산지 표시요건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제3국이 동종상품에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국의 소비자의 보호와 수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관련비용의 부당한 중대를 야기시켜서는 안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한편,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이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지역적) 상표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야 함.

Mark-up(수입차익)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 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Mark-up 운영의 의미는 수입물품에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MEA(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MERCOSUR(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정된 경제블록임.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협약이 체결됨으로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공동시장은 4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됨. 남미공동시장은 비회원국들에 대한 대외공동관세(TEC)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경제통합의 단계 가운데 관세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며 회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음. 이들 예외품목은 2001년까지 동일한 대외공동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에서는 회원국 총 생산품의 약 90%는 경제블록내에서 무관세로 거래되며 각 회원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된 관세 부과를 허용하였음. 이들 예외품목에 대한 차별관세는 협상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0년까지 모든 생산품들의 역내 무관세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남미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예외적으로는 1995년 유럽연합(EU)과 경제블록간의 협력 합의가 서명되었음. 남미 공동시장의 총인구는 2억7백만 명이며, 역내 순생산(GDP) 총액은 8,598억불, 회원국 일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4,139불. 아순시온협약 이후 지속적인 역내 관세의 인하와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인플레이 안정으로 역내 교역량은 1990년 약 40억불 수준에서 1995년 145억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MFA(Multi-Fiber Arrangement, 다자간 섬유협정)

1974년 체결된 섬유류 무역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3회 연장을 거쳐 현재 MFAIV(1986년 8월-1991년 7월)에 이름. 수출국과 수입국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교역량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도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됨.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MFN 원칙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으로서 한 국가가 제3국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임. 최혜국대우의 부여로써 수혜국은 양허국의 영토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향유하는 불특정의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임. 이 원칙은 국가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역안정에도 기여하는바, 그것은 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는 이 원칙을 통하여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무역장벽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WTO체제에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지만 경제통합,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와 기타 여러가지 경우에 국가간 차별이 인정됨으로서 이원칙에 대한 많은 예외가 주어지고 있음. 국제관계에서 최혜국조항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4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MFN원칙이 이용된 것은 대체로 17C부터 18C에 걸쳐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MFN원칙이 일반화된 것은 19C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음. ITO 현장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MFN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주요선진국에 의해 구체화되었음. GATT 제1조는 MFN원칙의 적용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 □□체약국은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 또는 다른 국가에 적송되는 상품에 대해 허용하는 편의,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국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동종상품과 동영역에 적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MFN원칙은 GATT 전규정을 망라한 무차별원칙이며, MFN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는 우선 GATT상의 어떤 의무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25조 5항의 웨이버권한, 20조의 일반적예외, 21조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19조의 면책조항 등이 이에 속함. 이밖에 MFN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은 14조의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에 대한 예외, 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협정에 따르는 예외, 35조의 특정국가간의 협정부적용, 23조를 근거로 한 의무의 정지 등을 들 수 있음

· ※ National Treatment 참조

MFN 관세(Most-Favoured Nation Tariff)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 적인 원칙. GATT 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됨. WTO회원국 간에는 최혜국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MFN관세를 적용함

※ Preferential tariff 참조

Mid-Term Review(중간평가)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가격침체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주요 의제인 보조금철폐 및 협상대상으로서의 장단기 조치에 대해 참가국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임으로써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였음. 특히 1988년 12월 UR의 중간평가를 위해서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무역협상위원회(TNC)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eli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감축(Progressive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의 입장대립으로 농산물 협상분야은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 그러나 GATT의 중재 및 각국의 이견조정을 거쳐 1989년 4월 Geneva에서 재개된 TNC 고위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후반기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였음. 농산물분야 중간평가에서는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Long-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s), 단기조치(Short-term eleme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및 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등의 3개 분야에서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음. 첫째,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에 대해서는, UR 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체계의 확립(Establish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먼저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금번 중간합의는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합의를 보았음. 이는 지난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시 결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에 대한 미국과 EC의 의견차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한편 중간합의는 위의 합의된

일반원칙(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각국의 특정정책 및 조치별 협상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총량 농업지원 측정방법(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셋째, 양자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다음으로 GATT규율과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간합의에서는 수입접근(Import access) 및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 및 원칙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음. 이 경우 개도국 특히 식량수입개도국에게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식량안보 등 농업 비교역적 측면에 대해서도 협상시 고려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음.

Ministerial Conference(WTO 각료회의)

기존의 GATT에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GATT 체약국단 회의기능을 대체하는 WTO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최소한 2년에 1회 개최됨. 각료회의는 타 기구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의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WTO협정4조1항)함. 또한 다자간협정하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표결처리 가능함. 1995.1.1 WTO 창설후 '96.1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98.5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제3차 회의가 '99.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으나 선·개도국간, 농산물수출·입국간 의견차이로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음.

※ Seattle Ministerial Conference 참조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각료결정 및 선언)

WTO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명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결정 및 선언,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결정 및 선언이 있음.

Ministerial Meeting(APEC 각료회의)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APEC 제1차 각료회의가 열림으로써 APEC이 출범하였으며 매년 1회 개최되어 현안을 상호 협의함.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1993년 이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상징적인 위상은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고위실무회의(SOM)에 작업 지침을 하달하고 보고를 받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APEC 참조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품목의 경우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들의 시장접근기회가 없게된 점을 감안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 Market Access, CMA 참조

modalities(협상 세부원칙)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 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Mode 1~4(서비스의 공급형태)

한가지 형태의 물품 공급형태만이 가능한 상품분야와는 달리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가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GATS협정에서 4가지 형태(mode)로 구분

- 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 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예)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 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mode 4(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외국가수의 내한 공연 등

Modification of Schedules(양허표의 수정)

WTO 회원국은 자국의 관세를 WTO 양허관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세율을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GATT 제28조는 양허표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음. 양허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수출의 주요 이해관계국과 적절한 보상을 위해 협의하여야 함.

Montreal Protocol(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 파괴에 관한 다자간 환경협약(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Halon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규제를 다루며 총95종의 규제대상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2.5월에 가입하였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임.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임.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MPP(Market Promotion Program, 시장촉진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촉진을 위해 기업 및 협회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고부가가치 가공농산물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출시장개척 및 촉진정책은 허용대상 정책이므로 WTO 농산물협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농민들은 수출진흥정책의 예산감축에 따라, 이들 정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MTN Cod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다자무역 협상)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등 6개의 비관세분야와 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 등 3개의 상품관련분야의 다자간 협정을 총칭함.

MFN exemption (최혜국대우 면제)

GATS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됨. 대개의 경우, 각 국가들은 특혜협약, 또는 지역협정 등을 기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게 됨.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 발효시 동 면제조항을 채택하였고, 그 외의 일부국가들은 가입시부터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음. 기존 협정국들도 새로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

Multi-Domestic Corporation(다국적 기업)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일종으로 기업의 일부가 각국에 중심점을 마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동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로 타국의 시장에 공급을 하기 위한 체제를 조직함.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국가의 크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 및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한 참여 및 협력을 기초로 국제무역을 하자는 접근방법.

Multilateral Negotiation(다자간협상)

통상협상방식의 하나. 통상문제를 양자간 해결하는 양자협상과는 달리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Multifunctionality(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① 농업활동이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②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이 정부개입 없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시장실패)를 말함.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최근 농업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로서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공급 기능 외에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NTC 6개국, 동구권 등이 주로 지지하며, 한국·일본은 식량안보, EU는 환경보전을 가장 중요한 다원적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음.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허용보조로도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N

NAC(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명목지원계수)

한나라 경제의 경제활동별, 분야별 지원구조의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동 지원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의 비효율성은 커지는 것임. 경제의 비효율성이 생산자나 소비자 결정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OECD는 명목지원계수(NAC) 개념을 개발했음. 생산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production)는 비보조국경가격에 단위당 PSE를 합한 가액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소비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consumption)는 국경가격에 단위당 CSE의 절대가액을 합한 가격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생산 명목지원계수 소비명목지원계수는 국내지원구조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음. 이 두가지 명목지원계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국내정책에 의한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의 왜곡 효과는 커지는 것임.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 무역협정)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동 지역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음.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총8개 부문, 22개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N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주로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나 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

National Treatment(내국민 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차별주의의 양대 원칙 중의 하나임. GATT에서 규정된 여러가지 의무 가운데서 각 가맹국의 국내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제3조에 집약되어 있는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의무임. GATT상의 “내국민대우”란 각국은 조세 및 정부규제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입품을 공평하게 취급하되 국내제품은 유리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MFN원칙하에서는 A국은 X국과 Y국의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만 하면 되는데 비해 내국민대우 의무는 A국으로 하여금 X국과 Y국의 상품을 자국생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만약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내국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의 정부규제도 국내제품을 보호하고 수입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데 있어 관세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흔한 예로서 수입품에 대해 특별한 상표표시방법이나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건강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행정적 규제가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의무는 가맹국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GATT의무에 비해 내국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음. 한편 GATT 초안작성과정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항을 GATT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특히 그 적용범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일부 협상대표들은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협상대표들은 내국민대우조항의 목적은 양허표의 보호뿐 아니라 내국세나 각종 정부규제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947년 10월에 채택된 GATT협정문의 내국민대우조항은 1948년 □□하바나□□ 회의에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1948년 가을의 □□제네바□□회의에서 GATT 체결국들은 □□하바나□□회의에서 수정된 ITO헌장안의 어떤 부분이 GATT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GATT에(제3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GATT수정의정서에 포함시킴으로서 같은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하

였음. 오늘날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가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국가간 평등권에 기초하여 외국인 대우에 있어서 국가가 갖게되는 권리와 의무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국경장벽이 완화되어 수입품이 쉽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수입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어지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내국민대우의 부여 없이는 국경장벽이 제거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없게되는 것임.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무역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이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임. 또한 내국민대우는 상대국의 국민이나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국가간의 선린과 평등관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

※ MFN 참조

NAWG(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생산자단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65%가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방정부 농업정책중 특히 수출진흥정책에 관심이 많음.

Negative List(금지목록)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양허 방식. 허용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positive list 와 구분됨. GATS 협정에 따라 양허되는 약속이행표 (schedule of commitments)는 서비스 분야의 선정은 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단 양허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negative list 방식에 따라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두 개방되도록 하고 있음.

New Round Negotiation(뉴라운드협상)

세계경제에서 점점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R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환경과 무역문제, 노동과 무역문제, 공정경쟁과 무역문제 등을 규율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 틀을 만들기 위해 지금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등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통상문제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뜻하며 Millennium round라고도 함. 1994년 UR협상타결시 각국은 자유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만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EU, 일본, 한국 등 다수 국가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업, 서비스 이외투자, 경쟁정책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음. 1998.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9년 3월부터 회원국들로부터 의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작업을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협상의제 등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차이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되었음.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차원에서는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협정 이행문제 검토를 포함한 회원국간 신뢰구축 작업계획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2001년 1월 제4차 WTO각료회의의 11월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

NFIDC(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식량순수입 개도국)

'96년 WTO농업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사항으로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포함될 국가들의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은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들(1인당 GNP 1,000불이하 국가)을 들고 있으며, 식량순수입개도국은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으로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와르, 혼두라스, 케냐등 15개국을 들고 있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WTO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및 농업 협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선진회원국들의 규정된 후속 조치와 적절한 감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NFU(National Farmers Union)

미국의 소규모 가족농(family farm)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단체로서 의회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 식품권제도, 아동영양정책 확대, 식량원조 확대, 정부규제 농업정책을 선호하며, 오클라호마, 노스다코다, 미네소타 등의 Great Plains and Upper Midwest지역이 거점지역임.

Non-Actionable Subsidies(허용보조금)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중 연구,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 3종이며, 동 조항은 5년간 적용된 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31조) 허용보조금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출국은 수입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60일이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120일 이내) 여타 보조금의 경우 DSB에 제소 가능하나 허용보조금은 위원회에만 문제제기 가능함.

non ad valorem duties(비종가세)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비자동수입허가)

WTO 수입허가제한의 시행절차협정 제3조에 따르면 제2조의 자동수입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말함. 동 허가절차가 수량제한이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의 부여 또는 배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수량제한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회원국의 요청시 제한의 시행, 최근기간동안 부여된 수입허가 및 공급국간 배분, 수입통계(단, 개도국은 이로 인한 행정·재정상 부담을 지지 않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쿼타의 총량, 개시일, 마감일, 이에 대한 모든 변경, 쿼타의 공급국간 배분내용, 쿼타의 공급국간 배분내용, 쿼타를 조기개시할 경우 그 일자에 관한 사항은 발효일 21일 이전에(늦어도 발효일 전에) 통보가 필요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선착순일 경우 30일, 모든 신청자가 동시 고려될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가의 배분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수입실적, 경제적인 물량허가여부, 개도국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Non-Discrimination Principle(무차별 원칙)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과 경제활동의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차별을 배제하는 원칙을 무차별원칙이라 하며 여기에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음.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한국가이 입장이 중심이 되지만 상호주의는 상대국와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약간 다름. 그리고 국제경제활동의 자유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상품과 경제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장접근의 원칙이나 국가의 무역에 관한 제도나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음.

※ MFN, National Treatment 참조

Non-Exempted Domestic Support(감축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은 농업관련 국내보조조치중 허용대상정책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는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고 있음. 감축대상보조조치는 무역왜곡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해 품목의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경보호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가 농산물가격에 개입하는 시장가격지지,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대상 직접보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생산,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허용보조 이외의 모든 여타 지원조치(영농자금지원, 자재지원, 유통비용지원 등) 등을 말하며, 감축의무면제 대상으로는 개도국우대보조, De-minimis 보조,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보조 등이 있음.

Non-linear formula(비선형 공식)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율이 높아지는 관세감축 공식. 스위스공식이 비선형공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관세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 공식과 대비됨.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비특혜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됨.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무역정책에 사용됨.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운용되며,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우회 수입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며, ②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운용, ③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되며, Quota, 수출자율규제제도, 시장질

서협정, 다자간 섬유류협정, 긴급수입제한이 해당, ④ 수입지역 제한제도 운용되며, 국민보건위생 보호, 수입선 다변화제도,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이 해당됨.

Non-Product-Specific AMS(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불특정 AMS란 WTO 농업협정상 허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업 생산자에 대한 보조이나, 특정 농산물 생산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품목별 지원액을 구분 계산하기 어려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대상품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농업용 자재지원, 영농비용지원, 유통비용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들 품목의 보조액은 지원정책별로 재정지출액 또는 농가수혜상당액을 계산(품목별 AMS 계산방법과 동일)하고 각각의 보조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Non-Recourse Commodity Loans(비상환상품융자제도)

미국의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담보융자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책용어. 미국의 주요 농업보조정책에는 비상환융자정책(Non-recourse loans)과 부족분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s)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지난 30년동안 밀, 사료용 곡물, 면화 및 쌀에 대한 가격지지는 생산농가에 대한 비상환융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즉,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작물을 담보로 기존 융자가격으로 비상환대출을 받고,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담보로 한 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최근에는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 생산농가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상품신용공사(CCC)가 잉여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때의 잉여농산물은 상품신용공사가 시장에 판매하거나 식량원조형태로 처분하기도 한다. 이제도는 융자단가가 최저가격지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에 대한 담보융자제도는

소맥, 면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1938년 이래 계속 실시되어 왔으며, 융자단가(loan rate)는 1985년 이전까지는 1933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패리티(Parity)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왔으나, 1985 농업법에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5개년간의 시장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그 가격의 75~85%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Non-Tariff Measures(비관세조치)

국제교역에 있어서 쿼타, 수입허가제도, 위생규제조치 등 관세가 아닌 조치들을 말함.

Non-Violation Case(비위반사건)

GATT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내지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Normal Value(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적인 거래되가격을 말함.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중 대표적인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

NTB(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데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 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기능)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크다고 하겠음. NTC에 대한 GATT 규정으로는 GATT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b)의 (iii)을 들 수 있으며, UR 농산물협상시 TNC(무역협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협상초기부터 각국의 농업정책수행상 무역정책 이외의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였음. 미국은 NTC를 식량안보(Food Security)로 한정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니 식량자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식량안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 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단지 수출국입장에서 수출규제 및 금지조항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식량비축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케언즈 그룹도 미국안과 유사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적정재고유지와 공급선다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특히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안보는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비용이 들고 수출국에 대한 이익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었음. 일본은 최대 수입국으로서 NTC중 식량안보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경조치(GATT 11조 2항 (c) i)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식량안보에 염두를 두고 있는 품목은 쌀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만큼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배후에 깔

려 있었음.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국내농업수준 유지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것이었음. 따라서 합의된 전체 자급을 범위내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GATT에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우리나라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접근을 또는 최소자급율로 표시되며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조치를 GATT 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입국마다 관심사항 및 보호 품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음. 우리나라가 NTC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였던 쌀, 보리, 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중 9개 품목은 이미 '89년에 '97년 7월까지 현행관세로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BOP 품목)들로서, 해당품목의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늦췄음. 쇠고기는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율은 두배이상 (20→43.6%)으로 인상하였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34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97.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5개품목은 '95년에 자유화하되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음.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온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5개품목은 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화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수입국들이 공조하여 차기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98. 6월, 9월, 11월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간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8.9.22에 “식량순수입국에 있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 우리 입지를 강화하였음. OECD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2) 다원적 기능의 계량적 측정, 3)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의 세가지 범위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도출하기로 '99. 4. 농업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계속 논의중 임.

NTC Group(Non-Trade Concern)

WTO 농업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 리셔스 등 6개국임

NTE Report(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미국의 1984년 통상법에 의하면 USTR은 미국의 상품·서비스의 수출, 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중요한 장애를 구성하거나 왜곡을 초래하는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Acts, polices or practise)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1984년 통상법은 USTR로 하여금 외국정부의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미치는 무역왜곡적 영향(Trade distorting impact)을 평가하도록 하고, USTR의 보고서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NTE)라고 함.

NTMs(Non-Tariff Measures, 비관세조치)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nuisance tariff(소액관세)

관세액이 너무 적어 과세에 드는 비용이 과세액 이상인 경우와 아무런 보호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관세를 지칭함

Nullification or Impairment(무효화 또는 침해)

GATT 제23조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다른 체약국이 동 협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특정조치 적용결과 및 기타 상태존재 결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본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때 상대 체약국과 조정을 하든가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음. WTO 협정은 회원국간 이익침해 조치로 인한 분쟁을 모두 분쟁해결절차로 통합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여 회원국의 권리·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GATT 분쟁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관세양허의 기술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양허품목에 대한 세분 또는 분류상의 차이는 GATT 제23조의 “무효화”(nullification)의 대상이 됨. 이는 노르웨이와 서독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에 의해 결론지워진 해석으로서 서독이 “정어리”와 비슷한 어류의 수입에 대해 노르웨이산 “정어리”에 비해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자 노르웨이가 이를 GATT 분쟁위원회에 제소하였음. 그런데 1952년 동위원회는 이같은 서독정부의 조치가 GATT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노르웨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무효화」라고 결정하였음. (동위원회의 결정은 체약국단에 의해 받아 들여졌음) 즉 이같은 세분류는 양국간의 교섭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협상대표들도 이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지만 다만 그후의 서독정부의 조치는 노르웨이가 합리적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아니며 또한 이같은 분류상의 혼동은 노르웨이로 하여금 안정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인정된다는 것이 동 위원회의 논지였음. 이에 따라 서독은 보상조치를 제공하게 되었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는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여러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음. 이에따라 선진국 주도로 남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증대와 질적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음. 원조공여국인 DAC회원국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 23개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나 DAC의 비회원국임)되며, IMF/IBRD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데 DAC는 공정개발원조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공산진영과의 대결구도하에서 유럽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국가들에 대해 『마샬플랜(Marshall Plan)』에 의한 원조를 실시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체로서 1948년에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구주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함. 그후 미국의 전후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지위변화, 유럽의 급속한 경제부흥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체의 창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OEEC를 확대발전시킨 OECD를 1961.9.30 설립함. OECD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으로 유럽지역 22, 아메리카 3, 아시아 및 대양주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가입을 신청중에 있는 나라는 러시아, 이르헨티나 등임.

- 유럽(22)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95.12), 헝가리('96.3), 폴란드('96.11), 슬로바키아('00.12)
- 미 주(3) : 미국, 캐나다, 멕시코('94.5)
- 아시아 및 대양주(5) :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 한국('96.12)

OECD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로서 회원국 경제성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구이며,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님. 즉 OECD는 협상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회원국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지역개발등 특정분야만 다루는데 반해,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 및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임. 주요사항 결정은 각 회원국의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합의(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간 신뢰관계에 의해 준수되는 클럽적 성격을 가지나, 회원국간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감. OECD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경제적 비중과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역할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개념정립기반을 마련하는 범세계적인 무역·경제관련 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즉, 투자상의 장벽제거, 농산물 생산보조감축 등과 같은 개념도 OECD에서 먼저 논의된 후 UR에서 국제규범화 되었으며, 무역과 투자, 환경, 경쟁정책, 노동, 규제완화, 뇌물공여방지, 국내정책의 상호조화문제를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로 논의 중에 있음. 범세계적인 경제기구인 WTO, IMF는 물론 EU, NAFTA, APEC 등 지역협력체의 구성원이므로 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ECD 협정문 제16조에 의하면 신규회원국의 가입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하며, 가입효력(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생함. 우리나라는 지난 '93.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6년말까지 OECD가입기로 결정하고, '94. 5월 외무장관 서한을 통하여 가입의사를 공식전달한 바 있으며, '95. 3. 29일 공식가입신청서를 외무부장관 명의로 제출하였음. 가입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OECD이사회는 '96. 10월 한국에 대하여 가입초청을 하였으며 국회는 '96.11.26일 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처리함. 이에 따라 정부는 '96.12.12일 프랑스정부에 OECD가입신청서를 기탁함으로써 29번째 정회원이 됨.

OECD/Act of OECD(제규범)

OECD는 정책협의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규범(norms)을 정립하는 기구가 아니나, 소기의 자체목표달성을 위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규범의 대부분은 경제운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원칙, 지침에 관한 것임. OECD와의 가입조건 협의는 규범에 대한 수락과 유보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임. OECD로서는 신규가입국이 OECD규범을 전반적으로 수락 또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규범을 수락하고 가입하는 국가는 없음. 가입조건 협의시 결정과 권고에 대한 수락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양대 자유화규약(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폐기물이동에 관한 결정,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등 여러 개의 핵심규범의 수락여부가 가장 중요함. OECD규범은 법적 의미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이사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협정(Agreement signed by organization)이 있으며, 정치적인 준수 의무가 있는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s), 약정(arrangements), 지침(guidelines)이 있음. 현재 OECD 규범수는 총 167개로서, 이중 농업규범은 12개(결정 9, 권고 3)임. 12개 농업규범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7개는 종자의 품종인증과 이동통제에 관한 규범이고 4개는 과채류와 트랙터의 표준제도운영과 관련된 규범이며, 나머지

1개는 도시근교지역 농업의 역할에 관한 규범임.

【결정(decision) : 9】

- (1) 농업용트랙터의 공인시험을 위한 OECD표준코드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7)53 Final]
- (2) 국제무역에서 채소종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71)31 Final]
- (3) 국제무역에서 사탕무 및 사료용 무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6 Final]
- (4) 국제무역에서 옥수수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67 Final]
- (5) 국제무역에서 목초 및 유지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8 Final]
- (6) 국제무역에서 곡물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9 Final]
- (7) 국제무역에서 서브테레니언 클로버 및 유사종자의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70 Final]
- (8) 국제무역에서 산림번식자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74)29 Final]
- (9)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92)184 Final]

【권고(Recommendation) : 3】

- (10)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과채류의 상표부착과 증명표시를 위한 일반규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C(72)100 Final]
- (11)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 또는 냉장 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포장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6)124 Final]
- (12) 도시근교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C(79)18 Final]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OECD 농업위원회)

OECD 농업위원회는 1961. 9. 30 설립되었으며, 현재 30개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옵서버는 아르헨티나와 국제기구등임. 농업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작업반(Working party), 3개의 작업그룹(group), 4개의 회의(meeting)가 있음.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간 농업정책에 대한 협의 및 농업의 발전도모, 회원국의 농업 현황 조사, 농산물시장 및 유통기능향상에 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며, 농업정책·시장 및 무역의 모니터링, 농업개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활동, 농업표준·통계 및 연구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4. 9월 OECD/농업위원회에 옵저버가입을 신청하였으며, '94. 11월 OECD 제119차 농업위원회의 결정과 '94. 12. 19 OECD이사회 승인으로 옵저버로 가입, '95년도부터 OECD 농업관련 각종회의 참가 등 OECD 활동 본격 시작하였음. OECD 농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98. 6월 한국 농업에 대한 국별검토(Country study)를 실시하였음.

OECD/Committee & Working Party(OECD위원회 및 작업반)

OECD는 현재 농업위원회 등 26개의 전문위원회와 보조성격의 4개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이 있음.

OECD/Convention(OECD 협정)

전문과 21개조로 구성된 OECD협정은 OECD의 설립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 활동방법, 규범제정, 이사회 등 기본조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정의 수락은 OECD의 기본설립 목표에 대한 수락을 의미함.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OECD 각료이사회)

OECD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매년 1회(5월

말이나 6월초) 개최되며, OECD의 주요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함. 특히, G-7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사전입장 조정하고, OECD의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확정함.

OECD/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 OECD 온라인 서비스망)

OECD/OLIS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회원국과 대표단들에게 OECD관련정보를 제공하는 On-line 서비스망으로서 OECD/컴퓨터 및 통신위원회(DCC)가 1985년 통계자료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나, 1986년에 OECD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문서(documents) 및 전자우편(E-mail)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음. 2000. 1월에는 기존 OLI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OLISNET를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입기관은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국책연구기관이며 농림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KREI가 가입 운영중에 있음.

OECD 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OECD 특별집행위원회)

OECD 회원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며, 금융, 무역, 투자 등 국제경제상의 주요문제를 검토함.

Offer List

시장개방의 방식 중 R/O 방식의 협상에 있어 상대국의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청하는 Request에 대해 자국이 시장개방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는 시장개방 계획서.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에 대한 국제표준을 다루는 기구(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로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각국의 공통적인 위험을 인식하여 새로운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에 신속히 알리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가축 방역에 대한 시험연구를 증진시키고 조정하며, 가축 전염병의 전파 경위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수집과 교환 등으로 가축 위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가축 위생업무에 대한 국제협약을 조정하고 가축 방역시책을 실천하고 있음. 국제위원회·행정위원회·사무국·지역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조직되며,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구제역 상설위원회, 식육바이러스 연구위원회, 혐기성 세균 질병위원회, 살모넬라균증 연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연구위원회,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위생규약 연구위원회, 기생충 연구위원회, 어류 질병 연구위원회, 양봉 질병 연구위원회, 생물학적 제재 연구위원회, 가금 질병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됨. 한국은 1953년에 가입하였음

OMA(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미국은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국별 선별적인 양자간 규제협정을 OMA라고 칭하고 있다.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VER(수출자율규제)과 함께 회색지대조치의 전형임.

Original Principle(생산국 과세원칙)

제품교역시 직접세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재산에 대한 세금, 사회보장세 등을 제품생산국가에서 부과한다는 무역에서의 세금부과원칙의 하나로 제품에 대한 소비국 과세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임.

Osaka Declaration(오사카선언)

'95. 11. 19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은 경제발전수준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협력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와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함. 선진국은 선진국형 자유화 모델을 APEC에서 무차별적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개도국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발전단계, 취약부문 등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정책 선호함.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행동지침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충분히 자유화가 진전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 등 아시아 개도국의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그들의 입장을 선도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이러한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으로 공동번영, 경제협력, 자발성 및 다양성 고려 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 회원국 정상들이 공감함으로써, 이 방향이 21세기를 겨냥한 APEC의 활동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추진방향으로 정착되었고 농업부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교섭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인 결과 농업 등 각국의 어려운 여건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일반원칙(행동지침 8항)이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자유화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 우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8. FLEXIBILITY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APEC economies and diverse circumstances in each economy,

flexibility will be available in dealing with issues arising from such circumstances in th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process.”

out-of-quota rate(할당의 관세율)

할당관세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이러한 제도는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내 물품의 수입시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

P

Panel(패널)

WTO 분쟁해결 협의결과,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쟁에 실패하거나, 협의기간중 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설치의 요청은 서면제안으로 이루어지며 동 요청서에는 협의이행 여부 및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패널설치 후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을 설정하여야 함.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의거 ……DSB에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DSB가 관련협정하에서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발견을 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부 및(또는) 비정부 인사로 구성됨.

- 패널업무 및 패널에의 제소경험이 있는 자
- WTO나 기존 GATT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나 혹은 사무국(secretariat)에서 종사한 바 있는 자
- WTO하의 제반 관계협정이나 그 이전 협정하의 이사회나 위임회

에서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관한 강의나 논문발표 경험이 있는 자
-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고위실무 경험이 있는 자

분쟁당사국이나 당해 분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인사는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리스트로 선정될 수 없음. 사무국은 패널리스트 선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 목록을 보유하여 상황에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선정할 수 있음. 패널은 설치후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리스트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함.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분쟁발생시에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1인의 위원을 개도국인사로 위촉하여야 함. 부패성 물품 등의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보고서가 3개월내에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혹은 긴급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에 통보하여야 하나,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패널보고서에 기록된 개별 패널리스트의 의견은 익명으로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동 국가들에게 패널의 서술부문과 조사부문 및 결론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쟁당사국들로부터 견해표명이 없을 경우,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간주됨.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일방당사국이 DSB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총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됨. 일방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동 보고서는 상소가 종결될 때까지는 DSB에서 채택될 수 없음.

P

Parallel importation(병행수입)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

TRIPS 협정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Paris Club(파리클럽)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 포럼은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함.

Paris Convention(파리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조약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상호, 산지표시 및 원산지명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동 조약은 불공정경쟁을 억제하는 것도 추구함.

Partnership Agreement 신동반자협정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국가에 대한 EU의 무역특혜 부여 협정.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이슈에 관해서 동일한 전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업계, 학계 및 정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에 설립되었음.

Pest-or Disease-Free-Area(병해충 안전지역)

WTO/SPS 협정의 병해충 안전지역이란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을 말함.

Peace Clause(평화조항)

WTO농업협정 13조의 적절한 자제(Due restraint)관한 내용으로써,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이 동 협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각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동 협정이행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동안 보조금규정에 의한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조항은 UR농산물협상 타결의 계기가 되었던 1992년 미국-EU간 블레어하우스 협약에서 최종 합의되었으며, 동조항의 의의는 GATT 94 및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농업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상이한 보조금 분류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조항에 의해 농업협정은 GATT 94 및 보조금협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상계관세부과나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 무효화에 근거한 조치발동여부는 농업협정에서 정하고 그 절차는 일반법인 보조금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유의할점은 이조항은 92유통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양허수준 이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적용되는 것이며, 즉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평화조항의 유효기간은 2003년임. 현재진행중인 WTO 농산물협상에서도 EU는 그동안 평화조항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는 유익한 역할을 했고, 회원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 주장하고 있음.

PL 480 (미 공법)

1955년 농산물무역 및 개발지원법(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5)으로서 미공법은 2차대전후 설립되어 유럽원조 및 경제개발, 시장개발, 외교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동유럽 및 구소련의 시장경제 전환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음. 동 법은 미국이 '평화를 위한 식량(Food-for-peace)'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비교역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산물 수출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이러한 형태의 수출을 이행하는 방법에는 재해구제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부, 잉여농산물을 타국

에 기부하는 형식의 전략적 자재·재화·용역과 교환, 신용보조하의 수출 등 다수가 있음. 동 법에 의한 주요 수출농산물로는 밀, 사료용 곡식, 쌀, 면, 유채종자, 낙농제품 등이 있으며 동 법하의 비교역형태의 수출은 특히 제3국간의 생산자들에게 공급되는 세계농산물 무역의 흐름과 경제이윤에 대해 영향을 미쳤음. 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농산물 수출의 30% 정도가, 80년대에는 쌀, 밀, 식물성유지 수출의 20%가 이 공법에 의한 특혜판매 세일이었음. 이당시의 특혜판매는 식량원조 및 시장개척 목적 이외에도 미국의 과잉농산물 처리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이제도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대만, 브라질, 페루 등이 이 공법의 수혜자가 된 후 미국농산물의 주요 시장이 되었음.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복수국간 무역협정)

WTO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일반적인 WTO 협정이 아니라, 동협정에 가입한 당사국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효되는 협정이다. WTO협정에 부속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정부조달, 국제낙농, 국제우육에 관한 협정 등 4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가입하였음.

Polluters Pay Principle(오염자 부담원칙)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임. “오염자부담원칙”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ECD가 1972년에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최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분담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

하고 있음. 즉 동 원칙은 환경이 수용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상기의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Positive comity(적극적 예양)

일반적으로 국제예양(comity)이라 함은 한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 함은 경쟁정책의 운영에 있어 한 국가가 관련양자협정의 규범 하에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의 경쟁법상의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년의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positive comity 협정이 이에 관한 가장 진보된 협정이라 할 수 있음. GATS 제9조(사업 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적극적 예양원칙과 관련된 규정임.

Positive System(포지티브 시스템)

점진적 자유화 추진방식의 하나로서 개방이 가능한 부문 및 사항만을 열거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개방가능한 부문 및 사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임.

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제조공정방법)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원이 추출되고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요건 (PPMs-related requirements)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환경오염 비용이 그 대표적인 예임. 오늘날 주요선진국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제조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만 국한되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도

함. 대개 제조공정은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규제와의 충돌은 야기하지 않음. 그러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촉진시키고 환경유해적 활동을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조공정요건이 때로는 통상규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환경과 무관한 목표, 즉 제조공정요건을 위장한 통상규제조치로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제조공정요건은 통상과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과제로 되고 있음.

Precautionary Principle(사전예방 원칙)

사전예방원칙이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분야 외에 식품안전분야에도 동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최근 BSE과동, 수입 옥수수 GMO옥수수 사태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수입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이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등 식품 주수입국이고 선진국에 비해 검역,검사 인프라 및 위험평가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농업 및 SPS관련 분야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음.

preferences(특혜)

일부 교역 당사국에게만 부여되는 관세인하, 비관세조치 비적용 등의 혜택을 말함.

preferences erosion(특혜침식)

특혜 무역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해왔던 일부 개도국은 현재의 MFN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의 차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MFN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이를 특혜 침식이라고 부름.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인하 논의시 특혜 침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Preferential Rules of Origin(특혜 원산지 규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인 EFTA, NAFTA, 칠레-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특정 국가간에 특혜관세적용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대상국의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임. 특정 국가군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됨. 비특혜원산지 규정이 일반 무역정책에 사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특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Preferential Tariff(특혜관세)

특혜관세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를 의미. 과거 식민지국과 본국간의 식민지 특혜관세 제도가 있는데, 지금도 EU의 ACP국가나 지중해 연안국가에 대한 특혜나 미국의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등이 있음. 가장 대표적인 특혜관세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임. 또한 1989년 범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개도국간 관세상의 특혜제도도 있음.

※ GSP, GSTP 참조

Preshipment Inspection(선적전 검사)

선적전검사제도는 농산물 및 특히 공산품의 자국수입과 관련하여 동상품의 품질(성능, 규격, 재질, 제작형태, 상태 등), 수량, 수입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이 선적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평가 능력이 없는 후진국이 실시하는 제도임. 선적전 검사제도는 그동안 국

제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의 검사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자의적인 가격검정 등을 가능케 하고, 이에 따라 개도국내 수입자의 부정무역행위에 선적전 검사기관이 영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선진수출국측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자국의 수출에 규제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선적전 검사제도가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의 제정이 강력히 주장되어 UR비관세 협상그룹에서 가장 먼저 타결을 본 협약중의 하나임. 선적전 검사제도는 UR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GATT 관세평가 협약에 미가입한 후발개도국들을 위주로 하여 27개국이 활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기니, 케냐, 코트 디부알, 마다가스칼, 자이레,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등) 선적전 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① 수입국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수출국현지에 파견시켜 검사종료후 선적, ②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행사하는 방법, ③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음. 대부분은 공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공무원이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도 있음. 선적전 검사전문기관은 세계적으로 6-7개의 다국적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스위스계의 한국현지법인이 있음.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수출물품검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종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선적전검사협정 제4조(독립적 심사절차)를 설치하여 선적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된 독립기관에 의하여 분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Principle of Comprehension(포괄성 원칙)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포괄성의 원칙은 UR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과 유사한 개념임. APEC에서는 이 원칙을 APEC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한 추진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APEC의 15개 행동강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한테 불리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서 이행해나가는 안된다는 것을 뜻함.

Principle of Flexibility(신축성 원칙)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신축성의 원칙은 APEC이 지향해 나가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회원국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 및 무역당사자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APEC 각 회원국간에 무역 및 투자가 자유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자는 원칙을 뜻함.

Priority Foreign Country(우선협상대상국)

1988년 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302조와 제1303조에서 사용된 용어로 각각 슈퍼 301조(super 301)와 스페셜 301조(special 301)로 알려져 있음. 슈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임. 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은(1)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가장 악명높은 법, 정책,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해 공평하고 균등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국가 및(2)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거절하는 국가들을 말함. USTR은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해야 함. 이들 국가는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으나 USTR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생산자 은퇴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의 은퇴농, 이농대상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자격을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사람이 은퇴 또는 비농업활동으로 이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 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Product Specific AMS(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특정적 AMS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감축약속이 면제되지 아니한 그밖의 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농산물별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임.

(A 품목의 AMS : 시장가격지지 + 감축대상 직접보조 + 기타 감축대상 보조) 다만, 농업협정에 제6조5항에 규정된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은 감축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하여 계산되나 이행기간 당해년도 Carrent AMS 계산시에는 이를 AMS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축의무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생산탄력계약)

미국의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도. 생산탄력계약제도는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1973년이래 유지되던 시장가격지지제도인 '부족지불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음. 96년 농업법에 따라 농가는 정부와 '생산자유통계약'을 맺고 농지보전 요건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계약지불금'을 받음.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가에 직접지불을 하며, 지급액은 7개 품목별(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로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과거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불. 예를 들어 1991~95년 밀을 재배하던 농가

가 콩을 재배하더라도 밀에 대해 설정된 예산으로 지불함. 연도별 총 보조예산이 1996년 5,570백만불에서 2002년 4,008백만불로 대체적으로 감축되도록 되어 있음. 미국에서 계약지불제도의 수혜자는 약 56만명 가량이고, 연평균 1인당 지급액은 9,100달러가 됨. 계약면적에는 경작 자율성(Production Flexibility)이 부여되는데 과일, 채소류(렌즈콩, 녹두, 완두콩 제외) 이외의 모든 품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1996~2002년의 7년간임. 기타 지급조건으로는 1985년 농업법의 경지보전요건 및 습지보전조항 준수, 계약된 경지의 비농업적, 상업적, 공업적인 사용 금지, 계약조건 위반시에는 계약 종료와 아울러 지불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계약위반 기간중 받은 지불금(이자 포함)을 반환 등이 있음. 계약지불제도가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EU는 계약농지에 과채류 식부금지의무는 생산중립에 위배되고, 계약지불제도가 비록 현재의 생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5년간 생산실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과거 5년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 비록 현재의 생산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고정액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Prohibited Subsidy(금지 보조금)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 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함.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이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함(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Protocol(의정서)

UR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협상결과와 동 협상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협정문, 결정문, 양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rotocol of Accession(가입의정서)

한 국가가 GATT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

Provisional Safeguard (임시 세이프가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에 있어 특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추정치)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수입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P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지, 생산기준지불, 경작면적/사육두수 기준지불, 과거 실적기준지불, 투입재사용 기준지불, 투입억제 기준지불, 농가소득기준지불, 기타지불 등 8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됨. PSE 계산시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서 자원을 탈농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임.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대상 기본품목수는 밀, 옥수수, 기타 곡물(보리,귀리,수수), 쌀, 유지작물(대두,유채,해바라기씨), 설탕(Refined equivalent),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 으로 13개임. OECD Country Study시 PSE 계산에서는 각국의 농

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액이 총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포함함. 아국의 경우는 쌀, 보리,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로 8개품목이 해당됨.

$$* \%PSE=100 \times \frac{\text{시장가격지지액} + \text{재정지불액}}{\text{총생산액} + \text{재정지불액}}$$

PSI(Principal Supplying Interest, 주요 공급국)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시 양허철회국이 협상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최초교섭국 이외의 당해품목 제1위 수입국을 말함.

Punta del Este Declaration(푼타 델 에스테 선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공식 출범하였음. 회의의 종료와 함께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세계 농업무역제도의 개혁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요 이슈로서 확인하였음. 선언은 크게 상품분야의 13개 협상분야와 GATT 기능분야, 서비스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품분야에는 관세, 비관세조치, 열대산품, 천연자원기초상품, 섬유 및 의류, 농업, GATT 조문, 긴급수입제한조치, MTN codes,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해결, TRIPs, TRIMs가 포함되었음. 동선언문에 따르면 농업협상의 목표는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수입접근과 수출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개선하여 GATT 규칙과 규율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음. 동협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① 특히 수입장벽의 감축을 통해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② 모든 직간접적인 보조와 기타 직간접적으로 농업무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치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확대함으로써 경쟁환경을 개선하며, ③ 위생 및 검역규정과 장벽이 농업무역에 대하여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한다는 것임.



QR(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제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일명 쿼타(quota)라고 함.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 쿼타제도가 국제무역에 널리 사용된 것은 1930년대 초로서 국제관세협정 하에서는 수입급증을 이유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인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쿼타제도로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조항으로는 제15조와 18조가 있는데 제15조는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한 예외와 밀접하게 관련된 GATT와 IMF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국제수지문제와 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Quad(협상 주요 4개국)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국제통상협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4개국. 종전에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를 지칭하였으나, 최근 DDA 협상에서는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을 의미함(이를 4개국은 New-Quad라고도 불리움).

Quota(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그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쿼타는 입법조치가 없어도 행정당국의 재량의 의해 시행할 수 있는 편리한 수입억제수단이며 무역제한의 효과가 확실하여 국가의 무역관리에도 좋은 수단임. 관세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수입의 억제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쿼타는 수입량을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많으며, 관세는 수입국의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기능은 작동하지만 쿼타는 가격기능을 배제하는 특성대문에 쿼타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국별쿼타(Country quota) 등이 있음.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래 양차대전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고, GATT의 발족이후에도 터타제의 폐지에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진국의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이는 GATT가 세계무역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 중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음. GATT에서는 쿼타의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요건 규정을 두고 있음. 쿼타시행과 관련하여 자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쿼타시행으로 인한 차별대우의 가능성으로 쿼타는 가변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있어서 모든국가에 대하여 차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GATT에서는 최혜국대우를 제1조에서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GATT 제13조에서 쿼타제 실시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원칙 준수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당조하고 있음.

※ Global quota, Country quota 참조

Quota Auction(수입권 공매)

수입권공매제도는 GATT규정이나 WTO협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거 호주·뉴질랜드가 UR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음.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95-'96 WTO 농업위원회에서 WTO 협정 부합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TRQ 참조

R

Recycling(재활용)

폐기물을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 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임.

Red·Amber·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국내농업보조에 대한 UR협상의제는 소득 및 가격지지를 포함한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에 관한 GATT규율강화와 점진적인 감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신호등 분류방식은 UR협상초기 미국이 제안한 방식으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철폐대

상(red), 규제대상(amber), 허용대상(green)으로 분류하고, 철폐대상(red) 정책은 10년내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989년 중간평가회의 이후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음. 감축대상(amber)정책에는 정부수매와 같은 정부관리가격,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보조등이며, 허용대상(green) 정책은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decoupling), 환경보존 및 유지, 재해보상, 선의의 식량원조, 식량비축 등에 대한 보조이며 규제대상(amber)정책은 AMS를 통해 감축한다는 것임. 예컨대 미국의 의도는 농산물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경보호조치와 국내보조정책 등에 의해 생기는데 그중 국경조치에 의한 부분은 관세화로 수용하고, 나머지 국내보조정책부분인 국내재정지출은 AMS에 의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임.

※ Agricultural Subsidy 참조

Regionalism(지역주의)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말하며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EU, NA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세계무역중 약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으며,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한 WTO회원국 등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괄목할 만큼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협정의 중요성 증대가 WTO가 추구하는 다자체제에 주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즉, 지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문제임.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 FTA 참조

Rebalancing(관세율 재조정)

UR 협상과정에서 EC의 관세화 수용의 전제조건으로써 기존에 EC가 유지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무세 또는 저세율로 GATT에 양허해 놓은 것을 철회·재조정하겠다는 주장.

Reciprocity(상호주의)

국제관계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GATT의 기본원칙중의 하나로,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 준다는 원칙. GATT체약국이 무역자유조치를 취할 경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동 조치를 상호교환하는 주의를 상호주의라고도 하며 무역면에서 자국과 상대국은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상호주의 개념은 상당히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국가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을 한다는 것 외에도 교환되는 무역혜택의 동등성을 내포하고 있음. 즉 국제무역의 상호주의는 다자 혹은 양자간에 있

어서 각국이 제공하는 양허가 국가간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국가관계가 협조적일 때는 균형된 국가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국가관계가 경쟁적일 때는 상호 연쇄적인 보복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GATT협정문 제4부의 개도국조항(37조)과, 이와는 반대로 개도국도 경제개발의 진전정도에 따라 GATT의 권리의무를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동경라운드의 Framework협정 및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에 상호주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여 상품시장개방등 국제무역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GSP혜택도 줄여나가거나 GSP에서 졸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하고 있음.

※ National Treatment, MFN 참조

Request List(시장개방요구서)

R/O 방식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상대국가에 대한 관세율인하 내지 개방요구 등의 자유화 사항 요구로서 양허협상시한 참가국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다른 참가국의 교역자유화 요구 목록임.

Residual Restriction(잔존수입제한)

GATT상 위법인 수입제한조치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GATT 가입후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키로 잠정 협정 의정서나 또는 가입의정서 상에서 약속해 놓고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소위 잔존수입 제한품목이라고 하는데 GATT의 특정 상대국이 이의제기를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묵인되었던 수입제한조치를 말함.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자원폐기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 보조로서 정부의 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소득보상적인 성격으로 그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그 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 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농지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의 휴경을 하거나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Reuse(재사용)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생(Recovery)과 구분되며, 재활용(Recycling), 감량화(Reduction)와 함께 3R로 통하고 있음

Retaliation(보복)

한 체약국이 취한 관세인상 또는 기타 무역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체약국이 취하는 대응조치로서 GATT 23조는 양국이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Revealed Comparative Advnatage(현시비교 우위지수)

B. Balassa가 개발한 일종의 경쟁력 지수로서 세계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임. 일반적으로 1보다 클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Reverse Consensus(역만장일치제)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 회원국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경우 만장일치로 간주하는 제도를 역만장일치제라 함.

Rice Millers' Association(미국 미곡도정업협회)

미국 쌀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899년에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서 쌀 도정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모임임.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이 협회에는 미국 전체 39개 도정업체중 대규모 도정업체 28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1984년부터는 곡물거래업자, 가공업자, 창고업자, 정미기계제조업자 등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여 회원수가 총 60여개사에 달하고 있음. 당초 RMA의 주요기능은 정보수집, 연구분석, 관계기관과의 연락, 쌀 품질의 표준화·등급화사업 등을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쌀의 해외수출촉진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쌀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쌀 생산농가가 직접 이 협회의 회원이 될 수는 없으나 회원업체의 상당수가 농협계열이어서 이들 미곡농협을 통해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함. 농협계열의 회원으로는 “라이스 랜드”, “캘리포니아 쌀 생산자협동조합” 등 56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미곡농협이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약 50%를 취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캘로스”(Calrose : California rose의 약칭) 쌀로 유명한 “피르미社” 등 일반 도정업체들을 포함하면 미국 쌀 생산량의 90% 이상을 RMA 회원사가 장악하고 있어 쌀 산업에 관한 대정부 로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RMA가 쌀 시장 개방 압력단체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9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일본을 미 통상법 제301조에 의거 제소하면서부터였음.

Rio Declaration(리우선언)

1992년 6월 브라질 이루데자네이로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는지 20년만에 지구인의 행동강령으로서 150여 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Risk Assessment(위험평가)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제5조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동·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평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기타 처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R/O(Request & Offer System,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국제적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양허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끼리 관심있는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나 개방정도를 협상하는 방식.

Rollback(규제철폐)

GATT에서 말하는 Rollback은 GATT에 위배되는 현존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에 일치시키는 것(Phasing out or bring into conformity with GATT of existing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agreement)을 의미하고 있음. 광의로 해석할 때 Rollback은 이미 GATT가 성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ATT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관세의 완전철폐에 있으며, 이미 7차에 걸친 다자간협상에서 관세인하협상이 있어 왔기 때문임. 반면 협의로 해석할 때는 동경라운드 때부터 Rollback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음. 즉, 동경라운드 이전까지 행해진 6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결과 관세에 의한 장벽은 거의 소멸된 반면, 각종 비관세적인 규제조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거래가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음. 그 결과 동경라운드 협상에서는 수량제한소그룹(QR-sub-group)이 설치되어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협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결과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실질적인 Rollback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80년대 접어들면서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82년 GATT각료선언은 GATT위배 조치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Refrain from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를 포함함으로써 Rollback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음. 제네바에서 8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나타난 선·개도국이 보는 Rollback입장은, 선진국은 Rollback을 “모든 무역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제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후진국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GATT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수입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Rollback으로 간주하면서 선진국만이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개념의 도입으로 맞서왔음. 일반적으로는 늦어도 UR 협상종료시까지 합의된 시한내에 GATT와 불일치하는 무역상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함.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유사한 용어로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Rules of Origin(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의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원산지규정 자체가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

며 또한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행 등이 공정, 투명, 예측 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존 GATT협정 제9조는 원산지 표시문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용증가효과 등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본래의 원산지 규정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국제협약으로서 관세협력이사회(CCC)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특별한 원칙 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D1),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원산지 증명서 관리에 관한 부속서(D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산지 규정상의 주요기준으로 ① 완전생산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 변형의 원칙적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주요 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이 있음. 그러나, 동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는 20여개국에 지나지 않고 미국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성이 약함. UR협상과정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지역주의 확대로 말미암아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해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조화로운 원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료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요규정은 향후 각국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특혜 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0. 5월 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중 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 부속서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과거에는 수출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 발급제도에 치중하였으나 '91.7월 유통시장 개방이후 수입질서 내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수입선다변화 제도에서도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94년 WTO 원산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통일원산지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S

Safety net(소득 안전망)

소득안전망(Safety Net)이란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로서, 예기치 못한 소득·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보호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말함. 미국은 지난 98년 이래 농산물 가격추세의 하락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자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에 농가 안전망 법안 도입이나 연방 작물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담보융자, 작물소득보험, 재해지원, 정부재고조절, 생산자 재고보조, 농가신용, 세제지원 및 민간 위험관리 수단 등이 ‘안전망’의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S

SAB(Standing Appellate Body, 상설상소기구)

WTO분쟁절차상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DSB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됨.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따라 한사건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됨.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따라 한사건에 3인씩 교대로 상소업무를 담당함.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1

회에 한해 재지명될 수 있음. 구성원은 법률과 국제무역 및 협정상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어떠한 개별 국가의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 5개국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and Swaziland 등 5개국임.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업계간 자유통매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타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유통사업단의 개입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상담·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ion Agreement,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한국과 멕시코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mic Complementa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04년 10월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06년말 타결목표로 함

※ SECA는 모든 상품부문을 협상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FTA와 상이하나 협상 여부에 따라 FTA와 유사한 효과 도출 가능

Section 201(미통상법 201조)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Section 22 waiver(22조 면제)

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Section 301 (미통상법 301조)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하는데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USTR, 즉 미 무역대표부를 관장기관으로 하는 제301조가 '1974년 통상법'의 제정시 신설되었음.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미 통상법 제301조는 WTO체제라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대표적인 국내입법이므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

Sectoral approach(분야별 접근방법)

분야별 관세철폐와 유사한 개념. DDA NAMA 협상에서는 모든 업종별로 동일하게 감축하는 관세감축 공식 외에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무세화), 관세를 낮추어 각국의 관세를 비슷하게 하는(관세조화)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중임.

Selectivity(선별성)

무역조치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 비차별적으로(MFN 대우)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또는 몇 나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취하여 지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제한된 소수의 수출국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이것이 수입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이 국가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Sensitive products(민감품목)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율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 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Serious Prejudice(심각한 손상)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르면 일반이 총가대비 5%를 초과하는 보조금지급, 특정산업 또는 기업의 영업손실보조, 직접적인 채무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국(제3국)에서 수입대체(수출감소), 보조품목의 가격하락, 시장점유율 변화 등 사항 발생시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대응조치가 가능함.

SG(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WTO 양허관세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선진 수입국들은 종전 GATT체제 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요건이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하고 수출자율규제(VER), 시장 질서유지협정(OMA) 등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선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선호하였음. 이런 조치들은 GATT 체제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우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위협하였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색조치를 GATT 규범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동경라운드('73-'79)시 본격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타결에 실패하였으나 UR협상에서는 SG조치의 발동을 쉽게 하는 대신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하였음. 섬유류의 경우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간동안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의 별도의 SG규정을 설정하였음.

< WTO 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

UR 분야별	SG 협정	섬유·의류협정	농산물협정
명칭	Safeguard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대상품목	제한없음	GATT 미복귀품목(규제품목 제외)	관세화대상 농산물 (아국:보리 등 118개)
제도의 존속기간	무차별 발동(수량제한시 수입급증 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가능)	국가별 발동	무차별 발동
발도요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발생 또는 우려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발생 또는 실질적 우려시	물량이나 가격이 발동 기준 초과 · 수입물량이 시장접근 기회((10%이하, 30%초과)를 초과한 경우(각각 125%, 110%, 105%) · 수입가격이 '86-'88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절차	SG 위원회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사전 보상협의(최초 3년간 보복면제)	TMB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규제수준 사전 협의(미합의시 TMB의 권고)	농업위원회 조치 10일 이내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적용조건 협의(보복면제)
조치수단	관세율조정 및 예외적 수량제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조치 존속기간	4년 이내 피해구제필요기간(8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없이 3년간 또는 당해품목의 GATT복귀 시점중 먼저 도래 시까지	-물량기준 : 당해년도말 -가격기준시: 별도제한없음
조치 한도	관세율 조정 : 피해구제 범위내	최근 1년간 수입량 보장(초년도 수준을 매년 6%증량)	-물량기준 : 당해년도 관세의 1/3범위내 추가 -가격기준:하락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Set-aside Program(휴경제도)

곡물생산자들의 과거 기준면적중 일정 비율을 현행 생산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EU의 프로그램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휴경율은 프로그램 실시기간동안 매년 조정됨.

Singapore Issues(싱가폴 이슈)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을 지칭.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이들 주제들이 무역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붙여진 이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동 이슈들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04년 7월 패키지에서 4개 이슈중 무역원활화만 DD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Single Undertaking(일괄타결원칙)

UR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WTO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우루과이라운드가 7년반의 협상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자간 무역협상은 장기간의 협상시간을 필요로 함. 일괄협상은 광범위한 범위의 협상에서 개별 참가국에게 자국의 이익추구와 이익의 안전보장을 할수 있고, 다른 의제들과의 trade-off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타결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 특히, 일괄타결방식은 경제적인 측면만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국내 정치여건상 만들어내기 어려운 특정분야의 양허를 일괄협상에 의하면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임.

Sliding scale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해서 G10(한국, 일본 등 수입국그룹)이 주장하는 것으로, 민감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감축하고 저율관세쿼타(TRQ)를 증량하는 방식을 말함. 즉, 관세감축이 커지면 저율관세쿼타 증량이 작아지고, 관세감축이 작아지면 수입쿼타 증량이 커지는 방식을 의미함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

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 또는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임.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임. 그런데 한·미 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함.

SOM(Senior Officer's Meeting, 고위급회의)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를 위해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연4~5회 개최되는 APEC의 실질적 핵심운영기관임.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및 10개의 Working Groups의 진전현황, 각료회의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신규 회원국 가입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APEC 활동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면서 주요 결정사항은 각료회의에 상정함.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 고위간부가 수석대표이고, 의장은 주최국의 고위간부가 됨.

SP(Special Product, 특별품목)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로 관세인하를 최소화하고 수입쿼타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농산물 품목

Spaghetti-bowl effect(스파게티 접시 효과)

FTA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ia) 교수가 사용한 용어. 예컨대, 각 FTA에서 다른 원산지규정을 사용함으로써, FTA를 하나 이상 가입한 국가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고, 수출입 기업도 상이한 규정에 적용받는 애로사항 발생

Special 301(스페셜 301조)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조항임. 이에 의하면 USTR은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나 또는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미국인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제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 301조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이 보통 12개월임에 비하여 스페셜 301조는 이를 6월로 하는 신속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special treatment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 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 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

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특별대우)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조치를 뜻함.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 개도국에게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Specialty(특정성)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이 됨(금지 보조금인 경우에는 특정성은 자동으로 인정).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조금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기업으로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의 수혜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또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수, 각 기업에 배정된 금액 및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pecific Duty(종량세)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

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국제가격	증가세(100%)		종량세(1,000원/kg)	
	관 세	수입원가	관 세	수입원가
1,000(원/kg)	1,000	2,000	1,000	2,000
500원(원/kg)	500	1,000	1,000	1,500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증가세(Ad Valorem duty)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Specificity(특정성)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을 한정하거나 불공평하게 금액을 할당하는 경우, 특정지역내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이 부과되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다. 특정성이 없는 경우는 허용보조금의 요건이 됨.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

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SSG(Special Safeguard,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UR협정에 의해 당시 수입제한품목들은 모두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의해 국내외가격차로 개방하였음. 따라서 개방에 의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한 피해구제제도임. 대상품목은 UR협정당시 관세화로 개방한 농산물 중 각국의 C/S에 명기한 품목으로 국한되며 발동요건 충족시 산업피해 조사없이 자동발동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는 118개 품목이 대상 품목임.

SSM(Special Safeguard Measure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농촌개발·생계유지를 위해 개방에 의해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새로운 긴급수입제한제도를 지정할 수 있음

Standing Committee(상설위원회)

WTO의 상설위원회에는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예산·행정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있음.

Standstill(규제동결)

원래 GATT상 Standstill은 모든 회원국이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Obligation not to introduce trade restrictive measures not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agreement)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1947년 GATT가 설립된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은 GATT에 위배되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 왔음. GATT에서 최초로 Standstill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분야는 보조금 분야임. 즉, GATT체약국은 GATT가입당시 1958년 1월부터 1차산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했음.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 체약국들은 이러한 보조금 철폐약속을 1957년 11월 30일 개최된 GATT총회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함과 더불어 1955년 1월에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소위 Standstill(규제 현수준 동결)을 약속하게 되었음. 이처럼 보조금 분야에서부터 제기된 Standstill은 GATT회원국간 새로운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되면서 모든 무역분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음. Standstill의 확대적용은 1960년 GATT의 제5차 무역협상인 Dillon라운드 당시 협상지침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GATT에 위배되는 관세 및 기타 보호조치의 증가를 중지하는 것(Shall refrain from increasing tariff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general agreement)”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Dillon라운드 협상기간중 Standstill은 하나의 협상원칙이 되었음. 한편 이러한 Standstill원칙은 GATT 제6차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었는데, 케네디라운드 협상계획에 관한 1963년 5월 21일자 각료선언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출에 반하는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인정할 수 없다(No new tariff or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rect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against the export trade of any less

developed country)"라 명시했음. 이러한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원칙은 70년대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미 관세양허가 이루어졌으며 관세에 의한 규제수단보다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규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Standstill없이 막바로 「수량제한의 철폐」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제거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임.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시 이러한 구상은 계속되는 보호주의 추세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80년대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Standstill이 대두되었음. 82년 GATT 각료선언은 Standstill을 GATT가 취해야 할 중요 행동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tandstill을 "GATT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Undertake to refrain from tak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 and to make determined efforts to avoid measures which would limit or distort international trade)"로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음. 이같은 정의 아래 개도국은 뉴라운드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협상의 대상으로서 Standstill원칙의 적용이 선·개도국 모두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선·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고위실무회담(Senior Officials Meeting)과 86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의장은 Standstill을 "현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Preventing deterioration of an existing situation)"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한편 86년 9월 말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신국제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시에 협상기간중 Standstill 및 Rollback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참가국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의 감독을 위해 GATT무역협상위원회에 다자간 특별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음.

State Trading(국영무역)

일반적으로 국영무역이란 국가기간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국영무역 기업은 세계 여러나라에 존재하며 특히 농업분야에 다수가 존재함. UR협정에서는 국영무역기업을 “수입 또는 수출방향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독점적이거나 특별한 권리, 특권 등이 허용된 정부기업과 비정부기업으로 정의” 원래 GATT 17조에는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잘 준수되지 않아 UR협상을 통해 국영무역기업의 정의, 통보의무 및 역통보 등 그 운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작업반을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국영무역 기업활동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WTO협상에서 국영무역이 논의되는 배경은 독점적 또는 특별한 권리와 특권(exclusive or special rights and privileges)를 가진 시장지배력을 통해 시장접근을 막고, 수출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무역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때문임. 그러나 국영무역제도는 GATT체제 출범과 함께 오랜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합법적인 제도임. 국영무역은 수입물량의 일괄적인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국내유통질서 및 수급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의 일반적인 관리에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음. 현재 WTO협정상 수입국영무역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매우 투명하게 운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국영무역에 관한 규범체계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등 19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겠다고 UR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 GATT 17조 참조

State Trading Enterprise(국영무역기업)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매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S에 근거하여 당초 쌀, 쇠고기등 19개 품목의 관세쿼타 물량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협중앙회등 8개 기관을 국영무역기업으로 WTO에 통보하고 운영하여 있으나, '98. 1월부터 실크가 실수요자추천으로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등 17개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1995년과 1996년에 WTO에 보고된 가장 큰 수출국영무역기업은 캐나다 밀 위원회, 뉴질랜드 낙농위원회, 호주 밀 위원회 및 퀸즐랜드 설탕공사 등임. 1992년과 1999년 사이에 4개의 대형 국영무역기업들은 각기 매년 9억 달러이상의 대표상품을 수출했다. 기타 수출국영무역기업들은 곡물, 낙농제품, 육류, 설탕, 과일 및 채소를 수출했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남아공화국은 다수의 유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호주는 보리, 설탕, 밀, 쌀과 같은 상품에 대한 유통위원회를 보유하고 캐나다는 곡물, 낙농제품, 맥주, 포도주, 증류주에 대해 유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유통위원회는 국내유통 및 무역권한을 축소시켜 왔을지라도 육류, 유제품 및 광범위한 범위의 원예제품을 유통시켜왔음. 남아공화국은 1996-1997년에 많은 유통위원회를 해체했고 1997년 7월에 수출보조금제도를 종료했음. 남아공화국의 가장 큰 유통국들에 의해 마케팅되는 품목에는 사과, 포도, 감귤류, 옥수수 등이 있음. WTO 회원국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수입국영무역기업은 일본 식량국과 인도네시아의 BULOG임. 두 기업은 1993-1995 동안 매년 평균 10억불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했음. 일본 식량국은 가장 큰 일본농업관련 국영무역기업이다. 반면 일본에 기타 국영무역기업들은 담배, 비단, 몇몇 낙농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함. 1967년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BULOG은 1993-1995년 동안에 여러 개의 농산물 수입, 쌀 수출과 수입상품에 대한 유통 및 가공을 관리, 국내 쌀 생산량 수매 및 재고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 1998년 BULOG의 독점거래 권한을 폐지하였지만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동안에 그 기관은 농산물을 수매, 재고관리 및 쌀 수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말레이시아(쌀), 필리핀(쌀, 옥수수) 및 태국(감자, 차, 담배) 역시 주요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Structural Fund(구조조정 기금)

EU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의 전직, 전업지원, 산업의 구조조정, 빈부격차 해소,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U가 조성한 기금

Subsidy(보조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금의 개념은 “특정사업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단체, 사적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 정의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됨. 그러나 WTO 제협정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이와 같은 정부재정의 이전적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규정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규율한 농업협정,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으며, 이들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다음의 경우 WTO 규율대상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①. 특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금지 보조금) : 부속서 1에 예시된 수출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②. 다음의 지원이 동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성을 띠고 지원되는 보조금(상계조치 가능보조금) :
 - i)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책임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에 예시된 3가지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 ii) GATT 1994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 ③. ②항에 제시된 보조금이 존재하나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은 있으나 협정 제8조 2항에 제시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낙후 지역 지원 등은 허용됨(허용보조금)

둘째, 농업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보조(Export subsidy)로 분류하고 국내보조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 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조치로서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 조치(Revenue forgone)를 포함함. 수출보조는 직접적인 수출보조 등 6가지 유형(제9조 1항)의 감축대상보조와 이를 우회하는 여타 수출보조로 보조형태를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은 지원 조치인가의 여부는 지원목적, 대상자, 기대효과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임.

셋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구체적인 보조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15조에서 특정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WTO 서비스교역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Sunset Clause(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덤핑관세가 종료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부과일이나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음.

Super 301 (슈퍼 301조)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을 근거로 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1988년 종합통상법이 새로이 도입한 절차. 이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따라서 슈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즉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에 대해서 슈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Surveillance Body(감시기관)

GATT 동경(Tokyo)라운드 등에 의거 체약국단이 채택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관련된 일국의 무역정책 및 현상유지, 점진적 철폐약속을 감시하는 GATT상의 기관으로 1986년에 설립.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인간의 구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이사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음.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 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Swap Transaction(스왑거래)

외환시장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환매매 당사자가 현물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동일 금액의 선물환 매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Swap Agreement(상호교환협정)

환율안정을 위해 2개국 중앙은행간 체결되는 통화의 상호교환협정으로 각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서로 바뀌어 예치되어 차관도입이라는 형식없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게 됨.

Swiss Formula(스위스 공식)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 GATT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도쿄라운드(1973~79년)에서 스위스가 제안하여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된 방식임.

$T = t \cdot a / (t + a)$ T:공식적용 후 세율, t:공식적용 전 세율, a: 관세율 상한
2000.1월 개시된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고율관세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공식과 같은 공식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a가 상수가 아닌 각국의 평균관세율을 반영하는 공식은 지라르 (Girard) 공식 또는 ABI(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공식이라고 불림

T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조정 지원조치)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막기 보다는 보상(Compensation)원칙에 따라 그 피해자나 피해계층이 시장 개방에 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 전업지원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미국 연방 무역법에 관련 규정이 명되어 있음

Tariff(관세)

상품의 수입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말하며, 종가세(가액의 백분율), 또는 종량세(예:100kg당 10원)로 부과됨. 관세의 기능으로는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보호로 나눌 수 있음.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높은 관세부과를 통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하지만 세계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상을 GATT출범 이후 여러번 해왔음. UR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농산물·공산품·수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수입제한·보조금지급·검사·과세·통관 등)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① 농산물과 ② 공산품·수산물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농산물은 시장개방(수입제한품목의 관세화), 국내 및 수출보조금의 축소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품·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 동일일화(관세조화) 등 관세인하에 중

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관세 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함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평균 36%이상,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10년 동안에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이상 감축하도록 하였음.

Tariff Binding(관세양허)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단 양허한 관세는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없이는 인상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양허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 수반됨. GATT 2조는 관세양허(표)와 관련된 규정이고, 28조는 양허표의 수정에 관한 규정임.

Tariff Concession(관세양허)

GATT 협정에서 체약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세양허이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으로 이 약속은 해당국가의 양허표(schedule)에 나타나 있음. 이때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한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은

- ① 현행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 ② 현행세율을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Binding)
- ③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 한계점(Ceiling)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세율보다 관세율 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는 없음. 일단 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관세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관세체계에 수용될 때 이를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세라고 함. 관세양허는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양허표는 GATT 제2조 7항에 의하여 GATT협정의 일부가 됨. 관세양허에는 자국이 어떤 품목을 양허할 것인가와 양허품목의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양허대상에는 일반적인 수입관세 외에도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세 및 과징금도 포함함. 양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허의 수정 및 철회를 하고자하는 국가는 주요국과 수정이나 철회의 보상조치를 교섭하여 합의하고, 또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와도 협의를 거쳐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Tariff Binding, Ceiling Binding 참조

Tariff Dispersion(관세격차)

관세격차 문제는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로서 국가별, 품목군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일반적으로 산업보호적 관세율체계를 유지할수록, 국별로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큰 품목일수록 세 번이 세분화되고 품목군 내에서도 관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별로 가장 높은 관세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군은 곡물류로서 우리나라는 곡물류와 전분에 대하여 수백%의 양허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0%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어느품목의 세 번을 얼마나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바, 세분화할수록 관세목적에 부합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치즈(HS 0406)의 경우 미국은 156개, EU는 50개, 일본 10개, 한국 5개의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에 가금육(HS 0207)의 경우는 한국이 33개, 미국 19개로 분류하고 있음.

Tariff Escalation(가공단계별 관세율상승)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나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 협상에서 자원수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공단계별 관세율 상승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누진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보호무역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Tariffication(관세화)

관세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 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Tariff harmonization(관세조화)

회원국의 관세를 일정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여 분야별 관세조화를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하고, 스위스 공식을 통해 모든 국가의 모든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수렴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Tariff Heading(세번)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의 번호로서 6단위에서 10단위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음. HS의 골격은 품목표 전체의 분류방침에 관한 통칙(GRI)과 21부(section), 97류(chapter), 1241호(heading), 5,013소호(6단위 소호)의 4차원과 주(註)로 구성됨.

Tariff Increase(관세인상)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특정상품의 수입을 규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GATT에 양허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나, 양허된 품목의 경우는 safeguard나 당초 관세인하 교섭 상대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인상할 수 있음.

tariff line(관세품목)

관세율표상 분류된 품목

Tariff-jumping Investment(관세회피 투자)

고관세 장벽이나 기타 국경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타국가의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행위.

Tariff Peak(고관세)

High tariff라고도 하며,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Tariff Peak and Valley(불균등 관세)

품목별 관세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1995년도 현재 25% 수준이나 쇠고기,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40%를 상회하는 반면 오일종자, 채소 등은 무관세인 소위 품목별 불균형 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Tariff Rate Quota(관세할당제도)

※ TRQ 참조

Tariff Reduction(관세인하)

GATT는 주기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억제하여 자유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GATT의 중요목표가 관세인하이므로 GATT설립이후 다자간

협상들은 주로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이 주가 되었었음. 관세인하협상은 상호주의를 토대로 국가간에 이익의 상호교환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관세인하 협상방식은 품목별 협상방식(Request-Offer)과 선형인하방식(Linear Tariff Reduction)에 의한 협상방식이 있음. 품목별 협상방식은 GATT의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일반관세인하 협상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케네디라운드나 동경라운드에서도 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품목별 협상방식은 수많은 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큰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음.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은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어느 두 국가간의 협상결과가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다른 회원국가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선형인하방식은 협상참가국이 대상품목에 대해선 기존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삭감하는 방식이며 짧은 시간에 많은 인하를 할 수 있으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세율이 같은 비율로 삭감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은 국가, 높은 상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상태로 남는 단점도 있음.

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EC 설립조약 113조 및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3286/94에 근거한 EU의 주요 통상법.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었음. 일반적으로 EU판 super 301조라 간주되나, 미국의 301조가 국제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데 비해 EU의 조치는 필요시 WTO분쟁해결절차를 거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함.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를 정하는 것으로서 강제성 여부에 따라 표준(standards : 비강제적),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강제적) 2가지로 분류함(제1조).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란 어떤 상품이 표준과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인증(Certification)과, 시험·검사(Testing & inspection)가 주요 분야임. TBT는 동경라운드 MTN Code 중의 하나였으나 TBT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기술장벽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UR협상의 결과 WTO체제로 이관되었음. 동경라운드에 따른 TBT Code는 80.1.1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80.10.2 가입하였음. 한편, TBT협정의 적용 예외로서 ①인간·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②안전, ③환경보전 ④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명세인 강제규범분야(normative practice areas)가 인정되고 있음.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서비스는 제외)에 적용됨.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새로이 출범하는 SPS협정이 적용되는 부문은 TBT협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조달 관련도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에 따름.

TCE/TDE (Trade Creation Effects, Trade Diversion Effects, 무역 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

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 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TDE(Trade Distortion Equivalent, 무역왜곡상당치)

1989년 UR중간평가시에 농업보호를 위한 총량추정치(AMS)를 계산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PSE(생산자 지원상당치)방식으로 모든 가격지지 및 소득지지정책을 통해 지원된 농업보조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Cairns Group중 캐나다에서 주로 주장한 것으로 그 내용은 미국과 유사하나 PSE가운데서 무역왜곡적인 조치만을 고려하자는 일종의 수정된 PSE개념을 말함.

TE(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하며, $TE = (\text{국내가격} - \text{국제가격}) / \text{국제가격} \times 100(\%)$ 식으로 계산.

Third Party(제 3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분쟁당사국 이외의 제 3국이 협의참여를 희망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보하여야 함. 제 3

국은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참여가 가능하며 협의참여요청이 기각될 경우, 제 3국은 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분쟁당사국 및 분쟁사안과 관련된 기타 협정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패널에서 제기된 조치가 관련협정하에서 제 3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해당국은 본 양해하의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기존의 패널에 회부됨.

Technical Regulation(기술규정)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강제규범을 의미함. TBT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과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임. 또한 물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데 따라 용어, 기호, 표시 또는 분류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들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음.

Technical Barriers(기술장벽)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하며, 무역에서 주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써 무역 상대국간에서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예를 들어, EC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장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출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 제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술장벽이 되며, 또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과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됨.

Tiered Formula(구간 공식)

DDA 협상에서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 감축방식으로 관세율에 따라서 정해진 구간에 배치를 한 후 구간별 감축률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높은 구간에 해당할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Threshold(구간 경계)

DDA협상에서 구간 공식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에서의 구간별 경계

TMB(Textile Monitoring Body, 섬유감시기구)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의 목적수행을 위해 상품교역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협정이행의 감시, 각국의 조치의 협정에의 일치여부 검토, 분쟁해결 등을 그 목적으로 하며 1명의 의장과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됨.

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 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UR협상시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관으로 UR협상시 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나누었음.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하였음.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음.

Tokyu Round (동경라운드)

GATT의 7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02개국이 참여하였음. 1973년 9월 동경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데 유래함.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통상증진권한)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됨.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음.

Total AMS(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총보조총액측정치)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규정에서는 산업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금지되느냐 또는 상계조치 대상이 되느냐가 검토되지만 농업협정은 농업보조의 계량화를 통하여 감축해 나가야 하므로 보조효과의 계량화가 협정이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다양한 정부지원효과가 단일의 수치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지원정책과 지원방법에 따라 보조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음. WTO 농업협정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해서 보조금감축 기준설정, 이행평가, 또는 감축의무면제 수준의 결정 등을 위해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EMS (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및 Total AMS라는 보조금 계량화 방법을 마련하였음. Total AMS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대상보조액과 모든 품목불특정적인 감축대상

보조액,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보조상당액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동 총감축대상보조액은,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즉, 기준 총보조총액측정치(Base Total AMS), 이행기간중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이행기간 중의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는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됨. Total AMS의 산출은 품목특정적 보조(Product-Specific AMS) 및 보조상당액(EMS)이 선진국은 당해년도 품목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품목의 AMS와 품목별 특정 보조가 당해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품목별특정 보조를 합산한 것이 Total AMS임. 이 Total AMS가 당해 국가의 국내보조 감축의무의 표시이며 양허표에 명시되고, 매년도 보조이행 실적의 점검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감축대상 품목특정적 보조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 보조금의 감축은 이 Total AMS 범위내에서 '92 유통년도 보조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신축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폭을 달리 할 수 있음.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

WTO협정상 TPRM(무역정책검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WTO가 과거의 GATT기능과 다른점은 WTO내에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 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89년 이후 시행중임. TPRM은 '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국 제도의 명료성을 강화하고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TPRM의 결과가 특정 GATT규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음.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TPRM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름. 즉, 4대 교역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은 매2년을 주기로, 그 다음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검토를 시행함. 여타 회원국은 매6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나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어느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변경되어 교역상대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요청에 따라 차기 TPRM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음.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① 검토대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②WTO사무국이 작성한 별도 보고서의 두 보고서를 기본검토자료로 하여 시행함. TPRB에서의 논의주제는 TPRM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들임. 우리나라에 대한 1차 TPRM은 1992년 7월 8일~9일에 스위스 제네바 GATT에서 40여개 회원국의 참가하에 특별이사회 형식으로 실시되었음. 당시 TPRM 회의시 외국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은 8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개방화 정책이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역규모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 분야별 개선과제로서 복잡한 관세체계, 위생 및 검역기준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저해,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특정국가만을 차별우대하는 통상관행이 존재, 농업분야의 과보호 등을 지적하였음. 2000년 9월에 실시될 TPRM은 '92년, '9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무역정책 운영상 개선실적 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성격을 띤.

Trade Act of 1974(1974년 미국 통상법)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Special 301조는 다음과 같이 비교됨.

□ 법적 근거

- 통상법 301조 : 1974년 통상법(Trade Act)
- 슈퍼 301조, Special 301조: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 통상법에 의거 대통령에게 위임된 “행정명령”으로 결정시행

□ 발동 요건

- 통상법 301조 : 상대국의 구체적인 불공정 통상관행 대상
 - 통상협정상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관행, 행위, 부당한 관행, 행위, 불합리한 관행, 차별적인 관행
- 슈퍼 301조 : 일반적인 불공정 통상관행을 전반 대상
 - 무역분야에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공정 관행, 간접적인 무역장벽 및 무역수지관리를 위한 정부의 환율개입 경우 등 전반적 사항
- Special 301조 : 지적재산권분야의 불공정관행 대상

□ 운용 절차

- 1974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반적 절차는 ①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청원의 제출, ②조사개시결정, ③상대국과의 협의, ④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 ⑤보복조치의 결정, ⑥보복조치의 시행 순으로 진행
- 일반 301조에서는 USTR 재량 또는 이해당사자(업계 등)가 제기한 청원을 검토한 후 USTR의 재량에 의해 조사를 개시하는데 비해, 슈퍼 301조 절차에서는 PFCP(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강제성 부과

□ 조치 시한

- 통상법 301조(Regular 301)

- 관련 업계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청원의 제출
- USTR의 조사개시 결정 및 상대국과의 협의
 - USTR은 조사개시 결정 즉시 협상을 요청하되, 협상기간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상개시후 5개월 또는 협정에서 정한 협상기간의 종료 중 빠른 기간이내 불공정관행 조사개시
- 조사개시후 보복조치 결정
 - 수출보조금 관련사항은 7개월, 통상협정관련 건은 18개월, 기타의 경우 12개월, 수출육성정책은 6개월이내 결정
- 보복조치 시행
 - 조사기간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로 하되, 청원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USTR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80일까지 조치 시행기간 연장가능

○ 슈퍼 301조 (Special 301조도 유사)

- 대상국 선정
 - USTR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의회 제출(시한: 매년 3.31)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의회에 보고(시한: 매년 4.30- NTE 보고서 발표후 1개월이내,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관행(PFCP),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가능관행(감시대상관행), 기타관행 지정
- 상대국과 협의
 - PECP 등 지정에 관한 의회보고 후 21일 이내에,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해 해당국 정부와 90일에 걸쳐 협의
- 조사개시후 보복조치 결정
 - WTO관행일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감안 18개월, 차별적인 정부 조달관행일 경우 6개월, 기타 불공정관행의 경우 12개월 이내 보복조치 결정
- 보복조치 시행

- 조사기간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보복조치
- 슈퍼 301조 유효기간
- 3년간(1999-2001) 한시적 운영

Trade facilitation(무역원활화)

상품의 국경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중 하나로 2004년 8.1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DDA 협상 분야의 하나가 됨.

Trade remedies(무역구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Trade-chilling effect(무역냉각효과)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Trade creation(무역창출)

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잠정세이프가드)

WTO ATC 하에서 협정대상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

Transparency(투명성·공개주의)

무역정책, 관행 및 이들이 수립되는 과정의 공개. 예측가능성을 말하며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명료하게 공개, 공표되거나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WTO의 일반적 원칙을 말함.

Treaty of Rome(로마조약)

1957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 등의 유럽 6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본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됨.

Trigger Level(발동수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Base trigger level)에 과거 3개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량에 최근년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됨.

Trigger Price(발동가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품목별 CIF 수입가격이 발동기준가격(참조가격 : '86~88간 평균 CIF 수입가)의 90%를 하회할 경우 가격차별로 가격차의 30~90% 누진관세로 부과됨.

TRIM(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무역관련 투자 조치)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혹은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나 유인(incentive)을 말함.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내 무역의 비중이 증대하는 등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

됨으로써 이에 관한 적절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UR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철폐를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주권국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할 것과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TRIMs 협정은 상품무역(Trade in Goods)과 직접 관련된 투자조치에 적용됨. 따라서 서비스무역 관련 투자조치는 GATS 에서 관할하며, 무역과 무관한 투자조치는 TRIMs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본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 관련 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위의 통고된 조치를 WTO협정 발효후 선진국은 2년이내, 개도국은 5년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WTO 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상품교역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수정을 제안하기로 함. WTO/TRIMs협정의 발효로 상품교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①수출의무 ② 국산부품 사용의무 ③ 외환수지·무역수지 균형의무 등이 금지되었으나 선진국이 금지를 주장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도국이 주장한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규제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본 협정에서는 향후 수정·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 OECD, APEC 등에서 보다 강화된 TRIMs 관련 규범 제정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94.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문제를 자유화의 진전과 다자간 체제의 강화를 위한 향후 작업부문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설립을 위해 5개의 Working Group 작업 진행중이며, '94. 11월 APEC에서는 비구속적 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에 합의함으로써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94. 7월 G-7 회의에서도 무역·투자문제 등 4개 의제의 논의진전 상황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기로 합의하였음.

TRIP(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새로운 제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 때 비로써 권리화가 가능함.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갖게되고 지적재산권자는 법적으로 배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법체계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분야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창작보호 및 공정경쟁 보호로 나누어 짐.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하고,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신생물 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있음. UR협상 과정에 있어 지적재산권(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교역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IPR 보호를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됨. 그러나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IPR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IPR을 협상분야로 채택하여 IPR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고 위조상품의 국제 교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을 개발하게 되었음. WTO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으로서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기존의 국제협약의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Tropical Products(열대산품)

천연 및 가공상태에 있는 다음 일곱 그룹의 상품들은 열대산품에 대한

협상의 기초를 구성함. 열대음료(커피, 차, 코코아); 향료, 꽃 및 식물, 특정유지증자; 야채오일 및 오일케익(예:야자 및 코코넛 오일); 담배, 쌀 및 열대뿌리(예:마니옥); 열대과일 및 견과(예:바나나, 오렌지 및 파인애플); 열대목재 및 고무, 황마(jute) 및 마섬유, 그러나 이 목록은 유연하게 해석됨. 예컨대 쌀은 특정 쌀생산국에서는 열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

TRQ (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쿼터)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제도임. 우리나라는 UR협상 결과 보리,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음. 관세할당제도는 UR협상 당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수출국들에게 현행 혹은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와 같은 수입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성립된 수출입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TRQ제도는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에 비해 무역흐름을 덜 왜곡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량제한 조치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라는 측면에서 선호됨.

TSE (Total Support Estimate, 총지지추정치)

정책의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 농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농업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납세자 및 소비자로부터의 농가에 대한 모든 이전의 연간화폐가치 지표임.

* $TSE = PSE(\text{생산자지지추정치}) + CSE(\text{중 납세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이전})$

+GSSE(연구개발비, 하부구조 시설비등 일반서비스지추정치)

* %TSE=TSE/GDP

TSG(Transitional Safeguard,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피해 구제조치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수출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품목의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으로 나눈 값. -1에서 1까지 값으로 표시되며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1로 갈수록 수출 특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U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 각국은 그동안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저하로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태동되게 되었음. '73년에는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을 시초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되었고, '72년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82년 □□세계자연헌장□□ 제정 및 '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및 "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인류공영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제창, '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구성, '84년 세계자연환경장제정, '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인간환경선언 채택 20주년이 되는 '92년 환경개발회의를 소집키로 결의하게 되었음. 지구환경문제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 및 영향은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각 국가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 협조체계(Global partnership)가 필요함. '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상간 리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고,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감대를 구축하게 되었음.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을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에너지, 토지,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여성, 교육 등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규범으로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사항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리우선언□□ 및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감시하기 위해 지속개발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화석연료 사용규제 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선언□□을 채택하였음. 리우 무역환경개발회의 이후 미국·EU 등 선진국의 환경중시 정책과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OECD·GATT·UNCTAD 등 국제기구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GATT 자유무역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각국의 「의제 21」 추진 상황을 평가·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1950년대 중반부터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공업화 된 선진국과의 현격한 경제격차를 인식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들은 이를 국제문제화 하기 시작하였음. 저개발국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남북간 격차해소문제에 대해 GATT에 건의하였으나 GATT의 대응이 미온적인 결과, 저개발국들의 무역확대문제는 UN의 주관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저개발국 대표들은 1962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국제무역회의개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저개발국들의 건의와 선진국들의 동의를 얻어 준비위원회를 구성, 3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끝에 예비취 (prebish) 보고서를 발표하고, 1964년 3월 전세계 120여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N 무역개발회의(UNCTAD)를 개최, 동년 12월 개최된 UN 총회에서 항구적인 상설기구로 설립되었음. UNCTAD의 설립목적은 국제사회의 경제발전과 특히 개발도상국 무역의 확대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상의 문제의 종합적 검토이며, 우리나라는 1965년 1월 가입하였음.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1972. 6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전담 기구의 설립을 결의함에 따라 1972. 12월 제27차 UN총회 결의에 의거 설립되었음. UNEP는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촉진과 권고, 환경관계 유엔활동의 방향설정 및 조정에 관한 정책지침제공, 환경보호에 관해

각국 정부에 조언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6. 12월 UNEP 아시아지역 관리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음.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이는 이상기후·해수면 상승·인체건강 등 생태계와 경제·사회면에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는 바, 이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s, CFCs, SF₆ 등)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고,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임. '92. 5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02.6월 현재 186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3.12월에 가입함. '97.12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는 바,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을 합의함(2008~2012년간 '90년대비 평균 5.2% 감축).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으로서,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1968년부터 보호업무가 개시되었으며, 최근인 1991년에 조약을 개정하여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시켰음.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5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 1월 회원국으로 가입함.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함.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제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음.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함. 여러 차례의 GATT 라운드 중에서 가장 폭넓은 주제가 논의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 비관세 조치, 우선 분야인 열대산품, 천연자원 상품, 섬유 및 의류 GATT 조항들에 대한 검토, 긴급수입제한, 동경라운드 협정 및 협약, 보조금 상계조치, 분쟁해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GATT체제 기능 효율화(FOGS :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등이 논의되었음. 각 주제는 목적별로 구분, 설치된 협상 그룹이 관리함. 당시 GATT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의 GATT 편입에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따라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추진하도록 함. 각료회의에서는 동 협상을 4년 내에 종결짓기로 합의함. 협상은 ①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협상개시 시점으로부터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중간검토 기간, ② 1990년 12월 브라셀 각료회의시까지 기간, ③ 마라케쉬 각료회의 등 3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2차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3년 12월 15일 실질적으로 협상이 종결됨.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가진 라운드였음.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된 성과는 가중평균 관세의 38% 인하, 농산물 교역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GATT체제로 편입시킨 농업협정의 타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채택,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설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재확인, 15개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등임. 기타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 규정

강화 등의 성과를 들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다섬유협정을 대체함으로써 동 분야를 GATT 규범 안으로 편입시킴.

UR Acceleration (UR 가속화)

APEC EPG(저명인사그룹)의 제안의 하나로서 APEC이 UR 합의를 앞당기는 선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50% 규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함(개방시기 50% 앞당김. 관세율 50% 감축 추가).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각료급 인사. 또한 동 기관을 지칭하기도 함

V

Variable Levy(가변과징금)

과일이나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추어 수입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임. 말하자면 어떤 농산물이 수확되어 출하량이 갑자기 많아질 기간동안에는 수입을 그만큼 줄이기 위하여 수입관세나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산품의 출하량이 적은 계절에 필요한 만큼 수입을 허용할 목적으로 관세나 과징금을 인하, 적용하는 제도임.

V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회색규제 조치로서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

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해서 양자간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Grey Area Measures 참조).

Vertical approach(수직적 접근방식)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장벽 논의시 거론되는 방식 중의 하나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산업 내에서 발견되는 비관세장벽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도 있으나 산업별로 논의하는 만큼 특정산업에 이해관계가 많은 회원국들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W

Waiver(의무면제)

GAT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하에서 GATT 체약국단이 투표의 2/3 찬성(전체투표의 과반수이어야 함)으로서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가입국의 특정 GATT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함.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특수한 상황하에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완화시키는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는 오래 존속할 수 없음. GATT에 있어서도 초기 계약에서부터 웨이버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만들어 졌으며 이밖에도 특정국가들 사이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예외조항도 도입되었음. 흔히 GATT를 일컬어 “온갖 예외조항으로 뒤범벅이 된 복합체”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예외조항들은 GATT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었

으며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었더라면 GATT의 발족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GATT의 예외규정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예외조항의 효력발생방식에 따르면 첫번째 형태의 예외조항은 체약국단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웨이버(25조 5항), 환율조정후의 증가세조정(2조 6항), 경제개발과 관련한 특정조치(18조), 일부반덤핑조치(6조 6항(b)) 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 형태는 GATT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GATT에의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12조 및 18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24조 7항),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 등이 있음. 그리고 세번째 형태의 예외조항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20조의 “일반적예외”와 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이에 속하며 GATT상 체약국단에 부여된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5조에 규정된 웨이버권한일 것임. ITO헌장 및 GATT에 이같은 일반적인 웨이버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은 협상의 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준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이 초안의 취지가 거의 그대로 협정으로 발전되었음. 25조 5항 외에도 GATT에는 체약국단에 웨이버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 여러규정이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18조 C 및 D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GATT의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단에 부여하고 있으며 24조 10항도 체약국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음.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라는 구절임. 그리고 25조 5항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웨이버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체약국단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버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 즉 웨이버의 부여에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이며 지금까지 25조 5항에 의거하여 부여된 웨이버는 다음과 같은 7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 (1) 어떤 체약국단에 웨이버를 부여하여 신생독립국 또는 준독립영역이 과거와 같이 특혜대우를 받도록 하는 경우[예 : 미국의 태평양 지역 신탁지역에 대해 부여된 웨이버(1951년), 리바다산품과 관련하여 이태리에 부여된 웨이버(1951년) 등]
- (2) 어떤 체약국이 새로운 관세분류방식 또는 세제개혁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양허표의 재교섭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웨이버
[예 : 미국의 관세분류와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1963년), BTM 체계의 채택과 관련하여 페루에 대한 웨이버(1964년)]
- (3) 24조에서 정해진 기준에 합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무역결성에 있어 2개국 이상에 대해 자유무역지역형성과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
- (4) IMF비가맹국으로서 GATT 제15조에서 규정된 “특별외환협약”의 체결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소수 GATT체약국에 부여된 웨이버
- (5)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 “수입과징금”의 부과를 허용한 웨이버
- (6) 농산물 수입쿼타를 허용한 웨이버
[예 :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의한 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4년), 일부농산물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9년)]
- (7)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취해진 체약국단의 결정

웨이버권한의 남용은 주로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계 농산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UR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기 획득한 Waiver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Washington Consensus(워싱턴 컨센서스)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전략으로 미국 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붙인 것에서 유래됨. 구 소련 붕괴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구조조정 지원의 전제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적인 확산을 위해 내세운 조건들로서 미국 행정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이루어진 합의라는 의미라는 뜻이다. WP3세계 국가들이 따라야 할 구조조정 조치는 정부 예산의 건전한 운영,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인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부의 규제축소, 재산권의 보호 등이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이를 시장근본주의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조지 스티글리츠도 개도국들에게 고금리 정책을 강요에 반대하며 IBRD에서 사퇴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 바 있음.

WRP(Wetland Reserve Program, 습지보전계획)

1990년 미국 농업법에서 실시된 환경보전제도의 하나. WRP는 “표토와 식생의 복구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수질개선, 홍수예방 담수, 지하수 복원을 위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RP는 농업인이 자신의 토지를 습지로 전환하거나 기존 습지의 농지로의 전환을 방지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토지은행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농지보전계획(CRP)과 유사한 정책으로 참가자에게는 5-20년 동안 에이카당 연간 임차료가 지불됨.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Compliance 참조

WFC(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1974. 11월 세계식량회의에서 세계식량이사회 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제29차 UN총회 결의로 정식 발식됨. WFC는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WFC에

서의 논의사항은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됨. WFC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 정부대표(임기 : 3년)로 구성되며, 매년 6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FP(세계식량계획)은 1961년 UN총회 및 FAO 총회에서 설립키로 결의하고 1962. 4월 세계식량계획 설립협정을 승인함으로써 1963.1월부터 활동을 개시함. 1965. 12월에는 UN 및 FAO에서 WFP의 무기한 존속을 결정함. 현재 WFP는 긴급식량원조를 통해 각국의 비상사태해결에 노력하고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FAO가 선출하는 30개국(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WFP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원조계획안의 검토 및 승인업무를 맡고 있음. UN회원국 및 FAO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동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6년 WF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가입함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특허권·의장권·상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체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의 공동사무국 성격으로 출범하여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격상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구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임.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임. WTO의 설립

목적으로는 ①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함.(회원국당 투표권 1표)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음. 2000. 4월현재 WTO 회원국은 136개국임.

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을 지칭. 동 협정들은 동경라운드(Tokyo Round) 기간 중에는 본래 규약(codes)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었음. 이들 협정들은 각자 해당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담고 있음. 동 협정들에 가입하는 것이 WTO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은 아님. 국제우육협정 및 국제낙농협정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부속서 4에서 삭제됨.

Z

Zero for Zero Tariff Reductions(관세 무세화)

UR협상에서 처음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안임.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90.12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93.7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93.12 미국, EU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등 4개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zero for X

분야별 자유화 논의시 거론되는 관세감축 방법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x %로 감축 하도록 하는 방법.

zeroing(제로잉)

덤핑을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zero option(제로옵션)

UR 협상 초기 주로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농산물 교역이나 생산을 왜곡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사실상 10년 내에 철폐하자는 제안을 지칭하는 용어.

Ⅱ.

전문용어 찾아보기

1. 가나다순
2. 알파벳순

1. 가나다 순

국 문	영 문	약 어
[가]		
가격약속	Price Undertaking	
가변과징금	Variable Levy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가트11조국	Article 11 Nation of GATT	
가트18조국	Article 18 Nation of GATT	
각료결정 및 선언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감시기관	Surveillance Body	
감축대상국내보조	Non-Exempted Domestic Support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경제지도자회의(정상회의)	Economic Leader's Meeting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작면적감축계획	Acreage Reduction Programme	ARP
고위간부회의(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공식적용방식	Formula Approach	
공정과 생산방법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관세	Tariff	
관세고정(관세양허)	Tariff Binding	
관세동맹	Customs Union	

국 문	영 문	약 어
국제수지보호조항	Balance of Payment Article	BOP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System	HS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환경협약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EA
권능부여조항	Enabling Clause	
규제동결	Standstill	
규제철폐	Rollback	
그린룸	Green Room	
금지 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기여실적	Credit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Measures	
[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네가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	
농업보조총액측정치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어환경지표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EIs
뉴라운드협상	New Round Negotiation	

국 문	영 문	약 어
[다]		
다자간무역체제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
다자간섬유협정	Multilateral Fiber Agreements	MFA
다자간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	
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다자간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MEA
당사국회의	Countries of the Parties	COP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던켈 초안	Dunkel's Draft Final Act	DFA
덤핑	Dumping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동경라운드	Tokyo Round	
동등성	Equivalence	
동종제품	Like Product	
딜론라운드	Dillon round	
대체비	Replacement Cost	
[라]		
리스본협약	Lisbon Agreement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마]		
마드리드협약	Madrid Agreement	
만장일치제	Consensus	
머코서	Mercado Comun del Sur	MERC-OSUR
미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미농무부장관	U.S. Secretary of Agriculture	
미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해외농업처	U.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면책조항	Escape Clause	

국 문	영 문	약 어
멸종동식물 보호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명목지원계수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NAC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무역왜곡상당치	Trade Distortion Equivalent	TDE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TPRB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무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무임승차국	Free-rider	
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바]		
반덤핑	Anti-Dumping	AD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발동가격	Trigger Price	
발동수준	Trigger Level	
방콕협정	Bangkok Agreement	
병해충안정지역	Pest-or-disease-free-Area	
보고르선언	Bogor Declaration	
보복	Retaliation	
보상	Compensation	

국 문	영 문	약 어
보조금	Subsidy, bounty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존유보계획	Conservation Reserve Programme	CRP
복수국간 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부족불 지급	Deficiency Pay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분야별제외	Block exemptions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DS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NTB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비교역적 고려사항	Non-Trade Concerns	NTC
비농산물시장접근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비상환용자	Non-Recourse Loans	
비연계 소득보조	Decoupled Income Support	
비위반사건	Non-Violation case	
비자동수입허가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		
사막화협약	Desertification Convention	
산지표시	Indications of Source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CVD
상계관세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상설상소기구	Standing Appellate Body	SAB

국 문	영 문	약 어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상소검토	Appellate Review	
상업적 고려사항	Commercial Consideration	
상품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상호주의	Reciprocity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산국 과세원칙	Original Principle	
생산자 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생산자은퇴계획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s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Blue Box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 협상그룹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GNS
선별성	Selectivity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I
섬유감독기구	Textile Monitoring Body	TMB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식량이사회	World Food Council	WFC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소비국(도착지)과세원칙	Destination Principle	
소비자 지지추정치	Consumer Support Estimate	CSE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	QR

국 문	영 문	약 어
수입과징금	Import Surcharge	
수입권공매	Quota Auction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s	
수입차액 또는 수입이익금	Mark-up	
수입쿼터	Import Quotas	
수입허가절차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수출보조	Export Subsidies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신용	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s	
수출신용보증계획	Export Credit Programme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수출진흥계획	Export Enhancement Programme	EEP
시장개방요구서	Request List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Request & Offer System	R/O
시장교란	Market Disruption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접근	Market Access	MA
시장질서유지협정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
시장촉진정책	Market Promotion Programme	MPP
식량순수입개도국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
식량안보	Food Security	
식품규격위원회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국 문	영 문	약 어	
신속승인권한	Fast Track Authority	FTA	
신축성의 원칙	Principle of Flexibility		
신호등 분류방식	Red amber Green Light		
협상세부원칙	Modalities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쌍무협상	Bilateral Negotiation		
[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약속	Commitment		
양허	Concession		
양허관세	Bound Tariffs		
양허표	Schedules of Concessions	SBS	
양허표의 수정	Modification of Schedules		
업계간 자유통매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역만장일치제	Reverse Consensus		
열대상품	Tropical Products		
예방적 접근방법	Precautionary Approach		
오사카선언	Osaka Declaration		
오이씨디 각료이사회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LIS
오이씨디 농업위원회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		
오이씨디 온라인 서비스망	OECD/On-Line Information Service		
오이씨디 위원회 및 작업반	OECD/Committee & Working Party		
오이씨디 규정법	Act of OECD		
오이씨디 특별집행위원회	OECD/Special Executive Committee		
오이씨디 협정	OECD/Convention		

국 문	영 문	약 어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	
외국시장개척정책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me	FMDP
외부참조가격	External Reference Price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UR
우루과이라운드 가속화	UR Acceleration	
우회덤핑	Circumvention	
우회수출보조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인증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의 조화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표시	Market of Origin	
원산지표시제도	Country of Origin Marking	
원산지 원칙	Origin Principl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 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위장된무역장벽	Disguised Trade Barriers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 문	영 문	약 어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지속개발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효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RP
유효지원율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ERA
의무면제	De-minimis	
의무면제	Waiver	
의정서	Protocol	
의제 21	Agenda 21	
일괄수락원칙	Single Undertaking	
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Sunset Clause	
일반관세	General Tariff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
임시세이프가드	Provisional Safeguard	
[자]		
자동성	Automaticity	
자동수입허가	Automatic Import Licensing	AIL

국 문	영 문	약 어
자원폐기계획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	
자유무역지대	Free-Trade Area	
잔존수입제한	Residual Restriction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잠정적용의정서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저명인사그룹	Eminent Persons Group	EPG
적절한자제	Due Restraint	
전환적덤핑	Diversionsary Dumping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제3국	Third Parties	
조기경보제도	Early Warning System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조화	Harmonization	
종가세	Ad Valorem Duties	
종량세	Specific Duties	
주선,조정,중재	Good Office, Conciliation, Mediation	
주요 4국	Quad	
중간평가	Mid-Term Review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중첩적과세	Cascading tariffs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s	
제품수명주기평가	Life Cycle Assessment	LCA
재활용	Recycling	

국 문	영 문	약 어
[차]		
차액보상	Deficiency Payments	
77그룹	Group of 77	G77
계약국	Contracting Party	
초기가시화=자발적 선행조치	Down Payment	
총량쿼타	Global Quota	
총보조총액측정치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Total AMS
총체적인 감축방식	Global Approach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MMA
최종의정서	Final Act	FA
최초협상국 권한	Initial Negotiation Right	INR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FN
[카]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타]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PECC
통상증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투명성·공개주의	Transparency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pecial Safeguard	SSG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Special Safeguard Measures	SSM
특별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정성	Specificity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국 문	영 문	약 어
[파]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패널	Panel	
평화조항	Peace Clause	
포괄성 원칙	Principle of Comprehension	
포괄적 관세화	Comprehensive Tarrification	
포지티브시스템	Positive System	
푼타델에스테선언	Punta del Este Declaration	
품목별 협상방식	Item by Item Formula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	Non-Product Specific AMS	
측정치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Product Specific AMS	
[하]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도양허	Ceiling Binding	CB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	Transitional Safeguard	TSG
할당관세율	In-quota rate	
할당외관세율	Out-of-quota rate	
허용대상농업보조	Green Box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CMA
현행시장접근	Current Market Access	
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	EMS
환경관리제도	elopment	
혼합세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비용 내부화	Combined Duty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2. 알파벳 순

약 어	원 명	국 문
[A]		
AAC	African-Asian Conference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AAD	Anti-Absorption Duties	반덤핑 추가관세
AARRO	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아시아농촌재건기구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AD	Anti-Dumping	반덤핑
ADB	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ADD	Anti-Dumping Duty	반덤핑관세
ADF	Asia Development Fund	아시아개발기금
ADP	Anti-Dumping Practices	반덤핑
ad val	ad valorem	종가세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개발기금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허가
AIT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아시아 기술센터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총액측정치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민족회의
ANCOM	Andean Common Market	안데안공동시장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U	Asian Parliamentary Union	아시아의원연맹
AR	Administrative Regulation	행정규제
ARC	Asian Reinsurance Corporation	아시아재보험공사

약어	원명	국문
ARP	Acreage Reduction Programme	경지면적 감축계획
Asian NICs	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of Asia	아시아신중공업국
ASTRO	Association of State Trading Organization	개도국국영무역기구협회
[B]		
BEF	Biodiversity Enterprise Fund	생물다양성기업기금
BGCI	Botanic Conservation International	국제식물원 보전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P	Balance of Payment	국제수지균형
BTA	Border Tax Adjustment	국경세 조정
BZ	Buffer Zone	완충지역
[C]		
CAC	Jo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AO/WHO 공동식품 규격위원회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CAD	Committee on Agriculture Development	농업개발위원회(ESCAP)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EC 공동농업정책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B	Ceiling Binding	한도양허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미국상품금융공사
CCP	Counter Cyclical Payment	미국 가격보전직불제도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
CDAP	Cor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농작물재난지원 프로그램
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약어	원명	국문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책임자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 & F	Cost & Freight	운임포함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재판소
CD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CMA	Current Market Access	현행시장접근
CMS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이동성 동물종에 관한 협약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회의
CP	Contracting Parties	계약국
CPI	Consumer's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CS	Country Schedule	국별양허표
CSD	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FAO 잉여농산물처분협의 소위원회
CSE	Consumer Support Estimate	소비자지지추정치
CL	Country List	국별현황자료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개발위원회
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개발위원회
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무역상품위원회
CTG	Council for Trade in Goods	상품무역이사회
CVD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

약어	원명	국문
[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Es	Dynamic Asian Economies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DP	Detination Principle	소비국 과세원칙
DS	Domestic Support	국내보조
DOC	Department of Commerce	(미)상무성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WTO)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WTO)
[E]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미)대외경제협조처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UN산하)
ECDC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 간 경제협력 (UNCTAD)
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경제사회이사회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U	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단위
	European Clearing Union	유럽 결제동맹
ED	Electronic Document	전자서류
EDB	European Development Bank	유럽개발은행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EEP	Export Enhancement Program	수출진흥계획(미국)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약어	원명	국문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Mail	Electronic Mail	전자우편
E/L	Export License	수출허가서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통화조정체제
EPZ	Export Processing Zone	수출자유지역
EPG	Eminent Persons Group	저명인사그룹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F]		
FA	Final Act	최종의정서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미국해외농업처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국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TA	Fast 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
FTZ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대
[G]		
G7	Group of Seven Countries	선진7개국
G77	Group of Development Countries within UN	UN개발도상국가집단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세계환경기구
GHG	Greenhouse Gas	온실가스
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GNE	Gross National Expenditure	국민총지출

약어	원명	국문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GSM	General Sales Manager	수출신용자금
GR	Green Round	환경라운드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H]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외채과다 저소득국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I]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ICCC	International Customs Corporation Council	국제관세협력이사회
I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국제환경협약
IEFR	International Emergency Food	비상식량비축
IFAD	International Fund of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I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y	국제검역기구연합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P	Index Number of Prices	물가지수
IOC	International Ozone Committee	국제오존위원회
IO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국제수역사무국
IOCU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umers Union	국제소비자연맹
IPC	International Food & Agricultural Trade Policy Council	국제식량및농업무역협회

약어	원명	국문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PU	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미)국제무역위원회
IWC	International Whale Committee	국제포경위원회
[J]		
JCCI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Seoul	주한일본상공회의소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국제협력사업단
[K]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R	Kennedy Round	GATT 케네디 라운드
KTC	Korea Trade Commission	한국무역위원회
[L]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LDC	Less Developed Country	후발개도국
LIFDCs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	저소득식량부족국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M]		
MA	Market Access	시장접근
MEA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RCOSUR	Mercado Comun Del Cono Sur	남미공동시장
MFN	Most-Favoured Nation Clause or Treatment	최혜국조항
MMA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MNE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

약어	원명	국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P	Minimum Price System	최저가격제
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다자간무역협상
[N]		
NAFTA	Northern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Area)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
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시장접근
NFIDC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식량순수입개도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신흥공업국
NT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NTB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NTC	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기능
NTM	Non-Tariff Measures	비관세조치
[O]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통일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불어)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영어)	국제수역사무국
OMA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P]		
PECC	Pa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PP	Polluters Pa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추정치
PSI	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검사

약 어	원 명	국 문
[R]		
R/O 방식	Request/Offer Approach	시장개방요구 및 제안방식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구조조정계획
SBS	Simultaneous Buy and Sell	업체간자율거래제도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
SG	Safeguards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SOG	Senior Officials Group	고위실무그룹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실무자회담
SP	Set-aside Program	휴경보상제(EC)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SG	Special Safeguards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SM	Special Safeguard Measure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STE	State Trading Enterprise	국영무역기업
[T]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E	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통상증진권한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검토제도(WTO)
TQ	Tariff Quota system	관세할당제도
TR	Tokyo Round	GATT 동경라운드

약어	원명	국문
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무역관련투자조치(WTO)
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WTO)
TRQ	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쿼타
TSG	Transitional Safeguard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
TSUS	Tariff Schedules U.S.	미국관세분류표
[U]		
UCC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통일상법전
UMR	Usual Marketing Requirement	통상시장수요
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지속개발지원회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국제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환경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국제아동긴급기금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기후변화협약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농무성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
[V]		
VER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출자율규제협정

약 어	원 명	국 문
[W]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국제관세기구
WCP	World Climate Program	세계기후계획
WFC	World Food Conference	세계식량회담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WFP	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FAO주관)
WFTU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세계노동조합연맹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L	Watch List	감시목록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UN)
WPI	Wholesale Price Index	도매물가지수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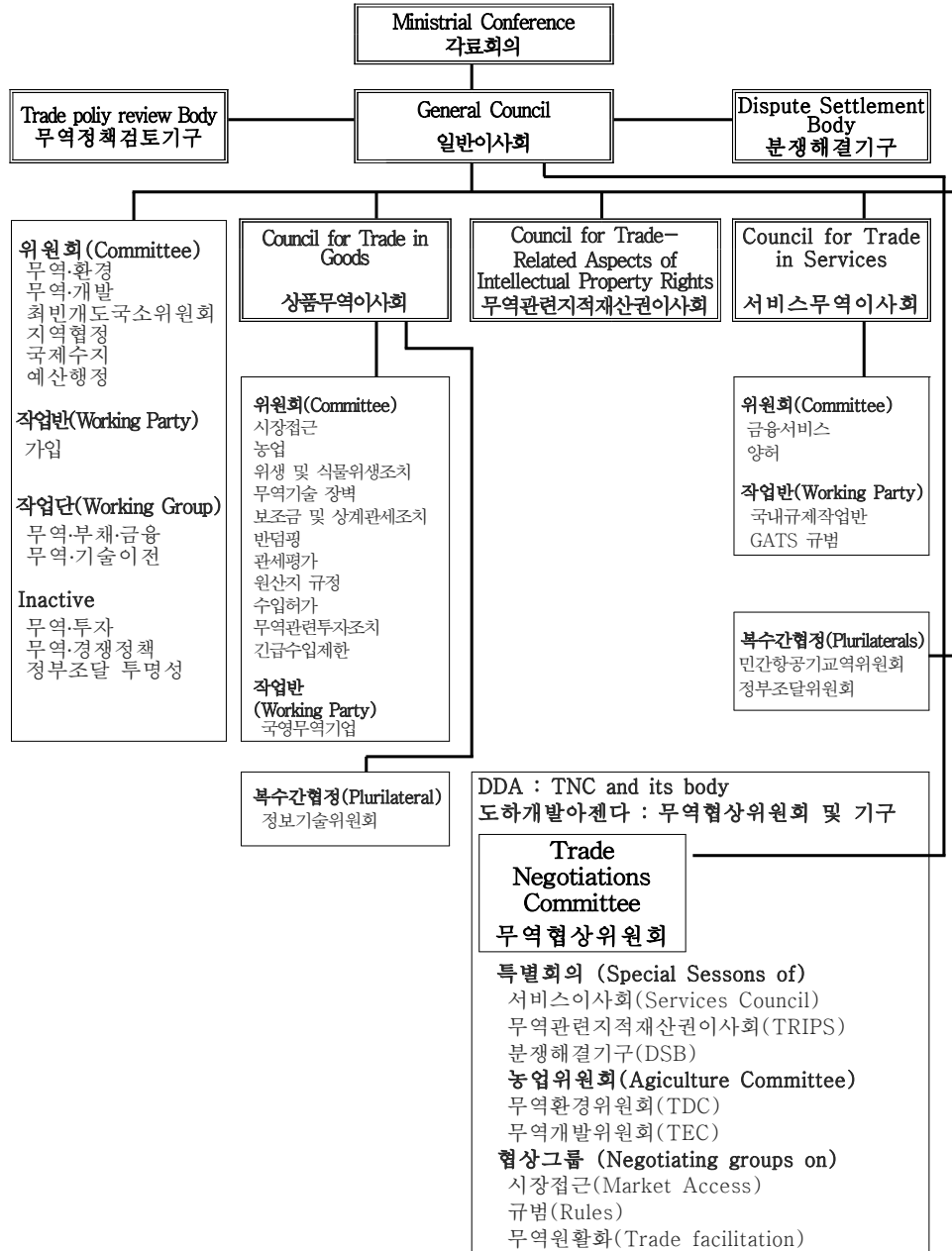
Ⅲ.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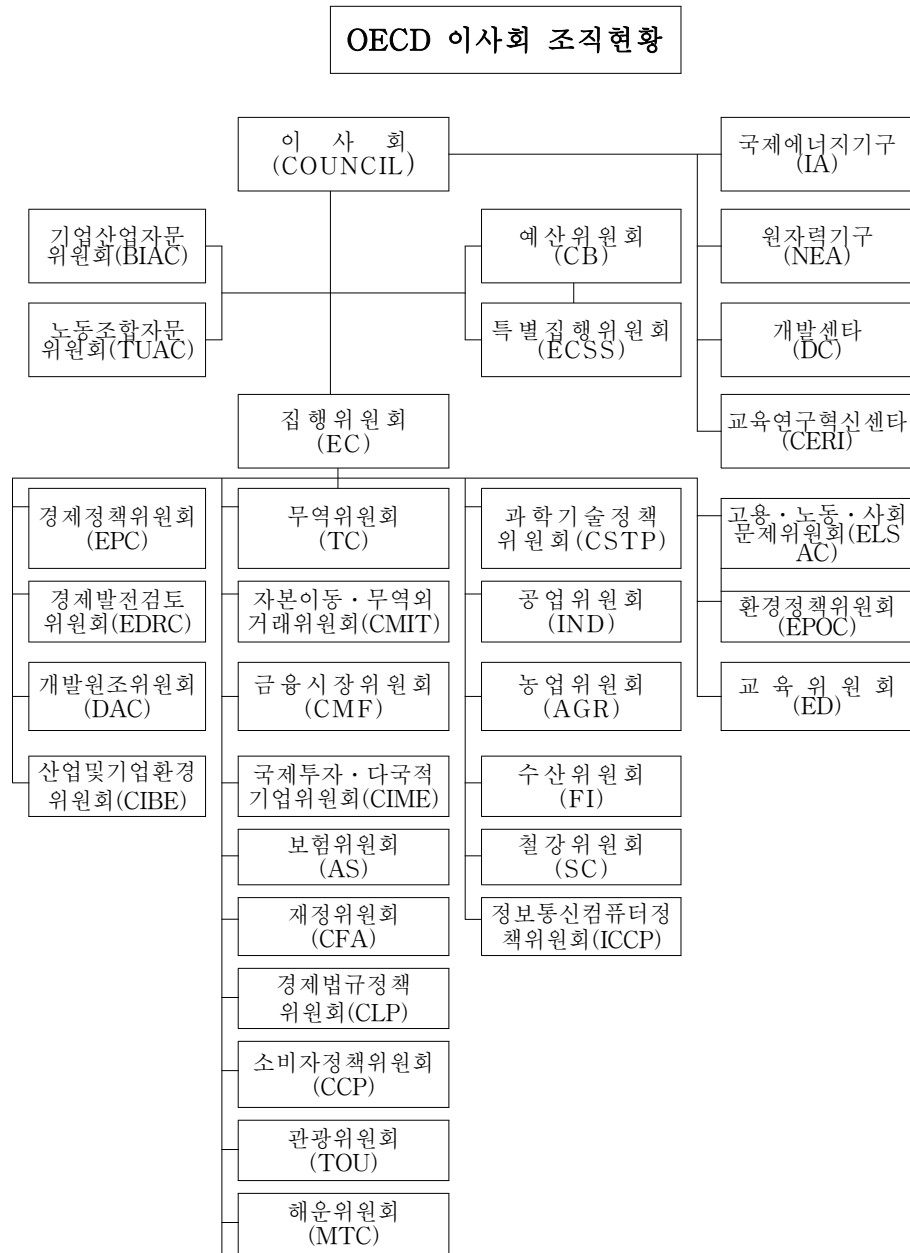
1. 국제기구 기구표
2. WTO/DSB 분쟁해결절차
3. 농업 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4. 농림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5. 입법부·행정부 직위영문 명칭
6.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용어
7. 무역 약어

1. 국제기구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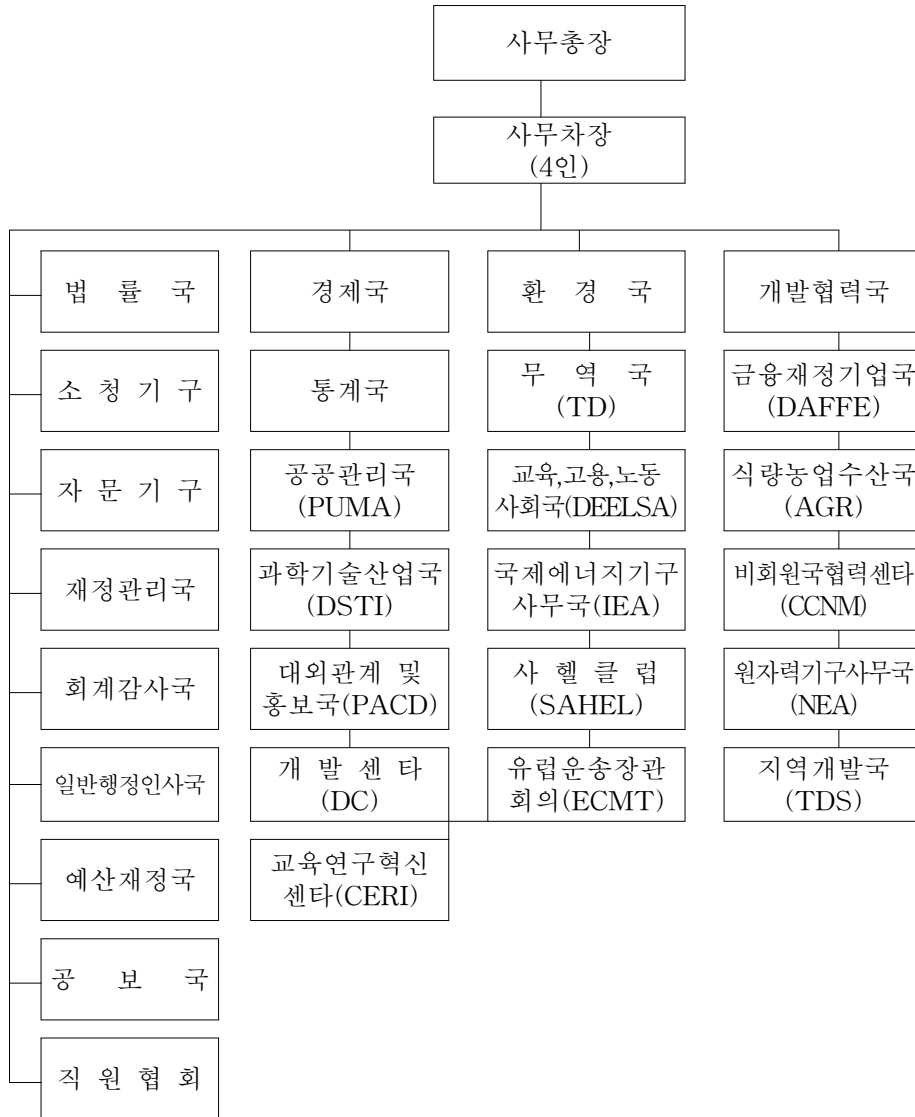
가.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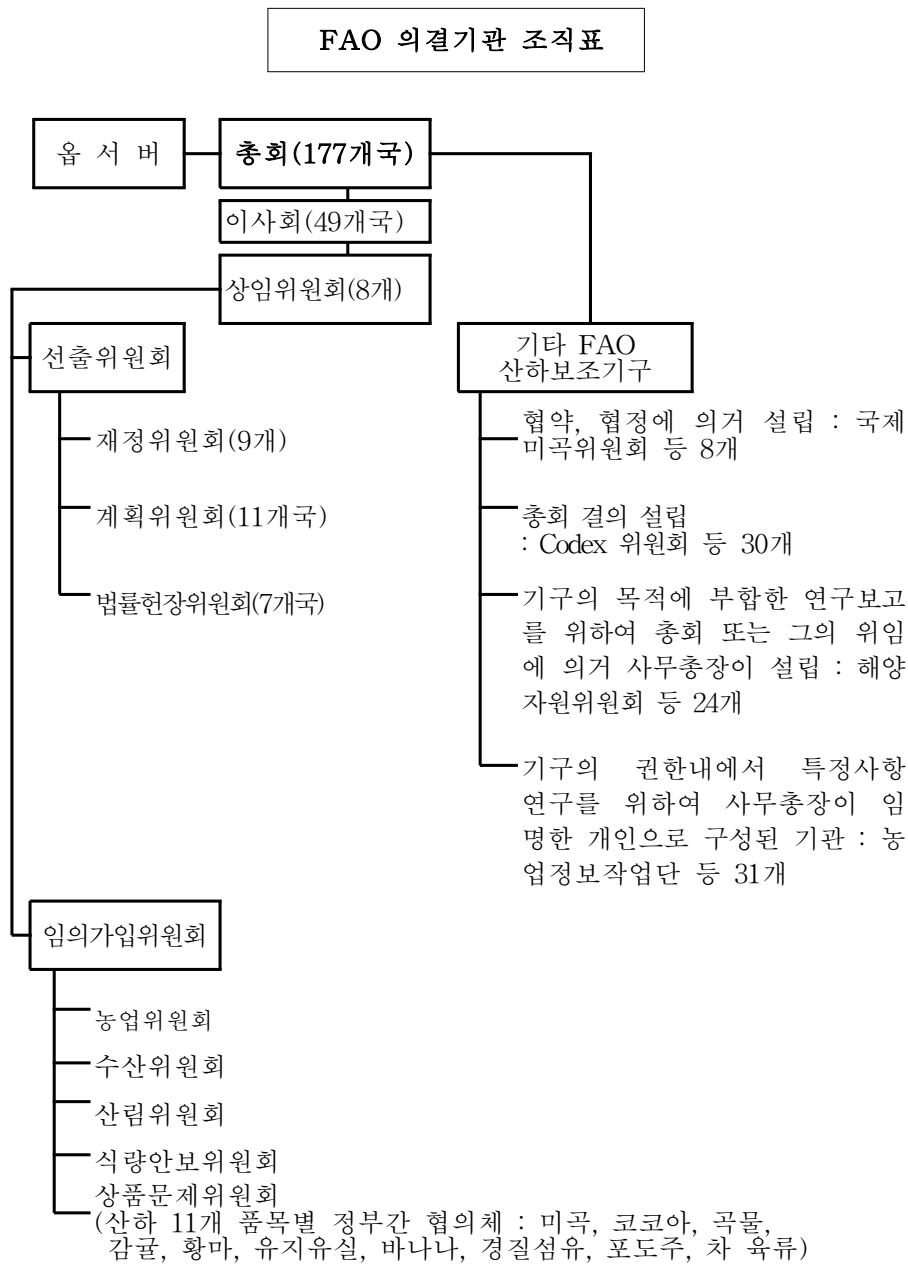
나.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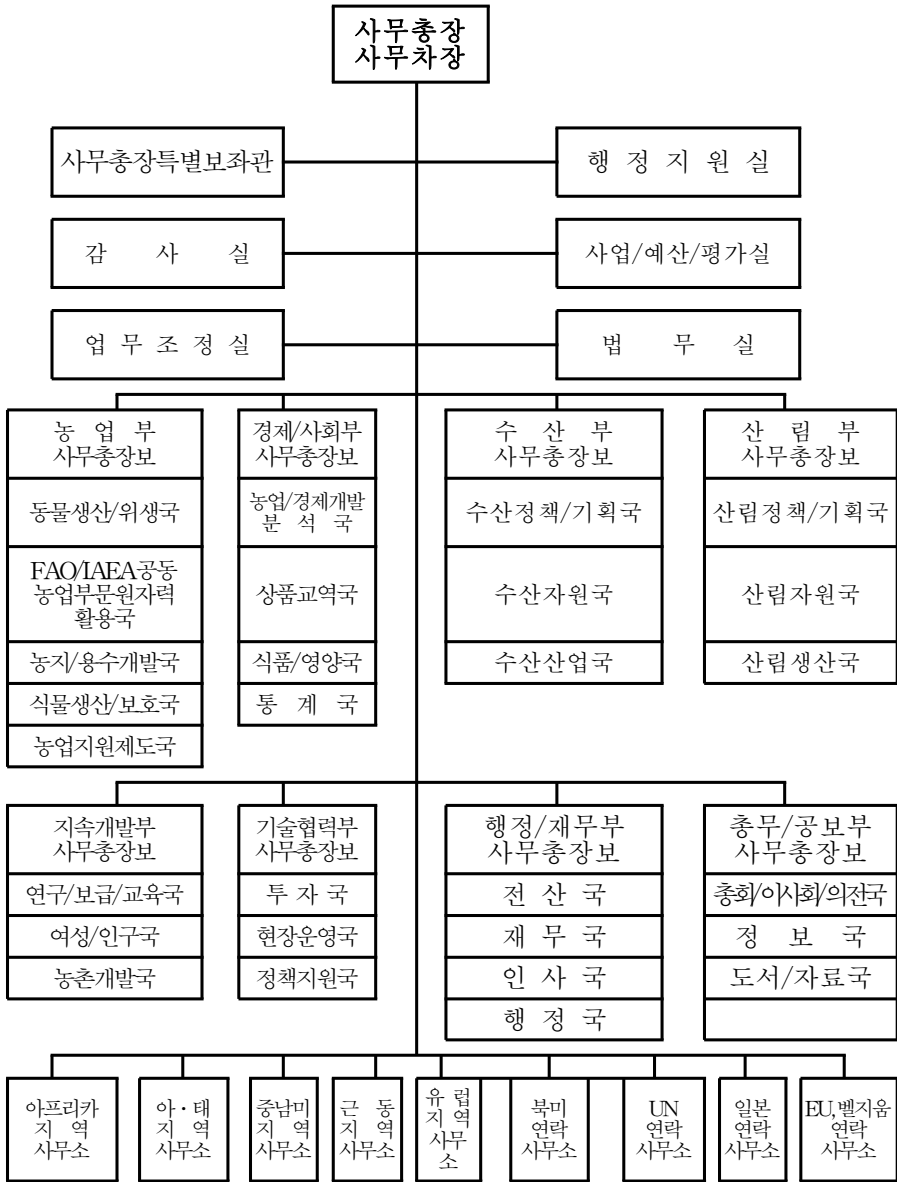
OECD 사무국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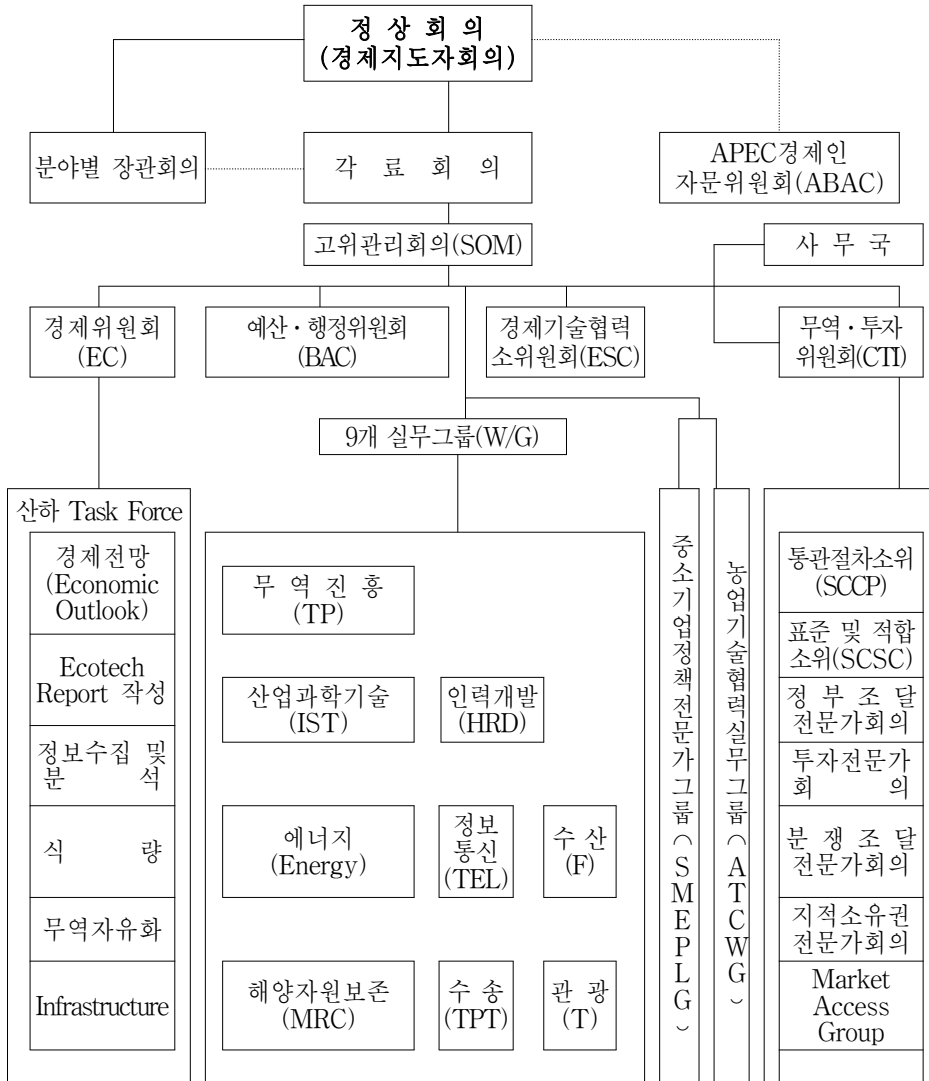
다.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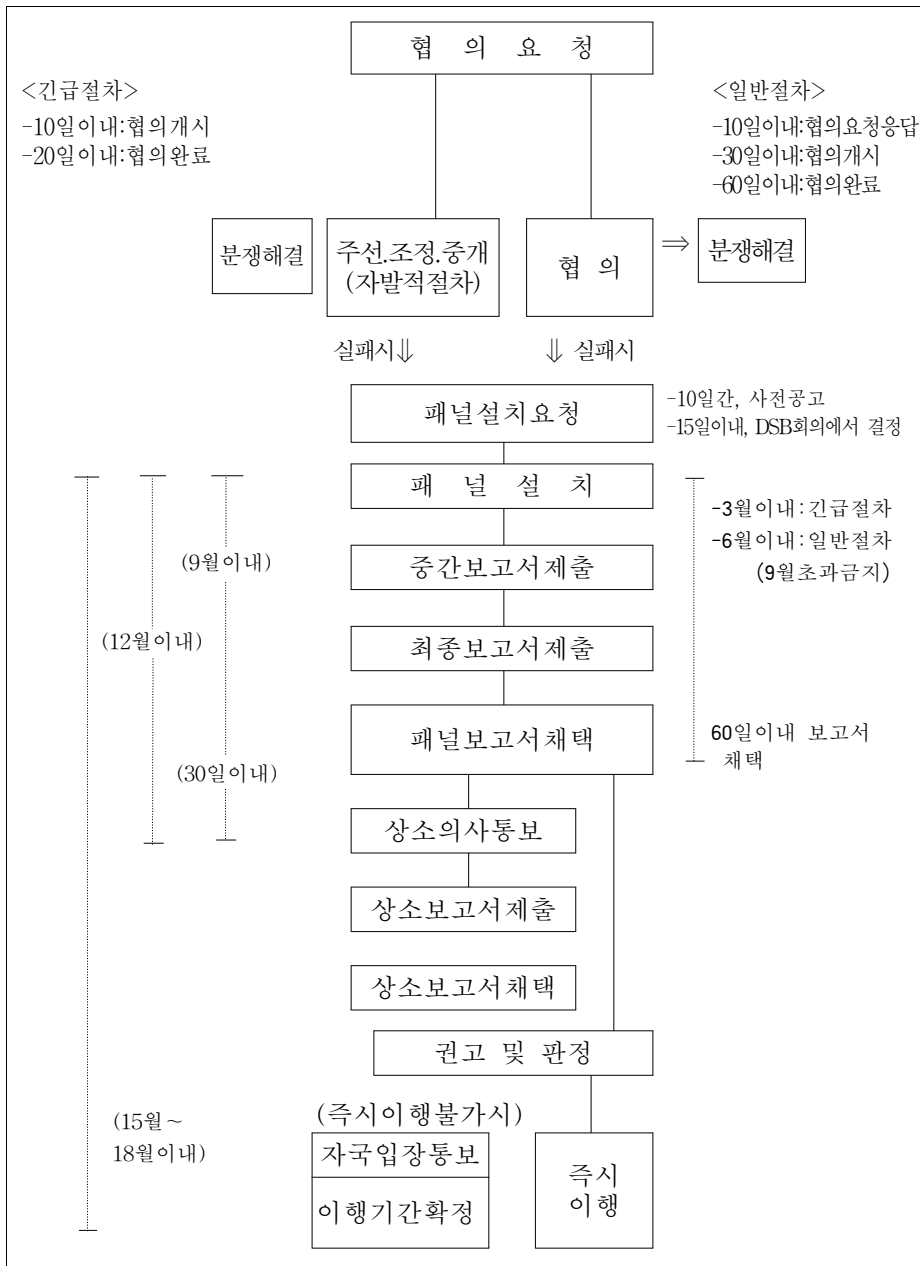
FAO 사무국 조직표



라. APEC 기구표



2. WTO/DSB 분쟁해결절차



3. 농업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기관약어	영문명칭	국문명칭	소재지
------	------	------	-----

□ UN산하기관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스 위 스 (제 네 바)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미 국 (뉴 욕)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케냐 (나이로비)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미 국 (뉴 욕)
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이태리 (로마)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태국 (방콕)

□ 유엔전문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식량농업기구	이태리 (로마)
CAC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AO/WHO공동식품규격위원회	”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영국 (런던)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스 위 스 (제 네 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u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미 국 (워싱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 문 화 기 구	프 랑 스 (파 리)

□ 정부간 기구

AARDO	Afro-Asian Ru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아농촌 개발기구	인 도 (뉴델리)
APDC	Asia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아시아·태평양개 발센터	말레이지사 (쿠알라룸폴)
APO	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	아시아생산성기구	일 본 (동 경)
APPPC	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	아시아·태평양지 역식물보호위원회	태 국 (방 쿽)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	호 주 (호바트)
CIRDAP	Center 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농촌중 합개발센터	방글라데쉬 (꼬밀라)

IOE(OI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ffice Internationale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프랑스 (파리)
IPFC	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수산물위원회	태국 (방콕)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영국 (캠브리지)
IWC	International Wheat Council	국제소맥이사회	영국 (런던)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 (마닐라)
APEC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	싱가폴 (싱가폴)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VRDC	Asian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자유중국 (대북)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CARIOOM	Caribbean Community	카리브공동체	가이아나 (쥬지타운)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벨지움 (브뤼셀)
EC	European Communities	구주공동체	”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구주자유무역연합	스위스 (제네바)
G-77	Group of 77	77그룹	상설사무국 없음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국제면화 자문위원회	미국 (워싱턴)
ICI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국제관개배수 위원회	인도 (뉴델리)
ISC	International Sericultural Commission	국제양잠위원회	프랑스 (라뮐라띠에르)
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국제무역센터	스위스 (제네바)
LAES	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중남미경제기구	베네스웰라 (카라카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랑스 (파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스위스 (제네바)

□ 준정부간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스위스 (제네바)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존연맹	”

4. 농림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기 관 명	영 문 표 기
□ 농 림 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장 관	Minister
차 관	Vice-Minister
차 관 보	Deputy Minister
정책홍보관리실장	Assistant Minister for Policy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
농업통상정책관	Deputy Minister for Agriculture Trade Policy
공 보 관 실	Public Information Bureau
홍보기획팀	Communications Planning Team
홍보지원팀	Communications Support Team
감 사 관 실	Audit and Inspection Bureau
감사담당관실	Audit and Inspection Division
비상계획관	Emergency Planning Officer
총무과	General Service Division
혁신인사기획관실	Innovation Planning & Personnel Division
재 정 기 획 관 실	Finance & Planing Bureau
정책기획팀	Policy Planning Team
재정팀	Finance Team
행정법무담당관실	Administration Management Judicial Affairs Division
투 용 자 평 가 통 계 관 실	Investment Evaluation & Statistics Bureau
재정평가팀	Finance Evaluation Team
통계기획팀	Statistics Planing Team
정보화팀	Information Team
농업구조정책국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Bureau
구조정책과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Division
농지과	Farmland Policy Division

기관명	영문표기
경영인력과	Agricultural Management Human Resource Division
협동조합과	Agricultural Cooperatives Division
여성정책과	Rural Women Policy Division
맞춤형농정팀	Customized Farm Policy Team
식량정책국	Foodgrain Policy Bureau
식량정책과	Foodgrain Policy Division
농산경영과	Agricultural Production Management Division
소득정책과	Income Policy Division
소득관리과	Income Management Division
친환경농업정책과	Environment-friendly Farming Policy Division
국제농업국	International Agriculture Bureau
국제협력과	Multilateral Cooperation Division
통상협력과	Bilateral Cooperation Division
농업협상과	Agricultural Negotiation Division
자유무역협정과	Free Trade Negotiation Division
자유무역협정2과	Free Trade Negotiation Division 2
농촌정책국	Rural Development Bureau
농촌정책과	Rural Policy Division
농촌진흥과	Rur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농촌사회과	Rural Society Welfare Division
기반정비과	Farmland & R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시설관리과	Rural Water System Management Division
농산물유통국	Agricultural Marketing Policy Bureau
유통정책과	Marketing Policy Division
소비안전과	Consumer Information Food Safety Division
식품산업과	Food Industry Division
채소특작과	Vegetable and Special Crops Division
과수화훼과	Fruits and Flowers Division

기관명	영문표기
축 산 국	Livestock Bureau
축산정책과	Livestock Policy Division
축산경영과	Livestock and Feed Management Division
축산물위생과	Livestock Products Sanitation Division
가축방역과	Animal Health Division
<input type="checkbox"/> 외 청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KFS)
<input type="checkbox"/> 산 하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국립수의과학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NVRQS)
농업연수부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ATC)
국립식물검역소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NPQS)
국립종자관리소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NSMO)
<input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한국농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KRC)
농수산물유통공사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산림조합중앙회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한국마사회	Korea Racing Association

5. 입법부·행정부 직위 영문명칭

가. 입법부

- 주요 정당
 - 여당 : Ruling(governing) party
 - 야당 : Opposition party
- 주요직책 및 당직명
 - 국회의장 :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부의장 :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의원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총 재 : President
 - 총재권한대행 : Acting President
 - 명예총재 : Honorary President
 - 당 대표 : Chairman/Executive Chairman/Leader
 - 공동대표 : Co-Chairman
 - 상임고문 : Standing-Advisor(·고문 : Advisor)
 - 부총재 : Vice President
 - 전당대회회장 : Chairman of the National Convention
 - 사무총장 : Secretary-General
 - 정책위의장 : Chairman of the Policy Committee
 - 정책조정실장 : Director-General of Policy Coordination
 - 원내총무 : Floor Leader
 - 수석부총무 : Senior Deputy Floor Leader
 - 부총무 : Deputy Floor Leader
 - 중앙정무위의장 : Chairman of the Central Standing Committee
 - 총재비서실장 : Chief-Secretary to the President
 - 대변인 : Spokesperson/Spokesman
 - 여성대변인 : Spokeswoman
 - 당무위원 : Member of the Central Executive Council
 - 지구당위원장 : Chairman of a District Party Chapter
 - 당직 : Party Post

나. 공무원 직위·직급 등 영문명칭

□ 직 위

- 장관·처장 : Minister
- 차관 : Vice Minister
- 청장 : Administrator
- 처장(청의 차장) : Deputy Administrator
- 차관보 : Assistant Minister
- 실장 : Deputy Minister
- 국장/심의관 : Director General of Bureau
- 부장 : Director General of Department
- 과장 : Director
- 사무관/서기관 : Deputy Director

□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 일반직 : General Service
 - 특정직 : Special Service
 - 기능직 : Technical Skill Service
- 특정경력직 공무원 : Public Officials in Non-Career Service
 - 정무직 : Political Service
 - 별정직 : Special Service/Excepted Service
 - 계약직 : Contracted Service
 - 고용직 : Labor Service

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영문명칭

□ 행정구역

- 특별시 : Special Metropolitan City
- 광역시 : Metropolitan City
- 도 : Do(Province)
- 시 : Shi(City)
- 군 : Kun(County)
- 구
 - 자치구 : Ku(Autonomous District)
 - 비자치구 : Ku(Non-Autonomous District)
- 읍·면·동·리 : Eup·Myon·Dong·Ri(Sub-district/Village)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특별시·광역시) : Mayor
- 부시장(특별시·광역시) : Vice Mayor
- 도지사 : Governor
- 부지사 : Vice Governor
- 시장 : Head of Shi(City)/Mayor
- 부시장 : Deputy Head of Shi(City)/Vice Mayor
- 군수 : Head of Kun(County)
- 부군수 : Deputy Head of Kun(County)
- 구청장(자치구) : Head of Ku(District)
- 구청장(비자치구)·읍·면·동·리 : Head of Ku·Eup·Myon·Dong·Ri

6.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 용어

- a : fortiori-with stronger reason ; much more ; all the more.
a : posteriori-from effect to cause ; from what comes after.
a priori-from cause to effect ; from what went before.
ad initio-from the beginning ; entirely.
ad hoc-as to this ; for this special purpose.
ad infinitum-without limit ; to infinity.
ad interim-in the meantime(Not underscored in the title "charge d'af-faires ad interim").
ad intestate-from an intestate.
ad referendum-for reference ; for further consideration.
ad valorem-according to value.(Not italicized in English text).
Anno Domini-in the year of our Lord.
bona fide-in good faith.
bona fides-good faith.
casus belli-an event which is allegedly the cause of war.
ceteris paribus-other things or conditions being equal.
corpus delicti-the body of the offense ; the essence of the crime.
coup d'etat-unexpected stroke of policy or statesmanship : often accompanied by violence ; often involves a change in government.
cum testamento annexo-with the will annexed.
de facto-actually ; in fact ; in reality.
de jure-rightfully ; lawfully ; by legal title ; of right ; by right.
de novo-anew ; afresh ; all over again.
droit civil-common law.
droit de tetractation-emigration duty.
en bloc-in a lump ; as a whole; in a block.
et sequentes ; et sequentia-and the following.

ex aequo et bono—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good.
ex gratia—of favor ; out of grace.
ex officio—by virtue of his office.
ex parte—of the one part ; from the side or party.
ex post facto—from or by an afteract ; by subsequent matter.
expromisso—openly ; avowedly.
force majeure—superior or irresistible force.
hors de cause—outside of the cause
in extenso—fully, at length
in extremis—at the very end, on the point of death
in fine—in or at the end
in flagrante delicto—in the very act of committing the crime
in fraudem legis—in fraud of the law, contrary a law
in futuro—at a future time
in hoc—in this
in initio legis—at the beginning of the suit
in limine—in or at the beginning
in loco—in the place
in loco parentis—in the place of parent
in re—in the matter of
in status quo—in the state in which it was, unaltered
in toto—in the whole ; completely
inter alia—among other things
inter nos—between ourselves
inter se—between or among themselves
inter vivos—between living persons
ipso fact—by the fact itself
ipso jure—by the law itself
ipso jure—by the law itself
jus civile—civil law

jus gentium-the law of nations
jus sanguinis-the right of blood
just soli-right of the soil, indicating the citizenship of a person
by the place of his birth
lapsus calami-slip of the pen.
lapsus meoriae-slip of the memory
lapsus linguae-slip of the tongue
lex loci-the law of the place
locus standi(a place of standing) - a right to be heard
mala fides-bad faith
mali excempli-of bad example
mare clausum-closed sea
mare liberum-free sea
modus operandi-mode of operation
modus vivendi(plural ; modi vivendi) - a temporary arrangement
between two sovereignties providing for the conduct of
certain affairs pending negotiations for a treaty on the
same subject
mutatis mutandis-with necessary changes
nolle prosequi-to be unwilling to prosecute
non compos mentis-not of sound mind, of understanding, memory
non prosequitur-he does not prosecute
non sequitur-it does not follow
opere citato-in the work cited(To be used only with the name of
an author or in connection with name of an author)
pater patriae-father of his country
patria potestas-the authority vested by law in the father over his
legitimate children
per annum-by the year
per curiam-by the court

per diem-by the day
per se-by itself, alone
persona non grate-one who is not acceptable
post mortem-after death
prima facie-at first view, on the first appearance
pro confesso-as confessed
pro nunc-for the present
pro rata-according to the rate, proportion, allowance
pro tanto-for so much
pro tempore-for the time being
proces-verbal(proces-verbaux)-official report(s), journal(s), minute(s) of proceedings
quid pro quo-one thing for, or in place of, another
ratione personae-by reason of the person.
requete civile-appeal to the highest court for that court to reconsider its own decision
res judicata-a matter that has already been judicially determined
sine die-without day(i.e. without setting a day)
status quo-the state of things existing at any given time
status quo ante-the state of things existing before
ultra vires-beyond their powers

7. 무역 약어

【 A 】

A/N	Am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
A/P	Authority to Purchase	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
A/P	All Risk	전손담보(보험)
A/V	Ad Valorem	종가
A.W.B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 B 】

B/B	Bid Bond	입찰보증
B/E	Bill of Exchange	환어음
B/L	Bll of Lading	선하증권
B.T	Berth Tem	선적 및 하역비용선주부담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브러셀관세분류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인도조건거래

【 C 】

C.A.D	Cash Against Documents	운송서류교환도조건
C.C.C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C.F.R(C&F)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집하소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F.&C	Cost, Insurance, Freight, and Commission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가격
C.I.F.&I	Cost, Insurance, Freight, and Interest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가격
C.I.F.&E	Cost, Insurance, Freight, and Exchange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포함가격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도가격
C.M.T	Cuting Making Trimming	가공무역
C.L	Carload Lots	화차단위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량

C/O: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대공산권통제위원회
C.O.D	Cash on Delivery	현금상환인도조건
C.P	Charter Party	용선계약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Q.D	Customary Quick Despatch	관습(통상)적 신속하역
C.T.D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C.T.L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취급인
C.W.O	Cash With Order	현금출급주문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
C.F.&C	Cost, Freight and Commission	운임수수료 포함조건

【 D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인도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D:D.D	Documentary Drafr : Demand Draft	환어음:요구불어음
dd:D/d	days after date	일부후~일(어음)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불지급반입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L	Dead Load	사량(차량이나 건물자체의무게)
dem	demurrage	초과정박, 체선료
D/M	Despatch Money	신속하역료
D/O:DO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창고)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도조건
DP	Duty Paid	세금지급필
D/R	Dock Receipt	창고수취증
D/W	Dock Warrant	(부두)창고증권

【 E 】

E.C	European Community	구주공동체
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E.D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서
E/D	Export Date	유효기일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구주자유무역연합회
E/L	Export Licence	수출승인
Escrow A/C	Escrow Account	기탁계정, 신탁계정
E.X.I.M	Export-Import Bank	수출입은행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F 】

F.A.Q	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품질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C.L	Full Contanier Load	만재화물
FI	Free In	적재비용선주무관계 (화주부담)
F.I.O	Free In and Out	적재 및 하선비용선주무관계 (화주부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F.O.B.&C	Free On Board and Commission	수수료포함본선인도조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
F.P.A.A.C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American Conditions	분손(단독해손)부담보 미국조건약관
F.P.A.E.C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English Conditions	분손부담보 영국조건약관

【 G 】

G/A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보증조건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제도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
among Developing Countries

【 H 】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
Coding System

【 I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국제부흥개발은행
and Development

I.C Import Certificate 수입증명서(전략물자)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

I.C.C 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

I.D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서

I/L Import Declaration 수입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of Trade Terms 국제규칙

I.O.F Irrespective of Franchise

I.O.P Irrespective of Percentage 면책비율부정용약관

I/P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I.Q Import Qyota 수입쿼터

I.S.O International Trade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 J 】

J.I.S Japan Industrial Standard 일본공업규격

【 K 】

K.F.T.A 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K.F.X Korea Foreign Exchange 외화보유불(한국)

【 L 】

L/A Letter of Authority 수권서

LAFTA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IB(s):Ib pound(s) 파운드(무게의 단위)

LCL Less Container Load Cargo 단위미달화물

L/G 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장

L/T	Long Ton	중톤, 영국통
【 M 】		
M/F	Manifest	적하목록
MF.N	Most Favoured Nation Clause	최혜국약관
MLP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보험증권
M/L Clause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M/R:MR	Mater's Receipt	본선수취증
【 N 】		
N.T.B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 O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생산
O.P	Open Policy	예정보험증권
【 P 】		
P.A	Power of Attomey	위임장
P.A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 Q 】		
Q.C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Q/D	Quick Despatch	신속화물
【 R 】		
R.F.W.D	Rain & Fresh Water Damage	비 및 담수피해
R.T	Rye Terms	도착지 품질보증조건 (양육품질조건)
【 S 】		
S/D	Shipping Date	선적일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IMF)
S/T	Stort Ton	미국식톤(2,000파운드)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국제표준무역분류

S/N	Shipping Note	선적통지서
S/O	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S.R&C.C.C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	파업, 폭동 및 내란조항

【 T 】

T.L	Total Loss	전손
TLO	Total Loss only	전손담보조건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의 위험
T.Q	Tale Quale(French) (=of condition on arrival)	운송중의 손해매수인부담, 선적 품질조건
T/R	Trust Receipt	화물대도증
TS L/C	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
T.S.V.P	Toumez s'ill vous plait (Frech)-please turn over	이면을 보십시오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 W 】

W.A	With Average	단독해손담보
W.W.O	Weather Working Days	하역가능기후하에서의 작업일
Y.A.R	York 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	요크앤티업 공동해손규정